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

2014. 12.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

연구책임자 :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자 : **홍연숙**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 12.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발 간 사

우리나라에 가정폭력관련 법이 만들어진지 17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개정이 거듭되었으나,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증가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가정폭력을 비롯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상담소 및 보호시설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원은 제주지역의 가정폭력예방과 근절,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조사와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서비스 인지여부, 가정폭력의 피해경험, 가정폭력 피해의 후유증, 가정폭력 대응방법, 정책수요 등을 조사하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아픈 경험을 듣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피해 당사자와 관련기관 종사자를 만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연구 설문조사에 답해 주신 제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뷰에 응해주신 가정폭력피해자와 관련기관 종사자께도 감사 드립니다. 또한, 관련 자료수집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관련시설 기관장님과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 지난 6개월 동안 제주지역 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를 수행한 이연화 박사와 공동연구원인 제주한라대학교 홍연숙 교수, 그리고 귀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외부 평가위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본 연구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서 안전한 제주사회실현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 12.

현혜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10월 12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도민에게 제 공해야함.
- ☐ 3년마다 실시하는 여성가족부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제주도 관련 자료는 2007년 100가구, 2010년 76가구, 2013년에는 자료수집에서 제외됨.
- ☐ 제주지역의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기초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대로 된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가 없는 형편임.
- ☐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민의 욕구가 반영된 현장밀착형 가정폭력 예방정책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 문헌연구를 통해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가정폭력 발생원인, 가정폭력의 피해 영향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 함. 국내·외 가정폭력 현황 및 정책동향, 제주의 가정폭력 현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야 하는 가정폭력 예방정책과 피해자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도출함.
- ☐ 제주도민의 가정폭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0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심층면접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당사자와 가정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의 피해경험 및 정책욕구를 분석함.
- ☐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예방대책과 피해자지원방안을 도출함.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 본 연구를 위해서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발생원인, 가정폭력의 피해영향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
- ☐ 국내·외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관련 통계 및 법, 정책현황들을 분석함.

나. 실태조사

- ☐ 조사기간은 2014년 8월 18일부터 10월 3일이며,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함.
- ☐ 조사대상은 도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00명임. 조사분야는 크게 가족 일반 및 다양한 가족,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실태임.
- ☐ 가정폭력관련 조사 내용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피해경험, 가정폭력 관련 제도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됨.

다. 심층면접 조사

- ☐ 제주지역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10명과 관련기관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조사기간은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한달여 기간 동안 진행되었음.
- ☐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질문에는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특징, 후유증 및 대응, 관련기관 서비스 경험, 제도적 개선점 등이 포함됨. 관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애로사항,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징, 피해자보호 관련제도의 개선점 등으로 구성함.

제2장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의 개념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가족구성원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외 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봄. 또한, 가족구성원을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자녀, (계)부모, 양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 등으로 구분하며 가정폭력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가정폭력가해자를 가정폭력 범죄를 행한 사람으로 정의함.
- 본 연구의 가정폭력의 유형도 가족구성원 간 관계와 가정폭력의 형태로 나누어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 따라서는 부부폭력, (손)자녀폭력, 형제자매폭력, 노인폭력으로 분류하고, 가정폭력의 형태에 따라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분류하고자함.

2. 가정폭력 발생원인

- 가정폭력 발생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검토함. 학자들마다 설명하는 이론이 다양하지만 개인에게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찾는 정신병리 및 성격장애이론과 가정폭력을 학습된 현상으로 보는 사회학습이론,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결과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는 스트레스이론과 자원이론, 성불평등에서 원인을 찾는 가부장제이론 등을 검토함.
- 정신병리 및 성격장애이론은 폭력의 원인을 가해자의 개인적 특징에 찾음.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성, 내적곤란, 결함, 알콜중독과 약물남용도 정신과적인 문제를 일으켜 가정폭력을 행한다고 설명함. 이 이론은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한정시키며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음.
- 사회학습이론이란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가정폭력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대한 관찰 및 체험이 있으며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고 봄. 이 이론은 왜 부모들 간의 폭력을 본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가해자가 되고 여성은 피해자가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스트레스이론은 재정적인 문제, 실직, 음주, 임신, 자녀문제, 저소득층, 경제적결핍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해 가정폭력을 일으킨다고 봄. 이 이론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사회활동과 직장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자원이론은 폭력도 자원으로 사용된다는 이론임. 가정폭력의 경우 가족관계를 지배하기 원하지만, 교육수준도 낮고, 직업적 지위도 낮고, 소득도 낮고 대인관계기술도 부족한 남편이 영향력을 행사할 다른 수단을 가지지 못해 폭력을 행한다고 봄. 그러나 고학력남성과 고소

특 남성들의 가정폭력 행위와 남편보다 자원이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견디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가부장제이론은 역사적으로 가부장제사회가 남편이 아내와 가족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아내에 대한 우월과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해왔으며 가족구성원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폭력이 허용되었다고 봄. 남녀불평등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떠나지 못한다고 봄. 가정폭력의 원인을 성차별사회와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제문화로 봄.

3. 가정폭력의 피해 영향

- 기존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피해는 가정폭력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 가해자 자신, 그리고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자의 경우는 신체적·정서적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매맞는 여성증후군, 학습된 무기력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자녀의 경우는 신체적·성적 학대와 사회부적응, 판단력과 사고력 손상, 학습장애, 대인관계의 실패, 깊은 상처로 인한 공포증후군을 보임.
- 가해자의 경우도 수치심, 죄책감,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폭력의 세대 간 전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폭력가정의 청소년들은 폭력, 가출, 비행, 자살시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노출됨.

제3장 가정폭력 현황 및 정책동향

1. 가정폭력 현황

가. 국내 현황

-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부폭력의 경우 2010년 53.8%에서 2013년 45.5%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자녀폭력의 경우도 같은 기간 59.1%에서 46.1%로 감소함. 노인폭력의 경우는 2010년 10.0%에서 2013년 10.3%로 증가함.
- 경찰청범죄통계(2011-2013)에 나타난 존속폭력 범죄검거 비율은 2011년 52.2%, 2012년 97.4%, 2013년 96.9%로 2011년에 비해 1.5배 정도 높음. 검찰의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2012-2013)」에 나타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접수건수는 2012년 8,097건, 2013년 19,561건으로 증가함. 구속은 2012년 97건, 2013년 332건으로 현저히 낮음.

- 「사법연감(2010-2013)」에 나타난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는 2012년 3,801건, 2013년 6,468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보호처분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95.4%(3,626건), 2013년 88.1%(5,699건)으로 감소함. 보호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까지는 병과처분이 많았음. 2013년에는 단순처분에 속하는 상담위탁(1,177건)이 가장 높게 나타남. 법원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처분이 단순처분에 집중되어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발생건수는 2011년 58건 대비 2013년 320건으로 5.5배 증가함. 반면, 구속조치는 2011년 1건, 2012년 3건, 2013년 7건으로 낮음.
- 경찰이 가정폭력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인 임시조치 신청 및 긴급임시조치신청을 살펴보면, 임시조치신청은 2010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19건, 2013년 83건으로 증가하고, 긴급임시조치처분도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14건임으로 증가함.
- 제주지역에서 검거된 가정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내학대가 많음. 아내학대는 2011년 30명에서 2013년 260명으로 8배 증가함. 남편학대는 2012년 1명에서 2013년 15명으로 증가함. 자녀학대는 2013년 13명으로 나타남. 노인학대도 2011년 1명에서 2013년 15명으로 증가함.

2. 국내·외 정책동향

가. 국내 가정폭력 관련 정책

- 2011년 이후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은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신설 등 가정폭력피해 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조치가 강화됨(2011.7.25). 2012년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
- 2009년 이후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별 긴급전화 센터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피해자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신설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와 상담원을 긴급히 구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협조’를 신설함.
 -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업자에게 배포하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에 관한 의무조항을 신설함.

□ 중앙정부의 주요 가정폭력 정책은 다음과 같음.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보호지원 : 1366 센터의 임시보호소 기능 강화, 가족보호시설 및 주거지원 시설 지원, 쉼터·그룹 홈·자활지원센터 확대, 시설 입소 여성의 건강검진·직업 훈련비 등 지원, 가정폭력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 가정폭력 예방 교육 :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전국 확대 및 학부모 교육 강화, 경찰관 대상 교육 강화, 검찰·법원 직무교육 내 가정폭력 과목 개설 등.
- 가해자 교정치료와 처벌 강화 :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 현행법 체포, 상습·흉기이용 사범 구속 수사, 상습·고질 폭력 과거 전과·추가여죄 등 적극 확인, 초범·합의자 원칙적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적용, 감호위탁 보호처분제 실효성 제고, 가해자 교정치료 상담 중도탈락자 관리 강화, 치료위탁 처분 활성화, 수용자 맞춤형 교육 실시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여성폭력으로 정의하고(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792호 제2조의 1항)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음.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신고·상담·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여성폭력 피해 사전 예방교육,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여성폭력 방지와 보호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교육·직업훈련 등 자활지원,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하여 예산 지원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가정폭력 정책은 가정폭력 관련시설 운영지원(가정폭력 보호시설 2개소, 가정폭력 상담소 3개소, 가정폭력·성폭력통합 상담소 2개,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가정폭력예방 캠페인 개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의 양육비·자립지원비·주거비 지원, 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지원 등이 있음.

나. 국외 가정폭력 관련 정책

□ 미국은 1994년에 만들어진 연방정부차원의 여성폭력방지법(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제정. 가정폭력가해자 체포우선주의로 경찰에게 현장에서 폭력이 없더라도 추정해 폭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경찰에게 가해자를 체포해 격리시킨 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낮추고 있음. 대표적인 가정폭력방기관련제도를 보면, 가

정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 가족유지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경찰의 가정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 폭력피해여성의 정보관리, 피해자보상프로그램,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 등임.

- ☐ 영국은 2004년 UN협정에 근거해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에 관한 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 Act)에 적용을 받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 긴급전화 999, 현장 경찰에게 가해자격리 등 임시조치권 부여, 가정폭력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가 가정폭력 발생 후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최대 28일까지 접근을 금지함,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방정부는 거주지를 마련하고, 영구임대주택 배정 시에도 우선권을 부여함.
- ☐ 호주는 형법에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연방정부차원에서 여성의 관점과 이익이 반영되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함. 여성과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재단설립, 호주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와 연구물을 배포, 열람,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사회서비스 급여(지원금)를 지원함.
- ☐ 선진국에서는 가정폭력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예방을 위해서 대중의 인식변화와 지역사회의 인식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개발과 제공에 집중하고 있음.

제4장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가. 조사 대상

- ☐ 본 조사의 최종 조사대상자는 제주지역에 상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임.
- ☐ 조사대상은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가구주는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분으로 정함. 가구원은 가구주 이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로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가족이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되며,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하였음.

나. 조사 방법

- 조사의 표본은 층화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함. 층화계통추출법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1차 층화하고 다시 각각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층화한 후 각 읍면동에서 인구비례로 ‘조사지점’을 정하고 정해진 조사지점에서 계통적 방법으로 가구를 선정하여 그 가구에서 응답자를 선정하는 방법임. 조사지점은 총 148개로 제주시 99개, 서귀포시 40개이고, 각 지점에서 최소 20명씩 조사하였음.
- 조사는 전문면접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일대일 대면면접을 통해 이루어짐.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지역 분포는 제주 동지역 1,536명(51.2%), 제주 읍·면지역 448명(14.9%), 서귀포 동지역 634명(21.1%), 서귀포 읍·면지역 382명(12.7%)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1503명(50.1%), 여성 1497명(49.9%)임. 연령별로는 만19세~29세 544명(18.1%), 만30~39세 566명(18.9%), 만40~49세 635명(21.2%), 만50~59세 600명(20.0%), 만60세 이상 655명(21.8%)임.
-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19.9%, 고졸 46.2%, 대졸 이상 33.9%임. 응답자의 2,373명(79.1%)은 제주가 고향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92명(3.1%)이고 나머지는 비장애인임.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기혼 66.9%, 미혼 20.3%, 사별 8.2%, 이혼 3.3%, 별거 1.1%, 사실혼(동거) 0.2%임.

나. 조사대상자의 거주 및 가족 특성

- 가구주는 1,544명(64.6%)이며, 가구유형은 대다수가 비농어가(82.7%)에 거주함. 세대구성을 보면 2세대가구(50.4%)가 가장 많았으며 1세대(42.0%), 3세대(7.4%), 4세대 이상 및 비친족가구(0.3%) 순으로 나타남.
- 세대별 가구유형을 보면 부부+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핵가족 가구가 38.1%, 1인가구가 24.0%, 부부가구가 17.0%, 한부모 가구가 9.7%, 3대가 함께 사는 가구가 7.4%, 조손가구가 0.9%로 나타남. 자녀의 수는 2명이 3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명 이상 28.7%, 1명 13.3%, 자녀가 없는 경우도 24.1%나 되었음.

3.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인식

- 가정폭력의 원인을 폭력에 대한 태도, 관계적 원인, 경제적 원인, 피해자 원인 등으로 나누어 조사함. 가정폭력원인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무대응’(75.7%)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즉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성별, 연령별, 가구소득별,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다음과 같음.
 - 성별로 4점 척도의 평균값을 구해 조사한 결과 ‘배우자의 열등감’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항목에서 남녀차이가 나타남. 여성(2.71)이 남성(2.58)보다 더 ‘배우자의 열등감’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고 생각함.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여성(2.71)이 남성(2.57)보다 더 동의함.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정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적 결함과 경제적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큼.
 - 연령별로 20대 이하는 ‘폭력에 무대응할수록 가정폭력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고 60대 이상은 ‘일반폭력에 관대할수록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젊은 층일수록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개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경제적 원인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고 인식함.
 - 가구소득별로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고, 500만원 이상 가구는 ‘배우자의 열등감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고 생각함.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들은 다른 문제보다 경제적 문제가 가정폭력의 원인이라고 인식함. 반면, 고소득 가구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식함.
 - 지역별로 제주시 거주자들은 ‘배우자의 열등감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라는 인식이 서귀포시 거주자보다 높았고, 서귀포시 거주자들은 ‘일반폭력에 관대할수록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와 ‘폭력에 무대응할수록 가정폭력이 지속된다’라는 인식에 제주시 거주자보다 더 높게 동의함. 제주시 거주자들은 개인의 성격적 결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서귀포시 거주자들은 폭력에 대한 태도와 피해자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음.

나. 가정폭력관련 통념

- ☐ 가정폭력 관련 통념을 살펴보기 위해 부부싸움에 대한 속담, 부부폭력에 대한 태도, 일반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등에 대해 조사했음.
- ‘부부싸움은 칼로물베기이다’와 ‘어린시절부모의 가정폭력경험이 폭력을 유발한다’는 통념에 각각 49.3%와 43.9%가 ‘동의함. 이 두 문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을 수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라는 통념에 대해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53.0%)은 여성(45.6%)보다 ‘그렇다’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동지역(즉 도시지역) 거주자들보다 ‘그렇다’라고 응답함. 남성일수록, 농촌지역 거주자일수록 부부싸움은 개인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음.
-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 라는 통념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동의함. 지역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더 많이 동의함. 여성일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가정폭력의 원인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즉 가정폭력이 대물림 된다는 통념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았음.

4. 가정폭력 경험

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 ☐ 성별로 여성 148명(63.8%), 남성 84명(36.2%)으로 여성들이 훨씬 많음.
- ☐ 연령별로 40-49세(35.8%)와 50-59세(24.1%)인구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음.
- ☐ 학력은 고졸(41.1%)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졸(38.4%), 중졸(20.3%)의 순임.
- ☐ 혼인상태는 기혼(67.7%), 미혼(13.4%), 사별(9.5%), 이혼(8.2%), 별거(0.9%), 사실혼(동거)(0.4%) 임.
- ☐ 가구소득은 300-399만원 24.6%, 200-299만원 21.1%, 100만원미만 저소득 가구 14.2%임.

나. 가족구성원의 폭력 피해경험

- ☐ 가정폭력 평생 피해경험자(이하 가정폭력 피해자)는 232명(7.7%)으로 나타남.
- ☐ 가정폭력 피해건수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308건으로 여성피해자 비율(206건, 66.9%)이 남성비율(102건, 33.1%)보다 두 배 이상 많음. 성별로 남성들은 아버지로부터 폭력경험이 가장

많았고 여성들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경험이 많았음.

- ☐ 가정폭력 피해자 중 유배우자는 158명이며 이들 중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89명(56.3%)으로 나타남. 성별로 여성피해자(68.5%)가 남성피해자(31.5%)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이들의 폭력유형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녀가해유형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음.
- ☐ 장애가 있는 응답자(92명)중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살펴본 결과 12명(13.1%)이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록 가정폭력피해 장애인의 사례수가 적지만, 폭력피해 장애인들의 83.3%가 여성으로 여성장애인이 주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음. 가해자는 아버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배우자로 나타났음.
- ☐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응답자와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로 나누어 생활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배우자관계만족도, 배우자 갈등 빈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 유경험자가 가정폭력 무경험자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폭력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현재 삶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음.

5. 가정폭력 피해의 영향

가. 폭력피해 당시 심리적 경험

- ☐ 가정폭력 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을 경험함.
- ☐ 폭력을 당한직후의 심경도 여성들이 '죽고 싶다'와 '폭력 행위자를 죽이고 싶었다'가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절반정도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 불안/우울, 자신에 대한 실망/무력감/자아상실 등의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신체적 상해

- ☐ 가정폭력 피해자(232명)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28명(12.1%)으로 나타남. 전체 피해경험자 중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피해자는 204명으로 이들이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신체적 상처가 없어서(53.4%),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30.9%),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9.3%) 순으로 나타남.

- 남성들은 ‘신체적 상처가 없어서’(60.3%)와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33.3%)라는 응답이 많았고 반면, 여성들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14.3%)라는 응답이 남성(1.3%)보다 월등히 많았음. 여성의 경우 병원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가정폭력을 창피한 개인의 일로 생각하는 통념때문임을 알 수 있음.

다. 정신적 후유증

- 가정폭력 피해자들(232명)은 가정폭력의 영향으로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49.1%)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가해자 대한 분노 감정(27.9%)이 있으며, 불안과 우울(25.9%)을 느끼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무력감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의 상실감(23.3%)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모든 일에 화가 나는(14.7%) 심리상태에 노출되어 있었음.

라. 가족관계의 변화

- 가정폭력 후 가정폭력 피해자들(232명)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친밀감을 상실했으며(21.1%),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10.8%)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의 영향으로 가족구성원에 대한 친밀감 상실(21.6%), 신뢰감 상실(12.8%) 그리고 이혼(6.1%)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성별로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차이가 있음.

6.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가. 가정폭력 대응방법

- 가정폭력 피해자들(232명)은 폭력 당시 84.4%가 그냥 맞으면서 참거나, 무조건 피하는 경향(28.4%)이 많았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7.8%에 불과함. 성별로 피해 경험 남성의 94.0%, 여성의 79.1%가 그냥 참거나 피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남성 1.2%, 여성 11.5%로 낮음.
- 폭력 당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36명)는 가족이나 친척(55.6%)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19.4%)이나 긴급전화 1366(13.9%)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낮았음.

나. 의료경험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제18조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무료를 받을 수 있음. 병원 치료를 받은 가정폭력 피해자들(26명)의 54.9%가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몰라서 유료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당연히 내가 지불해야 하니까’(26.9%)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도 있었음.
- ☐ 반면 병원치료를 무료로 받은 피해자들(2명)은 사례 수가 매우 적었으며 이들은 경찰 및 상담소의 안내를 받아서(50.0%),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50.0%)으로 나타남. 가정폭력관련 서비스지원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다. 서비스전달체계 경험

- ☐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225명)의 가장 주된 이유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27.1%),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3.6%)라는 이유로 나타났음. 특히,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이를 통해 가정폭력을 창피한 개인의 일로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7. 정책인지도와 정책 욕구

가. 법 인식

- ☐ 전체 응답자(3000명)의 85.8%가 가정폭력 관련법을 모르는 것(내용은 모름 포함)으로 나타남.
- ☐ 여성들(86.5%)이 남성들(85.1%)보다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을 잘 아는 응답자들은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59.2%)를 통해서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남.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를 통한 정책홍보가 효과적일 수 있음.

나. 공공서비스 인식

- ☐ 전체 응답자(3000명)들은 경찰(96.9%), 상담소(58.9%), 여성긴급전화 1366(44.6%) 순으로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인지도가 나타났음. 나머지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30% 이하로 낮았음. 그 외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에 대한 도민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성들은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 원스탑지원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 생활가정,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지역복지관 관련 서비스에 대해 남성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정책욕구

- 전체 응답자(3000명)의 16.2%는 가정불화 및 폭력 해결·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특히,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의 30.6%가 참여의향을 밝힘.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참여의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 여성이(18.7%) 남성(13.6%)보다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의향이 높았음. 지역별로 제주도 거주자들이 서귀포시 거주자들보다 참여의향이 높았음.
- 가정폭력 피해자들(232명)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 치료 프로그램 제공(31.0%), 폭력 허용적인 사회 문화의 개선(30.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18.2%)순으로 응답함.
-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의 처벌강화(36.6%),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35.3%),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12.1%)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제5장 가정폭력 심층면접분석결과

1. 심층 면접 조사 개요

- 심층 면접 조사는 가정폭력관련기관에서 서비스를 경험한 여성 10명과 관련기관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조사기간은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1달여 기간 동안 진행되었음.
- 심층 면접 조사 내용은 피해당사자의 경우는 어린시절의 가정폭력경험, 결혼이후 가정폭력 피해경험, 가정폭력이후 지원서비스 경험, 정책욕구 등임. 가정폭력관련기관 종사자의 경우는 가정폭력피해자의 피해정도, 가정폭력가해자의 특징,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문제점, 정책욕구 등임.

2. 심층 면접 조사 개요 결과

가. 가정폭력피해자 면접조사 결과

- ☐ 심층면접 결과 어린 시절부터 직·간접적인 가정폭력피해를 경험한 면접자의 경우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놀라며, 사소한 말다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함.
- ☐ 신체적 피해의 경우 처음 폭력 시 뺄 한 대에서 그 후로 계속 해서 주먹과 발로차기, 도마로 때리기, 폭력의 시간이 지속될수록 얼굴을 심하게 구타해 얼굴과 이빨이 없어질 정도로 폭력의 수위가 높았음. 가정폭력이 지속되거나 중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음 발생할 때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함.
- ☐ 피해자들의 대응방법은 처음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무조건 참으며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자녀와 남편 때문이었음. 특히, 남편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음. 그러나 피해자들은 병원에 갈 만큼 신체적인 큰 부상을 당했으며 또한, 남편의 보복이 두렵고 남편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신고하기를 꺼려했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가정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 피해자들은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개인정보가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기를 원했으며 피해자안전강화를 위해 경찰의 현장 출동 시 가해자를 경찰서로 연행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원함. 또한, 가정폭력으로 자녀가 심리적 상처를 겪기에 자녀에 대한 개인심리 치료를 원했음.

나. 가정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 ☐ 기관 종사자들은 피해여성들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함.
- ☐ 오랜 상담을 통해 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의 다양한 원인 중 남성과 여성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간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으며, 더불어 가정폭력을 개인의 창피한 문제로 취급하는 태도와 음주에 관대한 제주문화를 지적함.
- ☐ 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립 지원정책의 강화와 폭력가정 아동의 개인적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 가정폭력예방을 위해서는 폭력가정 자녀들에 대한 자녀 치료프로그램제공과 예비부부를 중심으로 부부·부모관련 결혼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함.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 ☐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무대응’(75.7%)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게 난 것은 다른 어떤 가정폭력 원인보다 피해자 본인의 탓으로 가정폭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가정폭력 통념조사에서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이기이다’와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에 대해 성별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로 생각해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음. 반면, 여성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라고 생각해 가정폭력의 원인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았음.

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징

- ☐ 여성피해자들이 많았으며 남성들은 아버지로부터 폭행건수가 가장 많았고 여성들은 배우자로부터의 폭행건수가 많았음. 최초피해연령대는 아동기(7~13세) 때 163건(53.0%)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가정폭력을 경험한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83.3%)이 남성장애인보다 월등히 많았음. 가해자로 아버지가 가장 많고 다음이 배우자로 나타남. 사회적 약자일수록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지난 1년간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부부폭력의 경우 여성피해자(68.5%)가 남성피해자(31.5%)보다 두 배 이상 많았음. 이들이 경험하는 폭력유형은 정서적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밝혀짐. 자녀에게 가한 폭력유형도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음.
- ☐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가정폭력 무경험자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생활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배우자관계만족도가 가정폭력 유경험자가 가정폭력 무경험자보다 낮았음.

다. 가정폭력 피해 후유증

- ☐ 가정폭력 피해자들 중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을 경험함. 특히, 여성들이 '죽고 싶다'와 '폭력 행위자를 죽이고 싶었다'가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절반정도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 불안/우울, 자신에 대한 실망/무력감/자아상실이라는 정신적 후유증에 노출되어 있음.

라. 피해자의 대응

- ☐ 가정폭력 피해당시 '그냥 맞으면서 참음'(56.0%)이 가장 많았음. 가정폭력피해 시 도움요청 대상도 가족이나 친척이 많았음.
- ☐ 경찰이나 가정폭력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와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특히,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응답은 여성에게 높게 나타났음.

마. 가정폭력 법과 공공 서비스 인지도

-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인지도 결과 전체응답자의 85.8%가 가정폭력방지 관련법의 내용까지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남성보다, 서귀포시 거주자가 제주시 거주자보다, 고령층일수록 인지도가 낮았음.
- ☐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상담소(58.9%), 경찰(96.9%), 여성긴급전화 1366(44.6%)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지만, 나머지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30% 이하로 낮게 나타남.

바. 정책수요

- ☐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서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 치료 프로그램 제공'(31.0%)과 '폭력 허용적인 사회 문화의 개선'(30.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11.2%)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36.6%),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35.3%),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12.1%)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사. 피해자와 기관 종사자의 심층면접 결과

- ☐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학교적응의 어려움, 쉽게 놀람, 사소한 말다툼에도 과민반응을 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면접자들의 피해의 대응방법은 무조건 참으며 견디는 것으로 나타남. 면접자들의 정책 욕구는 가해자의 재범우려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의 보호강화와 가해자 처벌 강화 그리고 자녀의 심리치료 지원 등으로 나타남.
- ☐ 기관 종사자들은 피해여성들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함. 기관 종사자들은 피해여성들의 정신적·심리치료 지원과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보호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가정폭력예방정책으로 폭력가정 자녀들에 대한 자녀 치료프로그램제공과 부부·부모관련 결혼 아카데미교육 실시 등을 강조함.

2. 정책제언

가. 가정폭력예방 정책

1) 가정폭력관련 정책 홍보 확대

-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가정폭력관련 법과 관련 서비스 등 정책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정폭력방지 관련법에 대해 내용까지 모르는 도민이 85.8%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 ☐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에서도 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와 경찰, 긴급전화 1366을 제외하고는 관련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모른다고 응답해 도민 홍보를 확대해야 함.
- ☐ 가정폭력관련 법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확대해야 함.

2) 대상별 가정폭력예방교육 확대

- ☐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남성, 장애인 가정, 아동, 지역 특징 반영한 대상별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 장애인의 경우 여성장애인들이 가정폭력에 남성들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가정폭력 관련법과 지원서비스를 모르고 있음.

- ☐ 조사결과 아동기 때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가장 많아 학교교육을 통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실효성 점검이 필요함.

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

1) 가족치료 프로그램 지원확대

- ☐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절반정도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 불안/우울, 자신에 대한 실망/무력감/자아상실이라는 정신적 후유증에 노출되어 있고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도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 치료 프로그램 제공'(31.0%)임. 문제는 폭력가정의 부부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불안, 분노,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녀들에 대한 가족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 상담소·보호시설·지원기관들이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를 확대해 가족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야 함.

2) 맞춤형 보호지원 및 동반 아동지원

- ☐ 심층면접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양했음. 특히, 직장을 다니며 동반한 자녀가 있는 피해여성의 경우 비공개 보호시설에 주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이들의 소득·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이 보호시설 외 임시거주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해 도에서 우선적으로 임시주거비를 한정된 기간 동안만 지원해주는 '긴급주거비지원'정책이 필요함.
- ☐ 동반아동에 대해서도 개인별 상담 및 치료를 포함해 학습지도 등 동반자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는 정신 질환에 노출된 피해자들도 있어 임시보호시설이나 비공개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정신 질환에 노출된 가정폭력 여성들을 위한 전문보호시설이 제주지역에 필요함.

3) 피해자 비밀보장 강화

- ☐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우선되어야 함.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재범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 함.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추가해,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까지 피해자 정보 누설에 대한 징계를 확대 적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관리·강화해야 함.

4) 가정폭력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지원시스템 강화

- 심층면접 분석결과 신체적 피해는 처음 폭력 시 뺨 한 대에서 그 후로 계속 해서 주먹과 발로차기 등 폭력의 시간이 지속될수록 얼굴을 심하게 구타당해 중한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정폭력이 처음 발생 할 때부터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상담, 치료, 법적 지원, 주거 보호, 경제적 자립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시스템의 강화, 가해자 처벌 및 교정 등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함.

5) 가정폭력 관련 기관운영 내실화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자립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심층면접결과 피해자들은 상담소를 통해 정신적인 안정, 이혼소송관련 법률지원, 남편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받았음. 보호시설의 경험을 통해 신체적인 회복과 정서적인 안정, 자립에 대한 이유와 힘을 얻었음.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종사자들이 겪는 기관운영비 지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해 가정폭력 피해자지원을 강화해야함.

다. 가정폭력관련 사법기능 및 가해자교정 강화

1) 경찰의 현장대응과 사법처리 강화

- 심층면접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현장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경찰서로 연행하기를 원했음.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서비스를 수행하지만 신체적 피해가 눈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피해자의 신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음. 가

정폭력 신고 시 경찰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정서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 기소로 이어지는 검찰, 사법기관의 연계를 통한 피해자보호 등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함.

2)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지원 확대

- ☐ 조사 결과 가정폭력피해 경험자들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에 81.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피해여성들이 가해자의 치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심층면접에서도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을 견디는 이유가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었음. 따라서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사업을 확대해 할 것을 제안함.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3
제2장 이론적 배경	5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6
2. 가정폭력 발생원인	7
3. 가정폭력의 피해영향	9
제3장 가정폭력 현황과 정책동향	13
1. 가정폭력현황	14
가. 국내현황	14
나.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16
2. 국내·외 정책동향	18
가. 국내 가정폭력 관련 정책	18
나. 국외 가정폭력 관련 정책	21
제4장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25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6
가. 조사대상	26
나. 조사방법	26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1
나. 조사대상자의 가구 및 가족 특성	33
3.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34
가.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인식	34

나. 가정폭력 관련 통념	38
4. 가정폭력 경험	39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39
나. 가족구성원의 폭력피해경험	40
다.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경험	43
라. 지난 1년간 자녀폭력 가해경험	46
마. 장애인폭력 피해경험	49
바. 가정폭력 유경험자의 삶의 만족도	50
5. 가정폭력피해의 영향	51
가. 폭력피해 당시 심리적 경험	51
나. 신체적 상해	53
다. 정신적 후유증	54
라. 가족관계의 변화	54
6.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55
가. 가정폭력 대응방법	55
나. 의료경험	58
다. 서비스전달체계 경험	59
7.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	61
가. 법 인식	62
나. 공공서비스 인식	66
다. 정책욕구	68
8. 소결	77
 제5장 가정폭력 심층면접 분석 결과	 79
1. 심층 면접 조사 개요	80
2. 면접조사 분석 결과	81
가. 가정폭력피해자 면접조사 결과	81
나. 가정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91

3. 소결	98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01
1. 요약	102
2. 정책제언	106
참고문헌	110
부 록	113

표 목 차

<표 3-1> 법원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15
<표 3-2>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	16
<표 3-3> 가정폭력 재범인원 수	16
<표 3-4> 가정폭력사건의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신청과 집행현황	17
<표 3-5> 가정폭력유형별 검거현황	17
<표 4-1> 조사 표본	27
<표 4-2> 가구구성 관련 조사내용	29
<표 4-3> 개인 관련 조사내용	29
<표 4-4> 가정폭력 관련 조사내용	30
<표 4-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2
<표 4-6> 조사대상자의 가구 및 가족 특성	34
<표 4-7>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35
<표 4-8> 성별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35
<표 4-9> 연령별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36
<표 4-10> 가구소득 수준별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37
<표 4-11> 지역별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37
<표 4-12> 가정폭력 관련 통념에 관한 인식	38
<표 4-13>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성별·지역별 인식차이)	38
<표 4-14>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성별·지역별 인식차이)	39
<표 4-15> 가정폭력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40
<표 4-16> 가정폭력 피해 및 성별 피해	41
<표 4-17> 성별로 본 가정폭력 피해건수	41
<표 4-18> 성별로 본 가해자와의 관계	42
<표 4-19> 가족들로부터 폭행 당한 최초 피해연령	42
<표 4-20> 지난 1년 간 부부폭력 피해경험 여부	43
<표 4-21> 성별 부부폭력 피해경험	43
<표 4-22> 부부폭력 유형	43
<표 4-23> 부부폭력에서 신체적 폭력피해 빈도(경한 폭력)	44

<표 4-24> 부부폭력에서 신체적 폭력피해 빈도(중한 폭력)	44
<표 4-25> 부부폭력에서 정서적 폭력피해 빈도	45
<표 4-26> 부부폭력에서 성적 폭력피해 빈도	46
<표 4-27> 부부폭력에서 경제적 폭력피해 빈도	46
<표 4-28> 지난 1년 간 (손)자녀 가해 경험 유무	46
<표 4-29> 가구유형별 (손)자녀 가해 경험 유무	47
<표 4-30> 성별 자녀폭력 가해경험	47
<표 4-31> 자녀에 대한 폭력 가해유형	47
<표 4-32>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 가해빈도	48
<표 4-33> 자녀에 대한 정서적 폭력 가해빈도	48
<표 4-34> 장애인의 성별 폭력피해 경험	49
<표 4-35> 폭력피해 장애인의 학력, 장애등급, 장애유형	49
<표 4-36> 폭력피해 장애인의 가해자와의 관계	50
<표 4-37> 폭력피해 장애인의 가정폭력 법인지 여부	50
<표 4-38> 가정폭력 유경험자의 삶의 만족도	50
<표 4-39> 성별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을 때 느낌	51
<표 4-40> 장애 여부별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을 때 느낌	52
<표 4-41> 성별 가정폭력 직후의 심경변화	52
<표 4-42>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	53
<표 4-43> 성별 병원치료 받지 않은 이유	53
<표 4-44>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정신적 후유증	54
<표 4-45> 성별 가정폭력 후 가족관계 변화	55
<표 4-46> 성별로 본 가정폭력 피해 시 대응방법	56
<표 4-47> 장애여부별 가정폭력 피해 시 대응방법	56
<표 4-48> 성별 가정폭력 피해 시 미 대응 이유	57
<표 4-49> 성별 가정폭력 대응 이유	57
<표 4-50> 주위의 도움요청 대상	58
<표 4-51> 병원치료를 유료로 받은 이유	58
<표 4-52> 병원치료를 무료로 받은 이유	59
<표 4-53> 성별 도움 요청 시 경찰이 취한 조치	59
<표 4-54> 성별 경찰 도움 미요청 이유	60
<표 4-55> 관련기관 도움 요청시 도움을 받은 정도	61

<표 4-56> 성별 관련기관 도움 미 요청 이유	61
<표 4-57>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	62
<표 4-58> 성별 가정폭력 가해자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	63
<표 4-59> 지역별 가정폭력 가해자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	63
<표 4-60> 연령별 가정폭력 가해자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	63
<표 4-61> 가정폭력법 인지 경로	64
<표 4-62> 성별 가정폭력법 인지 경로	64
<표 4-63> 지역별 가정폭력법 인지 경로	65
<표 4-64> 연령별 가정폭력법 인지 경로	65
<표 4-65> 성별 가정폭력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	66
<표 4-66> 학력별 가정폭력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	67
<표 4-67> 지역별 가정폭력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	68
<표 4-68> 가정불화 및 폭력 해결/예방 프로그램 참여의향	69
<표 4-69> 가정폭력 경험유무로 본 가정불화 및 폭력 해결/예방 프로그램 참여의향	69
<표 4-7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의향	70
<표 4-71> 성별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 가장 바라는 서비스	71
<표 4-72> 지역별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 가장 바라는 서비스	71
<표 4-73> 연령별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 가장 바라는 서비스	71
<표 4-7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욕구	72
<표 4-75> 성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1순위	72
<표 4-76> 지역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1순위	73
<표 4-77> 연령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1순위	73
<표 4-78> 가정폭력 예방정책 욕구	74
<표 4-79> 성별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필요성 1순위	74
<표 4-80> 지역별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필요성 1순위	75
<표 4-81> 연령별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필요성 1순위	76
<표 4-82> 성별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효과	76
<표 5-1> 심층면접대상자의 특징: 가정폭력관련 기관중사자	80
<표 5-2> 심층면접대상자의 특징: 가정폭력 피해 여성	81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 절차	4
----------------------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1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동법 제4조와 제5조에 근거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가정폭력실태조사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2006.4.28본조신설)에 근거해 여성가족부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제주도 관련 자료는 2007년에 실시한 10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2010년에는 그나마 76가구로 줄어든 실태조사에 그쳤다. 2013년에 진행된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에는 제주도는 자료수집에서 제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가정폭력실태를 제대로 파악한 기초자료의 수집이 우선 필요하다.

한편, 2013년 제주지방경찰청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 사범건수는 320건이고 검거인원은 325명으로 2012년(96건)에 비해 3.3배 늘었고, 2011년(58건)에 비해 5.5배 이상 증가했다(제주경찰청 내부자료).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 피해 내용과 경험, 가정폭력 관련 정책서비스의 효과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가정폭력의 예방은 건강한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가정폭력은 다른 사회적 범죄와는 달리 친밀한 가족관계안에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은 심각하다. 결국, 가정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가정해체로 이어져 가정폭력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가족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폭력경험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폭력을 학습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 또는 성인이 된 이후 가정폭력의 가해자·피해자로 폭력사회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범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제주도민의 가정폭력 실태와 정책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민의 욕구가 반영된 현장밀착형 가정폭력예방정책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 검토를 통해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가정폭력 발생원인, 가정폭력의 피해

영향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둘째, 우리나라 및 제주지역의 가정폭력 발생현황에 대한 기존 통계 및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셋째, 가정폭력 관련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넷째, 제주지역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태조사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들과 가정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힘든 가정폭력피해의 구체적인 경험과 정책욕구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예방 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가정폭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가. 문헌연구

본 연구를 위한 문헌연구는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발생원인, 가정폭력의 피해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국내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관련 통계 및 법, 정책현황들을 분석했다. 또한, 국내·외 가정폭력관련 정책도 살펴보았다.

나. 실태조사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가구 방문 조사로 도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실태와 정책 욕구, 가구와 개인의 일반적 사항 등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피해 경험, 가정폭력 관련 제도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을 조사하였다.

다. 심층면접 조사

심층면접조사는 제주지역 가정폭력관련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여성 10명과 관련기관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피해경험과 특징, 발생원인, 가해자의 특징,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경험과 문제점, 가정폭력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정책욕구 등을 조사했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연구전체의 흐름과 과제 수행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기위해 자문회의를 3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방향, 설문지 내용의 검토, 목차 점검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2차 자문회의에서는 심층면접 결과에 대하여, 3차 자문회의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정기적으로 공동연구진 회의를 하여 이론과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책토론회를 거쳐 학계, 관련기관 전문가, 그리고 도민 일반의 의견을 듣고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절차

7월	• 연구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자료수집 및 문헌검토		• 선행연구 검토 • 여성·가족 관련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 수집
	• 연구진회의 및 자문회의 (1차)		• 연구방향 및 설문지 문항 점검
8-9월	• 가족 실태조사 (설문 조사)	⇔	• 제주도 여성·가족 실태조사
	• 가족 실태조사 (당사자 및 종사자 인터뷰)		• 가정폭력피해여성 인터뷰 • 관련기관 방문 및 실무자 인터뷰
10월	• 자문회의 (2차)	⇔	• 심층면접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11월	• 자문회의 (3차)	⇔	•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12월	• 정책토론회	⇔	•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
	• 최종보고서 완료		• 최종보고서 완료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2. 가정폭력 발생원인
3. 가정폭력의 피해 영향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가. 가정폭력의 개념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김운회(2008: 20-23)는 이러한 폭력이 가정에서 행해질 때 이를 가정폭력이라고 부르며, 가정폭력이 배우자학대, 부부폭력, 아내학대, 아내구타 등을 의미하는 것 외에 파트너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나 북경선언행동강령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해 국가에 의해 방조·묵인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여성부, 2004: 4). 따라서 가정폭력의 경우는 피해자 관점이 강조되면서 신체적 상해를 포함해 실제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행위, 심리적·성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까지도 그 개념을 확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Lehrman은 더 나아가 정서적 학대까지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고, 심리학자 Forward도 심리적·정서적 학대에 주목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해 “공포와 굴욕감,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행”을 통한 박해라고 지적한다(김운회, 2008: 21-22 재인용). 우리나라의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340호)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 법에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인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관계인자(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관계,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전통적 시각은 신체적 폭력에 한정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로 접근했는데, 1997년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가정폭력은 더 이상 사적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근절해야 할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Winstock, 2007; 여성가족부, 2010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외 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족구성원을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자녀, (계)부모, 양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로 제한하며 가정폭력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가정폭력가해자를 가정폭력 범죄를 행한 사람으로 정한다.

나.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유형은 매우 상이하고 다양한데 김운희(2008: 29)는 가정폭력의 유형을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학대, 방임 등으로 분류한다. 한편,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2013)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유형을 더 세분화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의 형태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 따라 자녀폭력, 부부폭력, 노인폭력, 가족원폭력으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도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학대, 방임뿐 아니라 경제적 폭력, 통제까지 폭력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최근 연구들이 피해자 관점을 강조하면서 직접적인 폭력행위뿐 아니라 간접적 행위까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정폭력의 유형을 가족구성원 간 관계와 가정폭력의 형태로 나누어 가정폭력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 따라서는 부부폭력, (손)자녀폭력, 형제자매폭력, 노인폭력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형태는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해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정서적 폭력이란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굴욕을 주기 위해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13). 또한, 신체적 폭력이란 찰싹 때리는 행위와 같은 가벼운 신체적 고통에서부터 물건으로 때리거나 계속 무차별로 때리는 심각한 폭력까지 등을 의미하다(Straus, 1973). 그리고 경제적 폭력이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성적 폭력이란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로 성 학대로 불리기도 한다(여성가족부, 2013).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의하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9%의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부 혹은 동거관계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WHO, 2005). 가정폭력은 발생빈도가 높고 그 피해가 심각해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2. 가정폭력 발생원인

가정이 가족 모두에게 삶을 살아가는 희망과 힘이 되어주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왜 발생하는가?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설명하는 이론이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기의 연구인 정신병리 및 성격장

애이론과 가정폭력을 학습된 현상으로 보는 사회학습이론,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결과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는 스트레스이론과 자원이론, 성불평등에서 원인을 찾는 가부장제이론을 통해 가정폭력 발생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신병리 및 성격장애이론

정신병리학적 이론은 폭력의 원인을 가해자의 개인적 특징에 찾는다. Hamberger & Hastings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서 정신병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으며(Gelles, 1998 재인용), 김광일(1992: 149)도 아내를 폭력하는 남편 70명에게서 개인정신분열, 편집증, 인격장애 등의 정신병을 발견했다. 즉, 개인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성, 내적곤란, 결함 등에 의해 폭력적이 된다는 것이다. 알콜중독자와 약물남용자에게서도 배우자에 대한 폭력행동이 많이 나타나는데 정신병리 및 성격장애이론은 알콜중독과 약물남용도 가해자에게 정신과적인 문제를 일으켜 가정폭력을 행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질병으로 한정시켜 많은 정상적인 남성들이 저지르는 가정폭력을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을 가정내 문제로 한정시키며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

나.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에서는 폭력행위를 하나의 학습된 행위로 본다. 그래서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가정폭력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대한 관찰 및 체험이 있으며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권복순, 1999: 17)고 본다. 이 이론은 왜 부모들 간의 폭력을 본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가해자가 되고 여성은 피해자가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 스트레스이론

이 이론은 사회적 상황, 스트레스, 경제적 요인들이 학대와 폭력의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즉, 재정적인 문제, 실직, 음주, 임신, 자녀문제, 저소득층, 경제적결핍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해 가정폭력을 일으킨다고 본다. 이 이론은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한 폭력을 허용하는 문화적 풍토와 함께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와 결합되어 많은 가족구성원들은 구조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폭력과 학대를 선택한다(Gelles, 1997)는 것이다. 이 이론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사회활동과 직장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라. 자원이론

자원이론은 폭력도 자원으로 사용된다는 이론으로 가정폭력의 경우 가족관계를 지배하기 원하지만, 교육수준도 낮고, 직업적 지위도 낮고, 소득도 낮고 대인관계기술도 부족한 남편은 영향력을 행사할 다른 수단을 가지지 못해 열세한 위치에서 탈피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 등 강압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이다(Goode, 1971). 다른 측면에서, Gelles(1976)는 자원을 적게 가진 여성일수록 남편이 심한 폭력을 휘두를지라도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폭력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이론은 가정폭력의 핵심을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세력과 지배를 확보할 수단으로 남성들이 육체적 힘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고학력남성과 고소득 남성들의 가정폭력 행위와 남편보다 자원이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견디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마. 가부장제이론

역사적으로 가부장제사회는 남편이 아내와 가족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아내에 대한 우월과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해왔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때 체벌이 허용되었다. 변화순 외(1999)에 의하면 성의식이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으며 가정폭력에 허용적인 태도와 아내구타를 행사하는 비율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밝혔다. 또한, 남녀불평등으로 인한 남성과 여성의 권력차이는 가족내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여성이 폭력적인 남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해도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떠나지 못한다고 본다. 그래서 변화순 외(1993)는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폭력은 대부분의 가족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며 가정폭력의 원인을 성차별사회와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제문화로 본다.

3. 가정폭력의 피해 영향

가정폭력의 피해영향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들보다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들에게 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여성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한다. 김승권 외(1998)에 의하면 폭력피해여성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은 '가벼운 상처 및 타박상'(42.7%)였고, 심각한 신체적 증상은 골절상(17.2%), 고막이상 및 치아손상(7.9%), 실명(6.4%), 실어증

(0.7%), 허리디스크(0.7%)를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피해여성들의 83.3%가 정신적 증상이 있으며, '남편과 이혼을 원할 정도의 정신충격'은 23.0%, 남편을 죽이고싶거나(15.1%), 본인이 죽고싶은 경우(6.8%)도 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증상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을 일으키는데, Walker(1979)는 이를 매 맞는 여성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으로 명명했다. 피해여성들은 수면장애, 섭식장애, 만성피로, 두통, 위장문제, 고혈압, 알레르기같은 신체적 문제와 낮은 자존감, 구타관계에 대한 신화를 믿는 것, 구타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더 이상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죽는 위험까지 감소하는 것, 자신외에 누구도 자신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믿는 심리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반복되는 구타와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둘러싼 폭력적인 공격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배운다(Gelles, 1997; 오세연, 2011: 89 재인용). 이를 '학습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이라고 부르며, 가정폭력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긴장의 단계→ 폭력발생의 단계→ 화해의 단계를 거치면서 폭력의 주기를 형성해 가정폭력이 거듭되어 순환되는 시간과 강도가 강해진다고(Walker, 1979) 본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사망하기도하며 구타하다 잠이든 가해자를 살해(양현아·김현정, 2012: 76)하기도 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은 피해여성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자녀들은 가정폭력의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김운회(2008)는 여성을 구타하는 남성 중 절반이상이 자녀를 구타하며, 상당수가 자녀에게 성적학대를 하며 특히, 딸에게 행해진다고 보고한다. 미국의 경우 배우자를 폭행하는 가해남성의 1/3이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70%가 육체적으로 자녀를 학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컴퓨터에 오는 가정폭력피해여성들 중 65.9%가 남편이 자기 외에 자녀에게도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대받은 아이는 사회적응력이 낮고, 감기, 후두염, 잠을 깊이 못자는 신체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간접적으로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경우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비명을 지르거나 몸 흔들기, 말더듬기 등의 공포 증후를 보이며 구타당하는 어머니를 보호하려다가 그 자신이 상해를 입거나 죽기도 한다(김운회, 2008: 109). 부모의 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지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슬픔과 불행감을 갖게 되고 판단력과 사고력의 손상, 학습장애, 대인관계의 실패, 적응장애 등의 포괄적인 인격 장애를 일으킨다.

다.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은 주로 남성들에 의해 행사되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 또한, 수치심, 죄책

감, 낮은 자존감등 자신들의 폭력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Beck은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이 실제적인 권위를 잃었거나 권위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아내위에 서지 않으면 밟힌다는 극단적 사고를 하게 되어 아내를 때린다고 강조한다(현혜순, 2005: 17 재인용). 그 결과 이러한 사고방식은 부부관계의 역기능을 초래해 가족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덕순(2001)은 가해자 상담을 통해 가해자들이 결혼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결국, 가정폭력은 가해자에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가족해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장희숙·김예성(2004)은 한국 가해자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많은 가해자일수록 낮은 자존감과 높은 분노로 여성에게 폭력을 행하며 가부장적 태도가 강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성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갈등해결 기술 부족이라는 성격장애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된다(이금옥,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자존심을 더욱 낮아지게 만들며 자신들의 주장·갈등을 분노로 표출해 궁극적으로 가족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의 피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주 논의 되는 것은 폭력의 세대 간 전수(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Theory)이다. 폭력의 세대 간 전수란 부모사이의 폭력에서 나타난 폭력성과 공격성이 자녀에게 전이되어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 남자아이는 학대자로, 여자아이는 피학대자로서의 세대 간 전이가 나타나게 됨을 뜻한다. 결국 폭력이 재생산되는 것이다.

특히, O'keefe와 Lebovics(1998)에 의하면 폭력가정의 청소년들은 폭력, 가출, 비행, 자살 시도 등 부적응행동을 보이며, 이러한 부적응 행동은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미치는 영향은 해당 가정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체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을 할 수 없거나 직장에 온다해도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생기는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매년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전화, 보호시설, 원스톱센터, 전문상담기관을 운영해야하는 등 가정폭력문제로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제 3 장

가정폭력 현황과 국내·외 정책동향

- 1. 가정폭력 현황
- 2. 국내·외 정책 동향

1. 가정폭력현황

가. 국내현황

국내 가정폭력현황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실태조사(2007-2013), 경찰청범죄통계자료(2011-2013),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2012-2013),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2010-2013)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가족부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를 가정폭력발생률과 가정폭력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부폭력 발생률은 2007년 40.3%, 2010년 53.8%, 2013년 45.5%로 나타났다. 자녀폭력의 경우, 2007년 66.9%, 2010년 59.1%, 2013년 46.1%로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적어도 3명중 1명은 부모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폭력발생률은 2007년 6%, 2010년 10.0%, 2013년 10.3%로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형제자매 폭력에 대해서는 2013년에 처음으로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원간 폭력피해¹⁾로 피해율을 조사했으며 피해율은 7.0%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의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부부폭력의 경우 정서적 폭력이 37.2%로 가장 많고, 방임 27.3%, 신체적 폭력 7.2%, 성학대 5.4%, 경제적 폭력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폭력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서적 폭력은 지난 1년간 기혼여성 피해자들 중 모욕적인 이야기,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를 경험했는지의 여부로 측정되었다. 정서적 폭력 유형 중 가장 빈번한 경험은 ‘모욕적인 이야기로 기분이 상했음’(28.3%)이고, 그 다음이 때리려고 위협 당했다(6.4%), 물건을 파손 당했다(4.0%)의 순이었다. 가정폭력이 한 가지 이상 동시에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서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부부폭력 중 신체적 폭력에서 남성들의 4.6%가 가해경험이 있다고 밝힌 반면 피해경험은 1.9%로 나타났다. 역으로, 여성의 경우는 신체폭력 가해경험이 2.5%, 피해경험이 3.7%로 여성은 신체폭력 가해경험보다 피해경험이 많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서적 폭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적 폭력과 같은 다른 유형의 폭력을 일으키는 원천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김운희, 2008: 29).

자녀폭력의 경우도 정서적 폭력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폭력(경한폭력+중한폭력)은 18.3%, 방임 5.0%였다. 노인폭력의 경우도 정서적 폭력이 10.1%로 가장 많았지만, 경제적 폭력이 1.2%로 신체적 폭력 1.0%과 방임 0.8%보다 높게 나타났다. 형제자매폭력의 경우도 정서적 폭력이 6.9%로 가장 많았다. 형제자매폭력의 경우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이 1.0%로 경제적 폭력 0.3%보다 더 많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결국, 각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1)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폭력 피해를 의미함.

는 가정폭력유형은 정서적 폭력이다.

가정폭력발생건수를 살펴보면, 경찰청의 경찰청범죄통계(2011-2013)에 나타난 존속폭력범죄의 경우 전국 발생건수는 2011년 899건, 2012년 1014건, 2013년 765건, 2014년 8월 기준 15,526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최근 존속폭력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검거인원을 살펴보면, 2011년 469명, 2012년 988명, 2013년 742명으로 검거비율이 2011년 52.2%, 2012년 97.4%, 2013년 96.9%로 2011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의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2012-2013)」에 나타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접수건수는 2012년 8,097건, 2013년 19,561건으로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2012년 15.9%(1,396건), 2013년 16.4%(2,959건)으로 낮으며, 구속은 2012년 97건, 2013년 332건으로 현저히 낮다. 이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미온적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사법연감(2010-2013)」을 통해 살펴본 결과(<표 3-1> 참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건수는 2010년 3,257건, 2011년 3,087건, 2012년 3,801건, 2013년 6,468건으로 가정보호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처분건수가 불처분 건수보다 높지만, 보호처분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117.0%(3,812건), 2011년 96.2%(2,971건), 2012년 95.4%(3,626건), 2013년 88.1%(5,699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보호처분의 내용 또한,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단순처분에 속하는 접근 행위제한, 사회봉사 수감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보다 병과처분이 가장 높았지만 2013년에는 상담위탁(1,177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이 보호관찰(668건), 사회봉사 수감명령(667건)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3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법원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처분이 단순처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이 약함을 알 수 있다.

<표 3-1> 법원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단위: 명)

구분	접수 건수	보호처분							불처분
		전체	접근행위 제한	사회봉사 수감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병과처분	
2010년	3,257	3,812(117.0%)	46	369	332	21	735	865	1,275
2011년	3,087	2,971(96.2%)	41	273	304	8	501	724	974
2012년	3,801	3,626(95.4%)	91	334	359	10	627	830	1,206
2013년	6,468	5,699(88.1%)	94	667	668	19	1,177	1,121	1,772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나.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제주지역 경찰청자료(2010-2013)를 토대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2010년 131건, 2011년 58건, 2012년 96건, 2013년 320건으로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절반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2012년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특히,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3.5배로 증가했다.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발생건수와 비교해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2010년에 128명, 2011년 56명, 2012년 101명, 2013년 325명이다. 그러나 구속조치는 2010년에 0건, 2011년 1건, 2012년 3건, 2013년 7건으로 낮다. 가정보호의견송치 또한, 2010년 1건, 2011년 0건, 2012년 1건, 2013년 28건으로 가정폭력 발생건수와 비교해 볼 때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2〉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

구분	발생건수(검거건수)	검거 인원	조치		가정보호의견송치(건)
			구속	불구속	
2010년	131	128	0	128	1
2011년	58	56	1	55	0
2012년	96	101	3	88	1
2013년	320	325	7	318	28

자료: 제주지역 경찰청 내부자료.

한편, 가정폭력 재범인원을 살펴보면, 2010년에 18명, 2011년 31명, 2012년 29명, 2013년 28명으로 2010년보다 2013년에는 10명 정도 많아졌다(<표 3-3>참조).

〈표 3-3〉 가정폭력 재범인원 수

(단위: 명)

구분	재범인원
2010년	18
2011년	31
2012년	29
2013년	28

자료: 제주지역 경찰청 내부자료

그러나 경찰이 가정폭력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인 임시조치신청 및 긴급임시조치신청과 집행현황을 살펴보면(<표 3-4>참고) 임시조치신청은 2010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19건, 2013년 83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에 많아졌다. 임시조치신청대비 집행건수비율을 임시조치신청이 많았던 2012년과 2013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2년 임시조치신청대비 집행은 57.9%로 절반 이상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91.6% 정도 집행되었다. 또한,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된 긴급임시조치처분도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14건이다. 결정건수는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10건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긴급임시조치가 적절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수치는 임시조치신청과 긴급 임시조치신청을 통해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경찰의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표 3-4〉 가정폭력사건의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신청과 집행현황 (단위: 명)

구분	임시조치신청	집행	긴급임시조치처분	결정건수
2010년	1	0	2011.10.26부터 시행	
2011년	1	1	1	1
2012년	19	11	2	2
2013년	83	76	14	10

자료: 제주지역 경찰청 내부자료

제주지역에서 검거된 가정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내학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내학대는 2010년 102건, 2011년 30건, 2012년 56건, 2013년 260건으로 2011년 감소하다가 2013년 급증했다. 남편학대도 2012년 1명으로 줄다가 2013년 15명으로 증가했다. 자녀학대는 2010년 이후 없었으며 2013년에 13건으로 증가했다. 노인학대도 2011년 1건으로 줄다가 2012년 12건, 2013년 15건으로 증가했다(<표 3-5>참조).

〈표 3-5〉 가정폭력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아내학대	남편학대	자녀학대	노인학대	기타
2010년	131	102	6	1	4	18
2011년	58	30	3	0	1	24
2012년	96	56	1	0	12	27
2013년	320	260	15	13	15	17

자료: 제주지역 경찰청 내부자료

2. 국내 · 외 정책동향

가. 국내 가정폭력 관련 정책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초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담, 쉼터제공 등이 전개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본 장에서는 우선 가정폭력 관련 정책에 있어 가정폭력 관련 법과 관련하여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가정폭력 관련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가정폭력 관련 법

먼저, 2011년 이후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7월 25일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가 신설되어 가정폭력피해 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 또한, 판사에게 피해자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임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설했다. 또한, 2012년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교사 및 종사자 그리고 기관장, 아동과 60세 이상 노인 그 밖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및 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 인력과 그 장,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상담원과 기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2009년 5월 8일부터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을 위해 각 시도별로 긴급전화 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며,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를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할 때 입소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긴급전화 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실시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했으며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부여를 신설했다. 이후, 2010년 2월 4일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한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신설했다. 같은 해 5월 17일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긴급전화 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과 지원 등에 반영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와 가정폭력관련기관의 종사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전화 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와 상담원을 긴급히 구조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신설했다. 더불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업자에게 배포하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홍보영상제작·배포 등에 관한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2013년 7월 30일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현장조사(제9조의 4항)를 실시할 것으로 전문 개정했으며 국가기관, 지자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가정폭력피해의 문제점과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4년에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 점검(제4조의 3항) 등이 신설되었다.

2) 가정폭력 관련 정책

중앙 정부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은 크게,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실화',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가정폭력 방지 실효성 제고'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지정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6월에는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초기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보호확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를 3개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017년까지 가정폭력재범률을 25.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여성가족부, 2013: 46).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2013.06.28)」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실화' 관련 정책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보호지원 확대와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임시보호소마련, 1366긴급 구조기능 강화, 가족보호시설, 주거 지원시설 확대, 쉼터·그룹 홈·자활지원센터 확대,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 교섭권 제한 적용,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시설 입소 여성 건강검진·직업훈련비 등 지원, 피해자권리보호제도 적극 홍보, 가정폭력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이주여성 대상 통역 지원 강화, 1577-1366 착신시스템 개선, 상담언어 확대,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을 통한 지원 강화, 공인여성 관련 단체 발급 확인서 '혼인단절 귀책사유 증빙자료' 인정,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 및 신고 활성화 등의 정책이 포함된다.

둘째, '여성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정책으로는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 확대,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전국 확대, 경찰관 대상 교육 강화, 검찰·법원 직무교육 내 가정폭력 과목 개설 등 학부모 교육 강화까지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가정폭력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2차 피해 방지, 가정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하고 있다. 관련정책으로는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 현행법 체포 및 주취 상태자 경찰관서 분리 검토, 상습·흥기이용 사범 구속 수사, 이주여성·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 엄격한 기준 적용, 상습·고질 폭력 과거 전과·추가여죄 등 적극 확인, 초범·합의자 원칙적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적용, 공소권 없음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감호위탁 보호처분제 실효성 제고, 가해자 교정치료 상담 중도탈락자 관리 강화, 치료위탁 처분 활성화, 수용자 맞춤형 교육 실시 등 가정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관련 조례와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도 2011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여성폭력으로 정의하고(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792호 제2조의 1항)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가정폭력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행위로 정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 및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가정폭력피해자의 치유회복, 자립,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의료지원, 심리치료, 교육훈련, 직업훈련비 지원,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한다(제18조). 또한,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자녀를 위해서는 아동양육비, 교육비, 피복비, 출산 및 산후도우미지원 등에 대한 지원조항이 있으며, 여성폭력 보호·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준하는 생계비, 직업훈련비 등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관련 조례 제 24조와 25조, 26조에는 특별법 제 341조 및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특별법 제 341조 및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보호시설의 종사자수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정폭력 보호시설 2개소, 가정폭력 상담소 3개소, 가정폭력·성폭력통합 상담소 2개, 여성긴급 전화 1366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²⁾. 구체적 정책내용은 가정폭력 관련시설 운영 지원과 가정폭력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가정폭력예방 캠페인 개최,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의 양육비·자립지원비·주거비 지원, 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관련 정책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3가지 핵심과제인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예방, 초기대응과 가해자처벌강화 관련 정책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가해자처벌 강화관련 사업을 포함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국외 가정폭력 관련 정책

서구에서 반여성폭력운동의 근원은 여성해방운동이었으며(신상숙, 2006) 미국, 유럽, 호주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여성폭력피해자 기관 및 시설이 설립되고 유치되기 시작했다(이원숙, 1998). 물론,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오랜 여성해방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반여성폭력운동을 펼쳐 온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방기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의 가정폭력방기관련 법률은 1994년에 만들어진 연방정부차원의 여성폭력방지법(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과 1980년대 가정폭력 가해자의 체포를 경찰에게 의무화하는 가정폭력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법률이다.

먼저 여성폭력방지법(VAWA)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 2005년, 2013년 폭력피해자의 안전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수정 및 연장되었다. 미국최초의 보호명령법이 1962년 뉴욕주에서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 제정목적은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지키는것’이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10). 이 때문에 판사들이 가해남성에게 퇴거명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해 1977년 이후 뉴욕주 의회는 제정 목적을 ‘가족에 대한 폭력의 방지’로 재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폭력행위와 성적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정폭력의 당사자를 분리시킬 것’으로 했다(박소현, 2013). 그 결과, 1970년

2)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대 중반 이후 가정폭력 대응법과 정책마련이 시작되면서 각 주에서는 의무적인 신고, 체포우선주의, 의무기소를 주요정책으로 삼았다. 이후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을 통합하는 연방차원의 여성폭력방지 및 대응에 관한 여성폭력방지법(VAWA)이 제정되었다.

여성폭력방지법(VAWA)의 주요내용 중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돕는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을 경찰·검찰 등의 의무체포, 의무기소정책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정폭력 피해이주여성들이 이 법에 근거해 남편의 동의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폭력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 다음은 가정폭력가해자 체포우선주의로 경찰에게 현장에서 폭력이 없더라도 추정해 폭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경찰에게 가해자를 체포해 격리시킨 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낮추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13).

가정폭력방기관련제도를 살펴보면, 법무부의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자일터서비스(법무부 소속직원이 자신이 법원의 보호명령보호를 받고 있음을 직장에 알려 상사 또는 관련부서 직원, 인사과에서 직원을 보호하는제도),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청각장애인에도 제공되는 전국무료응급전화, 구타당한 여성을 위한 쉼터, 5개의 전국자원센터 운영-가정폭력관련 전국자원센터·민형사법관련자원센터·아동부양및보호관련자원센터·가정폭력관련보건자원센터·인디언부족과 부족민을 위한 자원센터, 가족유지 및 가족지원프로그램-어린이 안전보장조치·학대당한 어린이 가족들에게 바람직한 부모역할과 안정적 가정환경조성을 위한 지지적 서비스제공), 경찰의 가정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특별부서구성, 위기개입, 사건관리, 사회복지안내서비스, 지역사회지원서비스, 법정진술권), 폭력피해여성의 정보관리(자산조사를 금지하고 개인정보발설을 강하게 금지), 피해자보상프로그램(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비용, 장례비용, 범죄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집단 상담치료, 가해자연구) 등이 있다.

2) 영국

영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1996년에 개정된 가족법에 편입되어 가족법에 근거해 가해자 격리 및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38). 1998년에는 범죄 및 불법행위관련법에 의해 가정폭력문제를 지역범죄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2004년에 UN협정에 근거해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에 관한 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 Act)에 적용받으며 검사, 판사, 법률자문, 경찰관이 참여하는 가정폭력전담법원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과 보호를 제

공하고 있다. 2006년에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천강령을 규정해 정해진 시한 내에 범죄관련 정보(범인체포여부, 재판일정 등)를 피해자에게 제공, 피해보상금 수혜자 자격여부 확인, 피해자에게 지원단체 정보주기 및 그 단체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등의 후속조치 등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정폭력방기관련제도를 살펴보면, 평등부서에서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전략을 수립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지원과 정부주도의 가정폭력예방활동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첫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지원은 긴급전화 999, 현장 경찰에게 가해자격리 등 임시조치권 부여, 가정폭력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가 가정폭력발생 후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최대 28일까지 접근금지를 할 수 있으며, 2014년 3월 시범운영하는 가정폭력정보공개청구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를 통해 새로운 배우자 또는 현재의 파트너가 폭력 사건 등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경찰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가 쉼터와 임시거주지를 신청할 경우, 지방정부는 거주지를 마련해야하며 영구임대주택 배정 시에도 우선권을 부여해야한다.

둘째, 정부주도의 가정폭력예방활동으로는 정부주도로 TV매체와 전단지를 활용해 지역사회중심의 가정폭력예방캠페인을 벌이고, 2011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개인·사회·건강교육 시간’을 활용해 가정 내 폭력예방과 성평등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3) 호주

호주는 기존의 형법에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연방정부차원에서 여성의 관점과 이익이 반영되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족법에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주별로 가정폭력보호명령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38).

가정폭력방기관련제도를 살펴보면, 가족·주택·공동체서비스 및 원주민업무부처 내 여성지위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예방을 위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감소 국가계획 2010-2022를 수립했으며, 여성과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재단설립에 호주정부는 100만 달러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호주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와 연구물을 배포, 열람,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사회서비스 급여(지원금)를 지원한다. 또한 긴급전화 000과 여성서비스네트워크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정폭력살인방지모니터링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폭력살인사건의 위험요인을 연구하고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개입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국외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 변화와 지역사회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개발과 제공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4. 가정폭력 경험
5. 가정폭력피해의 영향
6.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7.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
8. 소결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

제주 특별자치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로 정의할 수 있으나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가구를 조사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 내에서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대상자를 최종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추출된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가구’는 통계청 가구 정의에 따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로 규정하고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의 최종 조사대상자는 제주지역에 상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이다. 조사대상은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가구주는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분으로 정하였다. 가구원은 가구주 이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로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가족이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되며,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하였다.

나. 조사방법

1) 표본의 설계

표본의 추출은 층화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였다. 층화계통추출법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1차 층화하고 다시 각각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층화한 후 각 읍면동에서 인구비례로 ‘조사지점’을 정하고 정해진 조사지점에서 계통적 방법으로 가구를 선정하여 그 가구에서 응답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본 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가 아니므로 가구명부(조사구 요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청 SGIS를 이용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였다. 통계청 SGIS는 전국 1,300만 장소, 300만 사업장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읍면동의 약 1/23 크기인 집계구 단위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조사지점 내에서 가구의 선정은 한 조사지점 내에 있는 전체 가구를 15로 나누어 매 k번째 가구를 계통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본 연구에서 조사지점은 148개로 제주시 99개, 서귀포시 40개이다. 각 지점에서 최소 20명씩 조사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1.79\%$ 이다.

조사기간은 2014년 8월 18일~10월 3일까지 총 7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는 전문면접

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의 조사표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 조사 표본

(단위: 명)

구분	전체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제주특별자치도	3,000	167	217	154	293	349	543	282	315	289	391
제주시 전체	1,984	125	159	98	193	241	370	178	204	177	239
한림읍	96	5	1	7	6	4	14	8	21	9	21
애월읍	114	4	5	3	18	29	38	7	5	1	4
구좌읍	80	3	6	3	5	9	18	5	5	12	14
조천읍	96	10	10	3	7	10	23	17	14	0	2
한경면	62	0	0	4	3	10	4	16	3	12	10
일도1동	40	0	7	0	2	7	8	2	3	5	6
일도2동	124	7	6	2	13	23	49	8	11	2	3
이도1동	60	2	7	5	6	7	10	3	5	7	8
이도2동	144	11	21	6	19	9	25	5	16	14	18
삼도1동	79	8	10	1	4	11	11	12	14	2	6
삼도2동	66	7	3	3	6	9	8	7	7	7	9
용담1동	61	6	4	4	1	2	2	6	8	14	14
용담2동	88	8	2	2	8	8	8	10	9	17	16
간입동	68	3	10	6	5	4	6	6	9	8	11
화북동	100	3	10	3	11	16	37	5	7	3	5
삼양동	75	10	10	4	7	16	13	6	7	1	1
봉개동	36	1	2	1	9	5	9	2	3	0	4
아라동	94	6	8	3	10	9	16	9	7	5	21
오라동	61	2	6	3	5	10	5	5	3	11	11
연동	137	15	13	12	8	11	19	23	15	9	12
노형동	144	7	13	7	15	16	25	6	15	15	25
외도동	82	1	1	10	18	8	12	4	8	10	10
이호동	42	5	2	3	5	1	4	4	5	8	5
도두동	35	1	2	3	2	7	6	2	4	5	3

(계속)

(계속)

구분	전체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제주특별자치도	3,000	167	217	154	293	349	543	282	315	289	391
서귀포시 전체	1,016	42	58	56	100	108	173	104	111	112	152
대정읍	84	5	2	5	4	9	17	6	6	8	22
남원읍	87	2	7	8	13	8	14	11	11	5	8
성산읍	78	1	1	3	5	4	6	6	9	21	22
안덕면	64	0	4	7	6	7	15	4	6	5	10
표선면	69	1	3	1	5	7	9	1	8	16	18
송산동	46	4	1	2	3	5	5	5	4	8	9
정방동	35	1	6	1	8	4	5	2	5	1	2
중앙동	45	4	0	2	3	4	4	7	6	7	8
천지동	42	3	5	3	7	3	8	3	4	3	3
효돈동	46	4	3	3	3	5	7	7	8	3	3
영천동	45	0	0	2	7	9	9	3	2	7	6
동홍동	91	4	12	6	8	5	20	9	9	9	9
서홍동	62	7	3	2	3	8	9	8	7	6	9
대륜동	66	2	3	3	10	6	12	11	8	6	5
대천동	56	2	3	0	5	12	14	10	7	0	3
중문동	61	2	2	5	6	6	14	6	6	5	9
예래동	39	0	3	3	4	6	5	5	5	2	6

주: 지역적 접근의 한계로 우도면, 추자면 등 도서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2) 조사내용

본 조사의 내용은 조사대상에 관한 일반현황인 가구구성현황과 개인관련 사항을 조사하였다. 가구구성현황은 가구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유형, 월평균가구 소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개인관련 사항에는 응답자의 학력, 고향, 취업여부, 직종, 생활만족도, 장애 여부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표 4-2〉 가구구성 관련 조사내용

영역	세부항목
가구구성표	o 가구주와의 관계
	o 성별
	o 연령
	o 혼인상태
가구유형	o 가구유형
	o 주택유형
	o 주택점유형태
기타	o 세대구성
	o 월평균 가구소득
	o 가구의 주 소득원
	o 가구 경제상태

〈표 4-3〉 개인 관련 조사내용

영역	세부항목
개인적 특성	o 학력
	o 제주특별자치도 거주현황
	o 고향
취업	o 본인/배우자 취업여부
	o 본인/배우자 미취업사유
	o 본인/배우자 직종
	o 본인/배우자 종사상의 지위
	o 본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
	o 본인 월평균 근로소득
	o 직장만족도 및 구직 어려움 정도
기타	o 일자리 우선정책
	o 여성취업지원대상 중 우선 지원대상
	o 생활 전반적 만족도 및 사회적 지위
	o 장애여부 및 등급, 장애유형

가정폭력 관련 조사항목은 가정폭력에 관한 원인 및 통념, 가정폭력방지관련법 인식 및 인식경로, 가정폭력방지관련 서비스인식, 가정폭력피해경험, 가정폭력 피해이후 대응방법, 가정폭력의 후유증, 가정폭력피해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 가정폭력방지 관련정책에 관한 요구조사, 지난 1년간 부부폭력경험, 지난 1년간 (손)자녀에 대한 폭력경험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4-4〉 가정폭력 관련 조사내용

영역	세부항목
폭력과 인식	o 가정폭력의 원인
	o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
	o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 인지여부 등
	o 공공 서비스 인지여부
가정폭력 피해경험	o 유형별 피해경험 및 최초피해연령
	o 유형별 지난 1년간 부부 및 (손)자녀 폭력피해경험
	o 가정폭력 피해의 후유증
대응	o 대응방법
	o 대응하지 않은 이유
	o 도움요청기관
	o 경찰 및 기관서비스 만족도
정책수요	o 필요한 공공서비스
	o 가정폭력 예방정책

3) 조사측정 도구

관련 조사항목에 대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①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측정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개인의 인식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정폭력의 원인을 폭력에 대한 태도, 관계적 원인, 경제적 문제, 피해자 원인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했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김준호·김선애(1991)의 ‘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 1문항으로 축소 보완했다. 관계적 원인과 피해자 원인은 여성가족부(2011: 330-343)가 개발한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 분류표에서 친밀감 욕구, 부부폭력에 대한 태도항목에서 3문항을 선정하였다. 경제적 문제는 Homes와 Rahe(1967)의 ‘Stressful Life Scale’을 통해 경제적 문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어려움 등의 2개 문항으로 축소 보완했다.

② 가정폭력 통념에 대한 인식 측정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은 부부싸움에 대한 속담, 부부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 학습의 결과, 경제적 문제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했다. 부부싸움에 대한 속담으로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로 1문항을 구성했다. 부부폭력에 대한 태도는 여성가족부(2011: 330-343)

가 개발한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 분류표에서 '부부폭력에 법적인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 '폭력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보완해 4개 문항을 구성했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김준호·김선애(1991)의 '폭력에 대한 태도'척도에서 2문항으로 축소 보완했다. 학습의 결과는 Straus 외(1998)의 PCCIS(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에서 1개 문항을 선정해 보완했으며, 경제적 문제는 Homes와 Rahe(1967)의 'Stressful Life Scale'을 통해 1개 문항으로 축소 보완했다.

③ 가정폭력 피해경험 측정

조사대상자의 지금까지 가정폭력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시한 가정폭력의 정의³⁾를 보완해 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로 부터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각 1문항씩 총 7문항으로 구성했다.

④ 지난 1년간 부부폭력경험 및 (손)자녀폭력 가해경험 측정

조사대상자 중 유배우자의 경우 지난 1년간 부부폭력경험과 (손)자녀폭력가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부부폭력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2013: 89)의 부부폭력지표 중 방임과 통제를 제외한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을 보완해 15개 문항으로 만들었다.

지난 1년간 (손)자녀폭력가해경험을 측정하기위해 여성가족부(2013: 93-94)의 자녀폭력지표 중 방임을 제외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에서 6개 문항으로 축소 보완했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총 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3) 가족들로부터의 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 4-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거주지 유형	전체	3,000	(100.0)
	제주시 동지역	1,536	(51.2)
	제주시 읍·면지역	448	(14.9)
	서귀포시 동지역	634	(21.1)
	서귀포시 읍·면지역	382	(12.7)
성별	전체	3,000	(100.0)
	남성	1,503	(50.1)
	여성	1,497	(49.9)
연령	전체	3,000	(100.0)
	만19세~29세	544	(18.1)
	만30~39세	566	(18.9)
	만40~49세	635	(21.2)
	만50~59세	600	(20.0)
	만60세 이상	655	(21.8)
최종학력	전체	3,000	(100.0)
	중졸 이하	595	(19.9)
	고졸	1,387	(46.2)
	대졸 이상	1,018	(33.9)
제주고향	전체	3,000	(100.0)
	제주	2,373	(79.1)
	비제주	627	(20.9)
장애여부	전체	3,000	(100.0)
	장애인	92	(3.1)
	비장애인	2,908	(96.9)
혼인상태	전체	3,000	(100.0)
	미혼	609	(20.3)
	기혼	2,006	(66.9)
	사별	246	(8.2)
	이혼	98	(3.3)
	별거	33	(1.1)
	사실혼(동거)	7	(0.2)

먼저 거주지 유형은 제주 동지역 1,536명(51.2%), 제주 읍·면지역 448명(14.9%), 서귀포 동지역 634명(21.1%), 서귀포 읍·면지역 382명(12.7%)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1503명

(50.1%), 여성 1497명(49.9%)이다. 연령별로는 만19세~29세 544명(18.1%), 만30~39세 566명(18.9%), 만40~49세 635명(21.2%), 만50~59세 600명(20.0%), 만60세 이상 655명(21.8%)이다.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19.9%, 고졸 46.2%, 대졸 이상 33.9%이다. 응답자의 2,373명(79.1%)은 제주가 고향⁴⁾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92명(3.1%)이고 나머지는 비장애인이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이 2,006명(66.9%)로 대부분 기혼여성이었으며, 미혼 20.3%, 사별 8.2%, 이혼 3.3%, 별거 1.1%, 사실혼(동거)이 0.2%이다.

나. 조사대상자의 가구 및 가족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구 및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가구주는 1,544명(64.6%)이며, 가구유형은 대다수가 비농어가(82.7%)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구성을 보면 2세대가구(50.4%)가 가장 많았으며 1세대(42.0%), 3세대(7.4%), 4세대 이상 및 비친족 가구(0.3%)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가구유형을 보면 부부+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핵가족 가구가 38.1%, 1인가구가 24.0%, 부부가구가 17.0%, 한부모 가구가 9.7%, 3대가 함께 사는 가구가 7.4%, 조손가구가 0.9%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2명이 3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명 이상이 28.7%, 없음 24.1%, 1명 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대표성 확인을 위해 제주 지역의 가구 및 가족의 특징과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1인 가구, 부부가구,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한부모 모자가구, 한부모 부자가구 조손가구는 전체 가구의 24.0%, 15.9%, 35.4%, 7.3%, 2.4%, 0.9%로 분포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상의 가구가 각각 24.0%, 17%, 38.1%, 7.6%, 2.0%, 0.9%로 부부 및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가 평균보다 다소 과표집 되었으나 나머지는 제주 지역의 평균과 비슷한 분포로 표집되었다.

4) 본 연구에서 '고향'이란 제주에서 태어나고, 일정 기간을 제주에서 생활한 경험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표 4-6〉 조사대상자의 가구 및 가족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가구주여부	전체	2,392	(100.0)
	가구주	1,544	(64.6)
	가구원	848	(35.4)
가구유형	전체	2,392	(100.0)
	농어가	413	(17.3)
	비농어가	1,979	(82.7)
세대구성	전체	2,392	(100.0)
	1세대	1,004	(42.0)
	2세대	1,205	(50.4)
	3세대	177	(7.4)
	4세대 이상	2	(0.1)
	비친족 가구	4	(0.2)
세대별 가구유형	전체	2,392	(100.0)
	1인가구	575	(24.0)
	부부가구	406	(17.0)
	부부+미혼자녀가구	911	(38.1)
	한부모가구	231	(9.7)
	조손가구	22	(0.9)
	3대가족	177	(7.4)
	기타	70	(2.9)
자녀수	전체	3,000	(100.0)
	없음	723	(24.1)
	1명	399	(13.3)
	2명	1,017	(33.9)
	3명이상	861	(28.7)

3.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즉 개인들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정폭력의 원인은 폭력에 대한 태도 원인, 관계적 원인, 경제적 원인, 피해자 원인 등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조사결과 ‘가정폭력피해자의 무대응’(75.7%)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는 문항에 '동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일반폭력에 관대할수록'(68.6%),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63.5%), '배우자의 열등감'(60.5%), '경제적 어려움'(59.8%)', '배우자에 대한 애착'(45.6%)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의 무대응, 즉 피해자 자신의 탓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폭력에 대한 태도의 문제, 즉 폭력에 관대한 태도가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는 문화적 인식도 강했다.

〈표 4-7〉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전체
	계	전혀동의하지 않는다	별로동의하지 않는다	계	다소동의한다	매우동의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무대응	731(24.4)	156(5.2)	575(19.2)	2,269(75.7)	1,109(37.0)	1,160(38.7)	3,000(100.0)
일반 폭력에 관대	943(31.5)	305(10.2)	638(21.3)	2,057(68.6)	1,434(47.8)	623(20.8)	3,000(100.0)
부부간 의사소통 어려움	1,096(36.5)	190(6.3)	906(30.2)	1,904(63.5)	1,362(45.4)	542(18.1)	3,000(100.0)
배우자의 열등감	1,187(39.5)	259(8.6)	928(30.9)	1,813(60.5)	1,430(47.7)	383(12.8)	3,000(100.0)
경제적 어려움	1,204(40.1)	205(6.8)	999(33.3)	1,796(59.8)	1,399(46.6)	397(13.2)	3,000(100.0)
배우자에 대한 애착	1,630(54.3)	480(16.0)	1,150(38.3)	1,370(45.6)	1,159(38.6)	211(7.0)	3,000(100.0)

주: 4점 척도(1 전혀동의하지 않는다 ~ 4 매우동의한다)

1) 성별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

성별로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가 어느 정도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4점 척도의 평균값을 구해 분석한 결과 남녀모두 '가정폭력피해자의 무대응'이 각각 3.09, 3.11로 가장 높았다. 반면, '배우자의 열등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의 원인이라는 항목에서는 성별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배우자의 열등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4-8>참조).

〈표 4-8〉 성별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구분	남성		여성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반폭력 관대	2.79	0.86	2.81	0.90	-0.809
배우자 열등감	2.58	0.82	2.71	0.81	-4.165***
배우자 애착	2.35	0.84	2.39	0.83	-1.445
의사소통 부재	2.72	0.84	2.77	0.81	-1.704
경제적 어려움	2.57	0.78	2.71	0.79	-4.840***
폭력 무 대응	3.09	0.87	3.11	0.88	-0.835

주: 4점 척도(1 전혀동의하지 않는다 ~ 4 매우동의한다), 남성사례수는 1,503명이고, 여성사례수는 1,497명임,

***p<.001, t값은 독립표본 t검정 분석결과

2) 연령별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

세대별로 가정폭력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4점 척도의 평균값을 구했다. 분석한 결과 '폭력에 무 대응할수록 가정폭력이 지속된다'는 견해는 20대 이하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젊은 층일수록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의 무 대응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6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는 '일반폭력에 관대할수록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라는 항목에 다른 연령대 응답자 보다 더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표 4-9> 연령별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구분	만19~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59세		만60세이상		F	Dunca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반폭력관대	2.77	0.91ab	2.86	0.92b	2.72	0.93a	2.74	0.89a	2.90	0.73c	5.086***	a<b<c
배우자열등감	2.65	0.89	2.71	0.86	2.58	0.82	2.66	0.80	2.64	0.72	2.055	
배우자에착	2.37	0.92	2.37	0.84	2.34	0.87	2.36	0.81	2.40	0.76	0.398	
의사소통부재	2.74	0.88	2.83	0.85	2.72	0.85	2.73	0.83	2.73	0.73	1.710	
경제적어려움	2.54	0.82a	2.64	0.82b	2.67	0.82b	2.62	0.77ab	2.72	0.71b	4.233**	a<b
폭력무대응	3.19	0.87b	3.15	0.88b	3.08	0.90ab	3.09	0.89ab	3.01	0.83a	3.813**	a<b

주: 4점 척도(1 전혀동의하지 않는다 ~ 4 매우동의한다), F값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이며, 사후검증은 Duncan test의 결과이고, 알파벳 문자가 다르면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p<.01, ***p<.001

3) 가구소득 수준별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

경제력에 따른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가구소득별 분석 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서 '가정폭력에 무 대응할수록 가정폭력이 지속된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라는 항목에서는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다른 소득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만원 이상 가구는 '배우자의 열등감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는 항목에 다른 가구들보다 더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가구소득 수준별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구분	100만원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400~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F	Dunca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반폭력관대	2.72	0.77a	2.77	0.79a	2.91	0.85b	2.75	0.90a	2.79	0.96a	2.76	0.99a	3.618**	a<b
배우자열등감	2.60	0.71a	2.67	0.77a	2.65	0.83a	2.56	0.85a	2.65	0.84a	2.80	0.83b	4.099**	a<b
배우자에착	2.40	0.74b	2.44	0.84b	2.44	0.83b	2.25	0.83a	2.34	0.88ab	2.35	0.88ab	4.561***	a<b
의사소통부재	2.65	0.73a	2.72	0.80b	2.78	0.85bc	2.70	0.87ab	2.79	0.80bc	2.86	0.84c	3.328**	a<b<c
경제적어려움	2.76	0.69b	2.65	0.77ab	2.57	0.86a	2.55	0.78a	2.72	0.74b	2.74	0.80b	6.259***	a<b
폭력무대응	2.96	0.80a	3.04	0.85ab	3.12	0.91bc	3.07	0.92ab	3.20	0.81cd	3.25	0.88d	5.312***	a<b<c<d

주: 4점 척도(1 전혀동의하지 않는다 ~ 4 매우동의한다), F값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이며, 사후검증은 Duncan test의 결과이고, 알파벳 문자가 다르면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p<.01, ***p<.001

4) 지역별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

지역별로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제주시 지역 거주자와 서귀포시 지역 거주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가정폭력에 무 대응할수록 가정폭력이 지속된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 제주시 거주자들(동지역과 읍면지역포함)은 ‘배우자의 열등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라는 인식이 서귀포시 거주자들(동지역과 읍면지역포함)보다 높았고, 서귀포시 거주자들은 ‘일반폭력에 관대할수록’, ‘가정폭력에 무 대응할수록 가정폭력이 지속된다’라는 인식이 제주시 거주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더 자세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동지역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라는 인식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는 ‘일반폭력에 관대할수록’, ‘배우자의 열등감’, ‘배우자에 대한 애착’, ‘부부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인식에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표 4-11〉 지역별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구분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F	Duncan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반폭력관대	2.73	0.93ab	2.67	0.93a	3.04	0.67c	2.82	0.83b	23.121***	a<b<c
배우자열등감	2.67	0.80b	2.67	0.84b	2.70	0.81b	2.43	0.83a	10.404***	a<b
배우자에착	2.35	0.86	2.39	0.80	2.43	0.77	2.33	0.90	1.894	
의사소통부재	2.73	0.83	2.73	0.78	2.80	0.83	2.77	0.89	1.440	
경제적어려움	2.70	0.79c	2.65	0.76bc	2.57	0.79ab	2.53	0.80a	6.585***	a<b<c
폭력무대응	3.08	0.85b	2.94	0.89a	3.23	0.86c	3.18	0.95c	10.745***	a<b<c

주: 4점 척도(1 전혀동의하지 않는다 ~ 4 매우동의한다), F값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이며, 사후검증은 Duncan test의 결과이고, 알파벳 문자가 다르면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p<.001

나. 가정폭력 관련 통념

가정폭력 관련 통념을 살펴보기 위해 부부싸움에 대한 속담, 부부폭력에 대한 태도, 일반 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와 ‘어린시절부모의 가정폭력경험이 폭력을 유발한다’는 통념을 제외한 다른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2.7%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와 ‘어린시절 부모의 가정폭력경험이 폭력을 유발한다’는 통념에 대해서는 각각 49.3%와 42.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표 4-12> 참조) 이 두 문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을 수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2> 가정폭력 관련 통념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직으로 손꼽을 할 수 있다	맞은 사람은 맞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칠다	경위에 따라서는 폭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	남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아내에게 폭력을 쓸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의 일이기에 때문에 신중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로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문제이다
전체									3,000(100.0)
그렇다	1,478 (49.3)	440 (14.7)	390 (13.0)	215 (7.2)	1,286 (42.9)	207 (6.9)	360 (12.0)	372 (12.4)	519 (17.3)
그렇지 않다	1,522 (50.7)	2,560 (85.3)	2,610 (87.0)	2,785 (92.8)	1,714 (57.1)	2,793 (93.1)	2,640 (88.0)	2,628 (87.6)	2,481 (82.7)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라는 통념에 대해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53.0%)은 여성(45.6%)보다 ‘그렇다’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동지역(즉 도시지역) 거주자들보다 ‘그렇다’라는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4-13>참조). 남성일 수록, 농촌지역 거주자일수록 부부싸움은 개인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4-13> 부부싸움은 칼로물베기이다 (성별 · 지역별 인식차이)

(단위: 명, %)

구 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		전체	χ^2
	그렇다	아니다		
전체	1,478(49.3)	1,522(50.7)	3,000(100.0)	
성별	남성	796(53.0)	707(47.0)	16.445**
	여성	682(45.6)	815(54.4)	
지역별	제주시 동지역	674(43.9)	862(56.1)	64.050**
	제주시 읍면지역	244(54.5)	204(45.5)	
	서귀포시 동지역	309(48.7)	325(51.3)	
	서귀포시 읍면지역	251(65.7)	131(34.3)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 라는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동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가정폭력의 원인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14〉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성별·지역별 인식차이) (단위: 명, %)

구 분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		전체	χ^2
	그렇다	아니다		
전체	1,246(41.5)	1,754(58.5)	3,000(100.0)	
성별	남성	946(62.9)	1503	24.830***
	여성	689(46.0)	1497	
지역별	제주시 동지역	871(56.7)	1536	28.072***
	제주시 읍면지역	311(69.4)	448	
	서귀포시 동지역	346(54.6)	634	
	서귀포시 읍면지역	225(58.9)	382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p<.001

4. 가정폭력 경험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가정폭력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시한 가정폭력의 정의를 제시했으며, 응답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구성원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경험했는지와 최초피해연령을 물었다. 조사결과, 가정폭력 평생 피해경험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는 총 3000명중 232명으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징은 <표 4-15>와 같다.

먼저 성별로 가정폭력피해자를 살펴보면 여성이 103명(59.2%), 남성이 71명(40.8%)으로 여성들이 많았으며, 연령별로 40-49세(35.8%)와 50-59세(24.1%)인구의 가정폭력경험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의 학력은 고졸(41.1%)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졸(38.4%), 중졸(20.3%)의 순이었다. 이들의 장애여부를 살펴본 결과 비장애인이 94.8%였으며, 취업여부는 취업자가 169명(72.8%), 미취업자가(27.2%)로 이들의 2/3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자의 혼인상태는 기혼 157명(67.7%), 미혼 31명(13.4%), 사별 22명(9.5%), 이혼 19명(8.2%), 별거 2명(0.9%), 사실혼(동거) 1명(0.4%) 순이며

이들의 가구소득은 300-399만원대가 2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0-299만원대가 21.1%였으며 100만원미만 저소득 가구도 14.2%였다.

〈표 4-15〉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32	(100.0)
성별	여성	103	(59.2)
	남성	71	(40.8)
연령	19-29세	27	(11.6)
	30-39세	34	(14.7)
	40-49세	83	(35.8)
	50-59세	56	(24.1)
	60세 이상	32	(13.8)
학력	중졸	47	(20.3)
	고졸	96	(41.4)
	대졸	89	(38.4)
장애여부	장애	12	(5.2)
	비장애	220	(94.8)
취업상태	취업	169	(72.8)
	미취업	63	(27.2)
혼인상태	미혼	31	(13.4)
	기혼	157	(67.7)
	사별	22	(9.5)
	이혼	19	(8.2)
	별거	2	(0.9)
	사실혼(동거)	1	(0.4)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3	(14.2)
	100-199만원	30	(12.9)
	200-299만원	49	(21.1)
	300-399만원	57	(24.6)
	400-499만원	30	(12.9)
	500만원 이상	33	(14.2)

주: 가정폭력 피해는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평생피해를 조사한 것임.

나. 가족구성원의 폭력피해경험

1) 성별 가정폭력 피해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건수별로 분석해보면, 전체 응답자 중 308건(10.3%)의 가정폭력 경험이 있으며 여성 응답자의 가정폭력 경험건수가 206건(13.8%)으로 남성 응답자 102건(6.8%)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참조).

〈표 4-16〉 가정폭력 피해 및 성별 피해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3,000명	1,497명	1,503명
폭력경험 사례수	전체(중복포함)	308건	206건	102건
	비율	10.3%	13.8%	6.8%

주: 1) 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합계

2) 중복응답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 사례수로 볼 때, 가정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232명(7.7%)

가정폭력 피해건수(308건)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 66.9%(206건), 남성 33.1%(102건)으로 여성의 피해 건수가 두 배 이상을 차지한다(<표 4-17>참조).

〈표 4-17〉 성별로 본 가정폭력 피해건수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08	(100.0)
여성	206	(66.9)
남성	102	(33.1)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비율은 백퍼센트로 환산한 것임

2) 가해자와의 관계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아버지로부터 폭행(35.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배우자로부터 폭행(24.7%), 형제자매로부터의 폭행(20.1%), 어머니로부터의 폭행(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로부터의 폭행경험이 1.6%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성피해자들은 배우자(33.5%), 아버지(26.7%), 어머니(20.9%), 형제자매(17.5%), 조부모(1.5%)의 순으로 가정폭력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배우자에게서 가장 많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피해자들의 경우는 아버지(53.9%), 형제자매(25.5%), 어머니(11.8%), 배우자(6.9%), 조부모(2.0%)의 순으로 아버지에게서 가정폭력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해자 특성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상

당히 큼을 알 수 있다.

〈표 4-18〉 성별로 본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206	(100.0)	102	(100.0)	308	(100.0)
조부모로부터	3	(1.5)	2	(2.0)	5	(1.6)
아버지로부터	55	(26.7)	55	(53.9)	110	(35.7)
어머니로부터	43	(20.9)	12	(11.8)	55	(17.9)
형제자매로부터	36	(17.5)	26	(25.5)	62	(20.1)
배우자로부터	69	(33.5)	7	(6.9)	76	(24.7)

3) 최초 피해연령

가정폭력 유형별로 최초 피해연령을 살펴 본 결과 배우자 폭력을 제외한 모든 폭력유형에서 아동기(7-13세)때 최초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53.0%로 가장 많았다. 아동기(7-13세)때 최초피해를 당한 비율은 조부모 폭력 피해자의 80.0%, 아버지 폭력 피해자의 76.4%, 어머니 폭력 피해자의 72.7%, 형제자매 폭력 피해자의 56.5%를 차지하였다. 심지어 유아기(1-6세)때 가정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자도 아버지폭력의 10.0%, 어머니폭력의 10.9%로 나타났다. 청소년기(14-19세)때는 주로 형제자매로부터의 폭력 피해가 30.7%로 많았고 성인(20-64세)이 되어서는 배우자 폭력 피해가 96.1%로 월등히 많았다. 나이가 든 노년(65세 이상)이 되어서도 아버지, 배우자, 형제자매로부터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9〉 가족들로부터 폭행 당한 최초 피해연령

(단위: 건, %)

구분	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형제		전체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5	(100)	110	(100.0)	55	(100.0)	76	(100.0)	62	(100.0)	308	(100.0)
유아기 (1-6세)	0	(0.0)	11	(10.0)	6	(10.9)	0	(0.0)	3	(4.8)	20	(6.5)
아동기 (7-13세)	4	(80.0)	84	(76.4)	40	(72.7)	0	(0.0)	35	(56.5)	163	(53.0)
청소년기 (14-19세)	0	(0.0)	9	(8.2)	5	(9.1)	1	(1.3)	19	(30.7)	34	(11.0)
성인 (20-64세)	1	(20.0)	5	(4.5)	4	(7.3)	73	(96.1)	3	(4.8)	86	(27.9)
노년 (65세 이상)	0	(0.0)	1	(0.9)	0	(0.0)	2	(2.6)	2	(3.2)	5	(1.6)

다.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경험

1) 부부폭력피해경험과 유형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중 유배우자는 158명이며, 이들 중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폭력경험이 있는 유배우자는 89명(56.3%)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말하면, 지난 1년간 부부폭력경험자중 56.3%가 과거 가족으로부터 가정 폭력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4-20>참조).

〈표 4-20〉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난1년 동안 한번이라도 폭력피해경험	있음	89명(56.3)
	없음	69명(43.7)
전체		158

주: 1) 분석대상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중 유배우자로서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임.

부부폭력 피해경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68.5%로 남성 31.5%보다 두 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표 4-21>참조).

〈표 4-21〉 성별 부부폭력 피해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89	(100.0)
여성	61	(68.5)
남성	28	(31.5)

1) 분석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중 지난1년 간 한번이라도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임.

부부폭력 피해유형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으로 나누어 폭력 피해 건수를 분석했다. 부부폭력 피해유형별 건수는 총 295건으로 신체적 폭력 87건(29.4%) 중 경한 폭력이 73건(24.7%), 중한 폭력은 14건(4.7%)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은 148건(50.2%)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폭력은 25건(8.5%), 경제적 폭력은 35건(11.9%)로 나타났다.

〈표 4-22〉 부부폭력 피해유형 (단위: 건, %)

구분			전체
			295(100.0)
유형별 폭력경험 사례수	신체적 폭력	경한 폭력	73(24.7)
		중한 폭력	14(4.7)
	정서적 폭력		148(50.2)
	성적 폭력		25(8.5)
	경제적 폭력		35(11.9)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비율은 백퍼센트로 환산한 것임

2) 신체적 폭력피해 경험

부부폭력 피해경험을 폭력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먼저 신체적 폭력피해를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경한 폭력에는 ‘나에게 물건을 던짐’, ‘어깨/목 움켜잡’, ‘손바닥으로 신체 때림’이 포함되고, 중한 폭력에는 ‘목조름’, ‘흉기로 위협/상해’, ‘혁명대/몽둥이로 때림’, ‘마구때림’이 포함된다.

먼저 경한 폭력을 분석한 결과, ‘나에게 물건을 던짐’을 경험한 사람은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어깨/목 움켜잡’ 23명, ‘손바닥으로 신체 때림’ 18명으로 나타났다.

경한 신체폭력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나에게 물건을 던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1년에 한두 번(78.1%)이 가장 많았지만, 12.5%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경험하고, 심지어 한주에 한두번 경험하는 경우(3.1%)도 있었다. ‘어깨/목 움켜잡’과 ‘손바닥으로 신체 때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주에 한두번 정도로 나타났다(<표 4-23>참조).

〈표 4-23〉 부부폭력에서 신체적 폭력피해 빈도(경한 폭력) (단위: 건, %)

구분	계(n=73)	폭력빈도					
	사례수(비율)	가끔매일	한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3개월에 한두번	6개월에 한두번	1년에 한두번
나에게 물건 던짐	32(100.0)	0(0.0)	1(3.1)	4(12.5)	1(3.1)	1(3.1)	25(78.1)
어깨/목 움켜잡	23(100.0)	0(0.0)	2(8.7)	1(4.3)	3(13.0)	1(4.3)	16(69.6)
손바닥으로 신체 때림	18(100.0)	0(0.0)	2(11.1)	0(0.0)	2(11.1)	0(0.0)	14(77.8)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중한 폭력의 경우는 목조름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구때림도 4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얼마나 자주 폭력피해가 발생했는지 분석한 결과 ‘목조름’은 1년에 한두 번(83.3%), 한주에 한두 번(16.7%)순으로 나타났다. ‘흉기로 위협/상해’, ‘혁명대/몽둥이로 때림’은 비록 그 사례수가 적지만 각각 1년에 한두 번, 한주에 한두 번으로 나타났다. ‘마구 때림’도 1년에 한두 번(75.5%), 한주에 한두 번(25.0%)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이 대체로 1년에 한두 번 발생하지만 한주에 한 두 번 경험하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부부폭력에서 신체적 폭력피해 빈도(중한 폭력) (단위: 건, %)

구분	계(n=14)	폭력빈도					
	사례수(비율)	가끔매일	한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3개월에 한두번	6개월에 한두번	1년에 한두번
목조름	6(100.0)	0(0.0)	1(16.7)	0(0.0)	0(0.0)	0(0.0)	5(83.3)
흉기로 위협/상해	2(100.0)	0(0.0)	1(50.0)	0(0.0)	0(0.0)	0(0.0)	1(50.0)
혁명대/몽둥이로 때림	2(100.0)	0(0.0)	1(50.0)	0(0.0)	0(0.0)	0(0.0)	1(50.0)
마구 때림	4(100.0)	0(0.0)	1(25.0)	0(0.0)	0(0.0)	0(0.0)	3(75.0)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정서적 폭력피해 경험

부부폭력 중 정서적 폭력피해 경험을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해 ‘모욕적인 이야기’, ‘때리려고 위협’, ‘나의 물건파손’을 포함했다. 유형별 분석결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정서적 폭력은 83명으로 ‘모욕적인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리려고 위협했다’를 경험한 사람도 39명이며 ‘나의 물건을 파손했다’의 경우도 26명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자주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는지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모욕적인 이야기’도 1년에 한두 번이 42.2%로 가장 많지만, 한 달에 한두 번(24.1%), 한주에 한두 번(12.0%)을 경험하는 피해자도 있다. ‘때리려고 위협’은 1년에 한두 번(35.9%)이 가장 많지만, 한 달에 한두 번(15.4%)도 다음으로 많았다. ‘나의 물건파손’은 1년에 한두 번(69.2%)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정서폭력이 1년에 한 두번 발생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한주에 한두 번 정도로 자주 경험하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부부폭력에서 정서적 폭력피해 빈도

(단위: 건, %)

구분	계(n=148)	폭력빈도					
	사례수(비율)	거의매일	한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3개월에 한두번	6개월에 한두번	1년에 한두번
모욕적인 이야기	83(100.0)	3(3.6)	10(12.0)	20(24.1)	9(10.8)	6(7.2)	35(42.2)
때리려고 위협	39(100.0)	0(0.0)	4(10.3)	8(20.5)	6(15.4)	7(17.9)	14(35.9)
물건파손	26(100.0)	1(3.8)	1(3.8)	4(15.4)	0(0.0)	2(7.7)	18(69.2)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4) 성적 폭력피해 경험

부부폭력 중 성적 폭력유형은 ‘원치 않을 때 성관계 강요’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를 포함해 분석했다. 성적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16명) 모두 ‘원치 않을 때 성관계 강요’를 경험했으며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도 과반수인 9명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얼마나 자주 성적폭력이 발생했는지 분석한 결과 ‘원치 않을 때 성관계 강요’는 3개월에 한두 번(25.0%), 6개월에 한두 번(25.0%), 1년에 한두 번(25.0%)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두 번(18.8%)을 경험하는 피해자도 있다.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도 3개월에 한두 번(1.9%), 6개월에 한두 번(1.9%)으로 나타났다. 사례수가 적어 분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절반이상이 3개월에 한 두 번꼴로 성적 폭력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26〉 부부폭력에서 성적 폭력피해 빈도

(단위: 건, %)

구분	계(n=25)	폭력빈도					
	사례수(비율)	거의 매일	한 주에 한 두 번	한 달에 한 두 번	3개월에 한 두 번	6개월에 한 두 번	1년에 한 두 번
원치 않을 때 성관계 강요	16(100.0)	0(0.0)	1(6.3)	3(18.8)	4(25.0)	4(25.0)	4(25.0)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	9(100.0)	0(0.0)	2(1.3)	0(0.0)	3(1.9)	3(1.9)	1(0.6)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5) 경제적 폭력피해 경험

부부폭력 중 경제적 폭력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생활비 미지급’, ‘동의없이 재산 임의 처분’, ‘수입/지출 독점’을 포함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빈곤한 상황을 방지하는 생활비 미지급이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부의 권력 행사 중 하나인 ‘수입/지출 독점’도 10명으로 많았다.

경제적 폭력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생활비 미지급’의 경우는 1년에 한 두 번(40.0%)인 경우와 거의 매일(35.0%)도 많았다. ‘동의없이 재산 임의 처분’은 1년에 한 두 번(60.0%), ‘수입/지출 독점’은 거의 매일(50.0%)이 가장 많았다.

〈표 4-27〉 부부폭력에서 경제적 폭력피해 빈도

(단위: 건, %)

구분	계(n=35)	폭력빈도					
	사례수(비율)	거의 매일	한 주에 한 두 번	한 달에 한 두 번	3개월에 한 두 번	6개월에 한 두 번	1년에 한 두 번
생활비 미지급	20(100.0)	7(35.0)	2(10.0)	0(0.0)	2(10.0)	1(5.0)	8(40.0)
동의없이 재산처분	5(100.0)	1(20.0)	1(20.0)	0(0.0)	0(0.0)	0(0.0)	3(60.0)
수입 및 지출독점	10(100.0)	5(50.0)	1(10.0)	2(20.0)	0(0.0)	0(0.0)	2(20.0)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라. 지난 1년간 자녀폭력 가해경험

1) 자녀폭력 가해 경험과 유형

가정폭력 피해자 232명 중 만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113명이며, 이들 중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손)자녀 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4명(30.0%)으로 나타났다(〈표 4-28〉참조).

〈표 4-28〉 지난 1년 간 (손)자녀 가해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난해 동안 한번이라도 가해한 경험	있음	34명(30.0)
	없음	79명(70.0)
전체		113

주: 분석대상은 가정폭력피해 경험자로 만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응답자임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손)자녀를 가해한 경험이 있는 34명을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핵가족 가구가 88.2%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가구(5.9%), 대가족(5.9%)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손가구에서는 가해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나타난 (손)자녀가해경험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해경험임을 알 수 있다(<표 4-29>참조).

〈표 4-29〉 가구유형별 (손)자녀폭력 가해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가해경험 있음	
	사례수	비율
전체	34	100.0
가구유형별 폭력가해경험		
한부모 가구	2	5.9
조손 가구	0	0.0
핵가족 가구	30	88.2
대가족 가구	2	5.9

주: 분석대상은 가정폭력피해 경험자로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를 가해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임.

자녀폭력 가해경험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21명(61.8%)으로 남성 13명(38.2%)보다 많았다.

〈표 4-30〉 성별 자녀폭력 가해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4	(100.0)
여성	21	(61.8)
남성	13	(38.2)

주: 분석대상은 가정폭력피해 경험자로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를 가해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임.

자녀를 가해한 경험을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으로 나누어 유형별 폭력가해 건수를 분석했다. 자녀에 대한 폭력가해유형별 건수는 총 77건으로 신체적 폭력가해는 29건(37.7%), 정서적 폭력가해는 48건(62.3%)으로 나타났다.

〈표 4-31〉 자녀에 대한 폭력가해유형 (단위: 건, %)

구분	전체	
	77(100.0)	
유형별 폭력경험 사례수	신체적 폭력	29(37.7)
	정서적 폭력	48(62.3)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비율은 백퍼센트로 환산한 것임

2)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중 지난 1년간 자녀에게 가한 폭력유형을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신체적 폭력에는 ‘손바닥으로 뺨 때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림’, ‘물건으로 때림’, ‘사정없이 때림’을 포함했다. 정서적 폭력에는 ‘때리겠다고 위협 했음’과 ‘욕설/악담을 했음’을 포함했다.

먼저 신체적 폭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건으로 자녀를 때리는 부모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사정없이 때리는 부모도 7명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자주 자녀를 가해하는지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물건으로 때림’은 1년에 한두 번(66.7%)이 가장 많았지만 거의 매일도 14.3%였다. ‘사정없이 마구 때림’도 1년에 한두 번(85.7%)이 가장 많았지만, 거의 매일도 14.3%로 나타났다. ‘손바닥으로 뺨 때림’은 1년에 한두 번(100.0%)때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림’도 1년에 한두 번(60.0%)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거의매일도 2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수가 적어 분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4-32〉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 가해 빈도 (단위: 건, %)

구분	계(n=29)	폭력빈도					
		사례수(비율)	거의매일	한 주에 한 두번	한 달에 한 두번	3개월에 한 두번	6개월에 한 두번
손바닥으로 뺨 때림	5(100.0)	0(0.0)	0(0.0)	0(0.0)	0(0.0)	0(0.0)	5(100.0)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림	5(100.0)	1(20.0)	0(0.0)	0(0.0)	1(20.0)	0(0.0)	3(60.0)
물건으로 때림	12(100.0)	1(8.3)	0(0.0)	0(0.0)	1(8.3)	2(16.7)	8(66.7)
사정없이 때림	7(100.0)	1(14.3)	0(0.0)	0(0.0)	0(0.0)	0(0.0)	6(85.7)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3) 자녀에 대한 정서적 폭력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행하는 정서적 폭력을 분석한 결과 ‘때리겠다고 위협 했음’은 25명, ‘욕설/악담을 했음’ 23명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자주 정서적 폭력을 행하는지 분석한 결과 ‘때리겠다고 위협했음’은 1년에 한두 번(48.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주에 한두 번(16.0%)으로 나타났다. ‘욕설/악담’의 경우도 1년에 한두 번(61.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나타났다.

〈표 4-33〉 자녀에 대한 정서적 폭력 가해 빈도 (단위: 건, %)

구분	계(n=48)	폭력빈도					
		사례수(비율)	거의매일	한 주에 한 두번	한 달에 한 두번	3개월에 한 두번	6개월에 한 두번
때리겠다고 위협	25(100.0)	0(0.0)	4(16.0)	3(12.0)	3(12.0)	3(12.0)	12(48.0)
욕설/악담	23(100.0)	0(0.0)	1(4.3)	3(13.0)	2(8.7)	3(13.0)	14(61.0)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분석에서 무응답을 제외.

마. 장애인폭력 피해경험

가족으로부터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장애가 있는 응답자(92명)중 12명(13.1%)이다. 이들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83.3%로 남성 16.7%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4>참조).

〈표 4-34〉 장애인의 성별 폭력피해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2	(100.0)
성별	여성	10	(83.3)
	남성	2	(16.7)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장애인들의 학력을 살펴본 결과, 중졸이하(66.7%)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졸(25.0%), 고졸(8.3%) 순이었다. 이들의 장애등급은 3급(33.3%)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급과 5급(각각 16.7%)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자(83.3%)가 가정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 다음이 뇌병변장애(8.3%)와 시각장애(8.3%)였다(<표 4-35>참조).

〈표 4-35〉 폭력피해 장애인의 학력, 장애등급, 장애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2	(100.0)
학력	중졸이하	8	(66.7)
	고졸	1	(8.3)
	대졸이상	3	(25.0)
장애등급	1급	1	(8.3)
	2급	1	(8.3)
	3급	4	(33.3)
	4급	2	(16.7)
	5급	2	(16.7)
	6급	1	(8.3)
	무응답	1	(8.3)
장애유형	지체장애	10	(83.3)
	뇌병변 장애	1	(8.3)
	시각장애	1	(8.3)

가정폭력가해자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5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배우자 41.7%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의 83.3%가 여성이라는 사실과 연결해볼 때,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된 여성장애인들로 유추해 볼 수 있다(<표 4-36>참조).

〈표 4-36〉 폭력피해 장애인의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아버지	6	(50.0)
가정폭력피해자(중복응답)	2	(16.7)
형제	3	(25.0)
배우자	5	(41.7)

주: 1) 분석대상자는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장애인 12명이며 각 통계수치는 12명에 대한 백분율임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가정폭력피해관련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83.3%가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폭력피해 장애인의 가정폭력 법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2	(100.0)
가정폭력법인지	10	(83.3)
내용모른다	2	(16.7)
잘안다		

위 사실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근절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예방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 및 지체장애자들에 대한 집중보호프로그램개발과 장애인의 저학력과 저소득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바. 가정폭력 유경험자의 삶의 만족도

가정폭력 유경험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정폭력경험이 있는 사람들보다 생활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배우자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 경험이 없는 사람이 배우자와의 갈등빈도도 낮아 가정폭력무경험자와 유경험자 간에 삶의 질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폭력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현재 삶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4-38〉 가정폭력 유경험자의 삶의 만족도

(단위: 점)

구분	무경험자	유경험자	F
생활 만족도	3.12	3.00	4.48*
부모관계 만족도	3.68	3.49	7.00**
배우자관계 만족도	3.84	3.66	12.78***
배우자와 갈등 빈도	1.55	1.92	50.61***

주: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배우자 갈등 빈도는 4점 척도(1 거의 없음 ~ 4 매우 자주 있음), F값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p<.05, **p<.01, ***p<.001,

5. 가정폭력피해의 영향

가정폭력의 피해영향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들보다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들에게 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피해자들이 폭력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며 고통을 경험했는지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을 때 어떤 느낌과 생각을 했는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그로인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폭력피해 당시 심리적 경험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해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무섭고 두려웠다는 응답이 65.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화가 났다는 응답이 42.7%, 수치 스러웠다는 응답이 25.9% 순으로 나타났다(<표 4-39>참조).

1) 성별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느낌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의 감정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무섭고 두려웠다는 반응이 여성(68.2%), 남성(61.9%)모두 나타났다. 가정폭력 경험자들의 최초피해연령대가 아동기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어린아이에게 가정폭력은 무섭고 두려운 공포 그 자체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여성(33.1%)의 경우 수치스러운 감정이 남성(13.1%)보다 더 높았으며, 화가 나는 감정도 여성(50.7%)이 남성(28.6%)보다 더 높았다.

〈표 4-39〉 성별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을 때 느낌

(단위: 건, %)

구분	남성	여성	사례수
무섭고 두려웠다	52(61.9)	101(68.2)	153(65.9)
좌절/ 무력감을 느꼈다	21(25.0)	38(25.7)	59(25.4)
수치 스러웠다	11(13.1)	49(33.1)	60(25.9)
가족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졌다	7(8.3)	40(27.0)	47(20.3)
화가 났다	24(28.6)	75(50.7)	99(42.7)
기타	0(0.0)	3(2.0)	3(1.3)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성별에 대해 각 문항을 백퍼센트로 환산한 것임.

2) 장애 여부별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을 때 느낌

장애인의 경우는 비장애인들보다 가정폭력시 더 취약하다. 장애인이 폭력피해 당시 얼마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며 고통을 경험했는지 조사한 결과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무섭고 두려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장애인(91.7%)이 비장애인(64.5%)보다 가정폭력을 당할 때 더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장애 여부별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을 때 느낌 (단위: 건, %)

구분	장애여부		전체
	장애인	비장애인	
무섭고 두려웠다	11(91.7)	142(64.5)	153(65.9)
좌절/ 무력감을 느꼈다	3(25.0)	56(25.5)	59(25.4)
수치 느꼈다	1(8.3)	59(26.8)	60(25.9)
가족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졌다	2(16.7)	45(20.5)	47(20.3)
화가 났다	4(33.3)	95(43.2)	99(42.7)
기타	0(0.0)	3(1.4)	3(1.3)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장애여부에 대해 각 문항을 백퍼센트로 환산한 것임.

3) 성별 가정폭력 직후의 생각변화

가정폭력피해 경험자들에게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직후 생각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이 5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가출하고 싶었다 37.9%, 죽고 싶었다 2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은 죽고 싶었다(38.5%),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때리고 싶었다(14.2%), 가출하고 싶었다(38.5%), 폭력 행위자를 죽이고 싶었다(12.8%)는 응답을 남성보다 많이 하였으며, 남성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59.5%)는 경우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폭력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피해증상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41〉 성별 가정폭력 직후의 심경변화 (단위: 명, %)

구분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고 싶었다	가출하고 싶었다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때리고 싶었다	폭력 행위자를 죽이고 싶었다	기타	전체
전체	128(55.2)	69(29.7)	88(37.9)	26(11.2)	21(9.1)	13(5.6)	232(100.0)
남성	50(59.5)	12(14.3)	31(36.9)	5(6.0)	2(2.4)	3(3.6)	84(36.2)
여성	78(52.7)	57(38.5)	57(38.5)	21(14.2)	19(12.8)	10(6.8)	148(63.8)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비율은 백퍼센트로 환산한 것임

나. 신체적 상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당시 어느 정도 신체적 상해를 당했는지 조사했다.

1) 가정폭력 후 신체적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

가정폭력 피해자 중 신체적 상해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분석한 결과 ‘없다’(87.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받은 적이 있는 경우의 대다수가 유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42> 참조).

〈표 4-42〉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32	(100.0)
유료로 받은적 있다	26	(11.2)
무료로 받은적 있다	2	(0.9)
없다	204	(87.9)

2) 성별 가정폭력 후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병원 치료를 받은 28명을 제외하고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204명을 대상으로 왜 이들이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사했다. 분석결과 ‘신체적 상처가 없었다’(53.4%), ‘심하지 않아서’(30.9%),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9.3%),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몰라서’(3.9%), ‘돈이 없어서’(0.5%)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204명중 신체적 상처가 없는 109명을 제외한 95명은 신체적 상해가 있었지만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상처가 없어서’(60.3%)와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33.3%)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응답에서는 여성(14.3%)이 남성(1.3%)보다 월등히 많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우 병원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가정폭력을 창피한 개인의 일로 생각하는 통념때문임을 알 수 있다.

〈표 4-43〉 성별 병원치료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신체적 상처가 없어서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무료로 치료받을수 있다는 정보를 몰라서	기타	전체	χ^2
전체	109(53.4)	63(30.9)	1(0.5)	3(1.5)	19(9.3)	8(3.9)	1(0.5)	204(100.0)	
남성	47(60.3)	26(33.3)	0(0.0)	2(2.6)	1(1.3)	2(2.6)	0(0.0)	78(100.0)	12.952*
여성	62(49.2)	37(29.4)	1(0.8)	1(0.8)	18(14.3)	6(4.8)	1(0.8)	126(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가정폭력 피해자(232명)중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123명(53.0%)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28명과 신체적 상해가 있었지만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95명임을 알 수 있다.

다. 정신적 후유증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장애를 경험하는데 Walker(1979)는 이를 매맞는 여성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으로 명명했다. 피해여성들은 수면장애, 섭식 장애, 만성피로, 두통, 위장문제, 고혈압, 알레르기같은 신체적 문제와 낮은 자존감, 구타관계에 대한 신화를 믿는 것, 구타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더 이상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죽는 위험까지 감소하는 것, 자신외에 누구도 자신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믿는 심리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본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후유증은 심각한 문제로 본 연구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어떤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조사결과 49.1%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27.9%), ‘불안/우울함’(25.9%), ‘자신에 대한 실망/무력감/자아상실감’(23.3%), ‘모든 일에 화가 남’(14.7%)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장애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4〉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정신적 후유증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비율)
가해자에 대한 분노	64	(27.9)
불안/우울함	60	(25.9)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 상실감	54	(23.3)
모든 일에 화가 남	34	(14.7)
자살에 대한 생각	16	(6.9)
대인기피	14	(6.0)
반복적인 가출	4	(1.7)
기타	6	(2.6)
변화가 없음	118	(50.9)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비율은 백퍼센트로 환산한 것임

라. 가족관계의 변화

1) 가정폭력 후 가족관계 변화

가정폭력 후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족관계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분석한 결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친밀감을 상실했다’(21.1%),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친밀감을 상실했다’의 경우 여성(21.6%)이 남성(20.2%)보다 많았으며, ‘가족구성원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다’는 경우도 여성(12.8%)이 남성(7.15%)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변화 없었다’(72.6%)라는 응답이 여성(56.8%)보다 많았다. 성별로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5〉 성별 가정폭력 후 가족관계 변화

(단위: 명, %)

구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친밀감을 상실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다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됐다	이혼했다	기타	변화가 없었다	전체	χ^2
전체	49(21.1)	25(10.8)	3(1.3)	9(3.9)	1(0.4)	145(62.5)	232(100.0)	
남성	17(20.2)	6(7.1)	0(0.0)	0(0.0)	0(0.0)	61(72.6)	84(100.0)	11.197
여성	32(21.6)	19(12.8)	3(2.0)	9(6.1)	1(0.7)	84(56.8)	148(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6.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Walker(1979)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지속된 폭력상황에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학습된 무기력이론(learned helplessness)’으로 설명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후유증은 구타와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자신을 둘러싼 폭력적인 공격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Gelles, 1997; 오세연, 2011: 89 재인용).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은 가정폭력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하였다.

가. 가정폭력 대응방법

가정폭력 피해경험자(232명)의 대응방법을 분석한 결과 ‘그냥 맞으면서 참음’(56.0%), ‘무조건 피함’(28.4%), ‘함께 폭력행사’(7.8%), ‘주위에 도움 요청’(7.8%) 순으로 나타났다(<표 4-46> 참조). 이를 성별과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후 왜 대응하지 않았는지 또 대응했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살펴보았다.

1) 성별 및 장애여부별 대응방법

먼저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이 ‘그냥 맞으면서 참음’(60.7%), ‘무조건 피함’(33.3%) 이라는 응답에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주위에 도움 요청’(11.5%), ‘함께 폭력

행사(9.5%)라는 응답에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내용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4-46>참조).

<표 4-46> 성별 가정폭력 피해 시 대응방법

(단위: 명, %)

구분	그냥 맞으면서 참음	무조건 피함	함께 폭력 행사	주위에 도움 요청	전체	χ^2
전체	130(56.0)	66(28.4)	18(7.8)	18(7.8)	232(100.0)	10.465*
남성	51(60.7)	28(33.3)	4(4.8)	1(1.2)	84(100.0)	
여성	79(53.4)	38(25.7)	14(9.5)	17(11.5)	148(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장애여부별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그냥 맞으면서 참음’(66.7%)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보다 가정폭력 시 맞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47> 장애여부별 가정폭력 피해 시 대응방법

(단위: 명, %)

구분	가정폭력 피해 시 대응방법				전체	χ^2
	그냥 맞으면서 참음	무조건 피함	함께 폭력 행사	주위에 도움 요청		
전체	130(56.0)	66(28.4)	18(7.8)	18(7.8)	232(100.0)	.884
장애인	8(66.7)	2(16.7)	1(8.3)	1(8.3)	12(100.0)	
비장애인	122(55.5)	64(29.1)	17(7.7)	17(7.7)	220(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2) 폭력 시 미 대응 이유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때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무서워서’(32.7%)라는 이유가 대응하는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 다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21.9%), ‘대응하면 폭력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무서워 대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때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31.6%), ‘대응하면 폭력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11.4%)라는 응답이 여성보다 많았고, 여성은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12.0%),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11.1%)라는 응답이 남성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표 4-48〉 성별 가정폭력 피해 시 미 대응 이유

(단위: 명, %)

구분	무서워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침묵하고 지존심 상해서	참으면 나쁘진다는 생각 때문에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타	전체	χ^2
전체	64(32.7)	43(21.9)	20(10.2)	10(5.1)	20(10.2)	20(10.2)	14(7.1)	5(2.6)	196(100.0)	
남성	27(34.2)	25(31.6)	6(7.6)	4(5.1)	9(11.4)	7(8.9)	1(1.3)	0(0.0)	79(100.0)	16.854*
여성	37(31.6)	18(15.4)	15(12.0)	6(5.1)	11(9.4)	13(11.1)	13(11.1)	5(4.3)	117(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3) 폭력 시 대응 이유

반면, 가정폭력에 대응한 이유를 살펴보면, 52.8%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력 행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30.6%), 폭력은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16.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60.0%)은 여성(51.6%)보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폭력 행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는 응답은 여성(32.3%)이 남성(20.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49〉 성별 가정폭력 대응 이유

(단위: 명, %)

구분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 행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폭력은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전체	χ^2
전체	19(52.8)	11(30.6)	6(16.7)	36(100.0)	
남성	3(60.0)	1(20.0)	1(20.0)	5(100.0)	0.308
여성	16(51.6)	10(32.3)	5(16.1)	31(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4) 도움 요청 대상

가정폭력 피해경험자중 폭력 당시 함께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는 모두 36명이었다(〈표 4-50〉참조). 이들이 가정폭력을 당한 후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였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나 친척(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경찰(19.4%), 이웃이나 친구(13.9%), 긴급전화 1366(13.9%)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관련 기관보다는 가족과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0〉 주위의 도움요청 대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가족이나 친척	20	(55.6)
경찰	7	(19.4)
이웃이나 친구	5	(13.9)
긴급전화 1366	5	(13.9)
쉼터 및 전화	3	(8.3)
종교 지도자	1	(2.8)

주: 가정폭력피해자로 가정폭력 당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36명의 다중응답분석이며, 비율은 백퍼센트로 환산한 것임

나. 의료경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제18조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무료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로 신체적 상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유료로 받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본 결과,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몰라서’ 라는 응답(54.9%)이 가장 높았으며, ‘당연히 내가 지불해야 하니까’라는 응답(26.9%)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1〉 병원치료를 유료로 받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6	(100.0)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몰라서	14	(53.8)
당연히 내가 지불해야 하니까	7	(26.9)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5	(19.2)

병원치료를 무료로 받은 이유에 대해 분석 결과, 비록 사례 수는 적지만, ‘경찰 및 상담소의 안내를 받아서’,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라는 응답은 가정폭력관련 서비스지원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정폭력발생시 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민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4-52>참조).

〈표 4-52〉 병원치료를 무료로 받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	(100.0)
경찰 및 상담소의 안내를 받아서	1	(50.0)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1	(50.0)

다. 서비스전달체계 경험

가정폭력 피해경험자 중 폭력 당시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는 36명으로 많지 않았다. 이들 중 경찰, 긴급전화 1366, 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정 폭력 관련 기관의 서비스이용경험을 살펴보았다.

1) 경찰

먼저, 이들 중 경찰에게 신고한 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이용경험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한 경우가 71.4%로 나타났다.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이들 중 1명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듣기만 하고 집안일이니 해결하라고 돌아간 사례도 있었으며, 또 다른 1명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가해자와 함께 동반 귀가시키는 사례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를 성별로 조사한 결과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하였다(83.3%)는 응답이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듣기만 하고 집안일이니 해결하라고 돌아간 사례는 여성의 경우였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가해자와 함께 동반 귀가시킨 사례는 남성의 경우로 나타났다.

〈표 4-53〉 성별 도움 요청 시 경찰이 취한 조치

(단위: 명, %)

구분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 하였다	출동 했으나 듣기만 하고 집안 일이니 해결 하라며 돌아갔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폭력행위자와 동반귀가 시켰다	전체	χ^2
전체	5(71.4)	1(14.3)	1(14.3)	7(100.0)	
남성	0(0.0)	0(0.0)	1(100.0)	1(100.0)	7.000*
여성	5(83.3)	1(16.7)	0(0.0)	6(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근거해 경찰은 즉시 출동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 후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다면 위 <표 4-53>에의 분석 결과 71.4%는 보호를 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당시 그냥 맞으면서

참은 사례자, 무조건 피한 사례자, 도움 요청시 경찰에 요청하지 않은 사례자를 대상으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했다.

경찰에 신고한 7명을 제외한 가정폭력 피해경험자 225명을 조사한 결과,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가 23.6%,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20.4%로 나타났다(<표 4-54>참조).

조사결과를 통해 가정폭력 시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가정폭력피해를 창피한 개인의 일로 취급하는 문화를 개선해야하며 경찰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도민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3.7%)이 여성(23.2%)보다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응답은 여성(26.8%)이 남성(18.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이 가정폭력피해를 창피한 개인의 일로 취급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4> 성별 경찰 도움 미요청 이유

(단위: 명, %)

구분	폭력 행위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폭력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기타	전체	χ^2
전체	11(4.9)	61(27.1)	43(19.1)	53(23.6)	46(20.4)	11(4.9)	225(100.0)	
남성	3(3.6)	28(33.7)	13(15.7)	15(18.1)	19(22.9)	5(6.0)	83(100.0)	5.794
여성	8(5.6)	33(23.2)	30(21.1)	38(26.8)	27(19.0)	6(4.2)	142(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2) 가정폭력 관련 전문서비스 기관

가정폭력 피해경험자 중 폭력 당시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는 36명을 대상으로 긴급전화 1366과 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 6명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 관련 기관의 서비스이용경험을 살펴보았다.

먼저, 도움을 받은 정도를 조사한 결과 6명중 3명은 매우도움이 되었다(50.0%), 도움이 된 편이다가 1명(16.7%)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66.7%로 많았다.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명(16.7%)과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1명(16.7%)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4-55〉 관련기관 도움 요청 시 도움을 받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6	(100.0)
매우 도움이 되었다	3	(50.0)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16.7)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1	(16.7)
도움이 된 편이다	1	(16.7)

그래서 가정폭력을 당한 후 긴급전화 1366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16.4%),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1.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남성(39.8%)이 여성(29.4%)보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많고,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25.9%)라는 응답과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5.9%)라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조사결과를 통해 긴급전화 1366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정보제공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가정폭력피해를 창피한 개인의 일로 취급하는 문화를 개선해야한다.

〈표 4-56〉 성별 관련기관 도움 미 요청 이유 (단위: 명, %)

구분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도움요청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기타	전체	χ^2
전체	54(23.9)	75(33.2)	48(21.2)	37(16.4)	12(5.3)	226(100.0)	
남성	17(20.5)	33(39.8)	11(13.3)	17(20.5)	5(6.0)	83(100.0)	7.765
여성	37(25.9)	42(29.4)	37(25.9)	20(14.0)	7(4.9)	143(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7.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폭력 당시 무섭고 두렵지만 가해자가 두려워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 상해는 적었지만 병원 치료를 받아야할 상황에서는 관련 지원서비스를 몰라 유로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가정폭력

의 후유증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서비스기관 이용에 대한 정보부족과 관련 기관에 대한 불신, 가정폭력을 창피한 일로 취급하는 인식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와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인지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전체 300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관련법 인지도와 피해자보호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정책욕구를 조사했다. 앞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본 장에서도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법인식의 차이와 서비스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가. 법 인식

1)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법 인지 여부

분석결과,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16.4%,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는 69.4%, 잘 알고 있다가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방지 관련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전체의 85.8%(내용을 알지 못함을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7〉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

(단위 : 명,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 여부	사례수	비율
전체	3,000	100.0
전혀 모른다	491	16.4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2,083	69.4
내용을 잘 알고 있다	426	14.2

다음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인지 여부를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살펴해보았다. 먼저 성별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여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폭력법인지 여부에서 모른다가 각각 85.1%와 86.5%였다. 특히, 여성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 남성들보다 낮게 응답했다(여성 13.5%, 남성 14.9%).

〈표 4-58〉 성별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

(단위: 명, %)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본적 있지만 내용 잘 모른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전체	χ^2
전체	491(16.4)	2,083(69.4)	426(14.2)	3,000(100.0)	2.035
남성	235(15.6)	1,044(69.5)	224(14.9)	1,503(100.0)	
여성	256(17.1)	1,039(69.4)	202(13.5)	1,497(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다음으로 가정폭력 관련보호법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조사결과 서귀포시 거주자들이 제주시거주자들보다 모르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잘 인지 못한다는 응답은 제주시 지역의 거주자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에 맞는 가정폭력 관련보호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59〉 지역별 가정폭력 가해자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인지

(단위: 명, %)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본적 있지만 내용 잘 모른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전체	χ^2
전체	491(16.4)	2,083(69.4)	426(14.2)	3,000(100.0)	34.251***
제주시 동지역	217(14.1)	1,092(71.0)	228(14.8)	1,537(100.0)	
제주시 읍면지역	62(13.8)	341(76.1)	45(10.0)	448(100.0)	
서귀포시 동지역	135(21.3)	399(62.9)	100(15.8)	634(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77(20.2)	252(66.0)	53(13.9)	382(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여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혀 모르는 경우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연령증가와 함께 모르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잘 인지 못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0대 연령층이 가장 높았고, 30대, 50대, 2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 가정폭력관련 법을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표 4-60〉 연령별 가정폭력 가해자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인지

(단위: 명, %)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본적 있지만 내용 잘 모른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전체	χ^2
전체	491(16.4)	2,083(69.4)	426(14.2)	3,000(100.0)	147.806***
만19-29세	76(14.0)	391(71.9)	77(14.2)	544(100.0)	
만30-39세	53(9.3)	422(74.4)	92(16.2)	567(100.0)	
만40-49세	72(11.3)	454(71.5)	109(17.2)	635(100.0)	
만50-59세	88(14.7)	417(69.5)	95(15.8)	600(100.0)	
만60세이상	202(30.8)	401(61.2)	52(7.9)	655(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2)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경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426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경로로 인지하게 되었는지 분석했다. 분석결과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를 통해 가정폭력관련 법을 알았다는 비율이 59.2%,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가 15.0%, 신문 및 잡지에서 12.4%로 나타났다.

〈표 4-61〉 가정폭력법 인지 경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26	100.0
TV/ 라디오의 공익광고	252	59.2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64	15.0
신문/ 잡지	53	12.4
학교/ 사회 교육 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23	5.4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이웃	18	4.1
여성 단체/ 상담기관 발행 자료, 소식지	13	3.0
버스 광고	1	0.2
기타	3	0.7

주: 분석대상은 가정폭력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응답자임

성별로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여성의 64.4%, 남성의 54.4%). 다음으로 남녀모두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인지하는 경향이 높았다(여성의 12.9%, 남성의 17.0%). 여성들은 TV나 라디오, 남성들은 인터넷, 신문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4-62〉 성별 가정폭력법 인지 경로

(단위: 명, %)

구분	TV/라디오의 공익광고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버스광고	신문/잡지	여성단체/ 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학교/사회교육 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친구/가족/직 장 동료/ 이웃	기타	전체	χ^2
전체	252(59.2)	64(15.0)	1(0.2)	53(12.4)	13(3.1)	23(5.4)	17(4.0)	3(0.7)	426(100.0)	
남성	122(54.5)	38(17.0)	0(0.0)	36(16.1)	1(0.4)	13(5.8)	12(5.4)	2(0.9)	224(100.0)	22.153**
여성	130(64.4)	26(12.9)	1(0.5)	17(8.4)	12(5.9)	10(5.0)	5(2.5)	1(0.5)	202(100.0)	

주: 1)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2) 분석대상은 가정폭력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응답자임

다음으로, 가정 폭력 가해자 처벌과 보호자 보호법 인지경로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제주시 동지역 62.3%, 제주시 읍면지역 51.1%, 서귀포시 동지역 57.4%, 서귀포시 읍면지역 56.6%). 다음으로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신문/잡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거주자

들은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인지하는 경우가 높았고 농촌지역의 경우 신문/잡지를 통하여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홍보방식을 채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4-63〉 지역별 가정폭력법 인지 경로

(단위: 명, %)

구분	TV/라디오의 공익광고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버스광고	신문/잡지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학교/사회교육 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친구/가족/직장 동료/이웃	기타	전체	χ^2
전체	252(59.2)	64(15.0)	1(0.2)	53(12.4)	13(3.1)	23(5.4)	17(4.0)	3(0.7)	426(100.0)	
제주시 등지역	141(62.3)	33(14.5)	1(0.4)	20(8.8)	9(3.9)	12(5.3)	9(3.9)	2(0.9)	227(100.0)	
제주시 읍면지역	23(51.1)	13(28.9)	0(0.0)	1(2.2)	2(4.4)	5(11.1)	0(0.0)	1(2.2)	45(100.0)	45.286**
서귀포시 등지역	58(57.4)	12(11.9)	0(0.0)	20(19.8)	2(4.4)	1(1.0)	8(7.9)	0(0.0)	101(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30(56.6)	6(11.3)	0(0.0)	12(22.6)	0(0.0)	5(9.4)	0(0.0)	0(0.0)	53(100.0)	

주: 1)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2) 분석대상은 가정폭력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응답자임

마지막으로 가정 폭력 가해자 처벌과 보호자 보호법 인지경로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모든 연령에서 TV/라디오 등의 공익광고를 통해서 법을 인지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0대와 40대의 연령자들이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인지하는 경우가 높았고 20대 연령자들이 신문/잡지를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50대와 60대는 TV/라디오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높았다. 따라서 TV/라디오, 인터넷, 신문·잡지를 통해 다차원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4-64〉 연령별 가정폭력법 인지 경로

(단위: 명, %)

구분	TV/라디오의 공익광고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버스광고	신문/잡지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학교/사회교육 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친구/가족/직장 동료/이웃	기타	전체	χ^2
전체	252(59.2)	64(15.0)	1(0.2)	54(12.7)	13(3.1)	23(5.4)	17(4.0)	2(0.5)	426(100.0)	
만19~29세	40(51.9)	7(9.1)	0(0.0)	14(18.2)	2(2.6)	9(11.7)	5(6.5)	0(0.0)	77(100.0)	
만30~39세	47(50.5)	30(32.3)	0(0.0)	8(8.6)	4(4.3)	3(3.2)	1(1.1)	0(0.0)	93(100.0)	
만40~49세	54(50.0)	20(18.5)	0(0.0)	19(17.6)	5(4.6)	5(4.6)	3(2.8)	2(1.9)	108(100.0)	77.868***
만50~59세	67(70.5)	5(5.3)	1(1.1)	10(10.5)	0(0.0)	6(6.3)	6(6.3)	0(0.0)	95(100.0)	
만60세이상	44(83.0)	2(3.8)	0(0.0)	3(5.7)	2(3.8)	0(0.0)	2(3.8)	0(0.0)	53(100.0)	

주: 1)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2) 분석대상은 가정폭력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응답자임

나. 공공서비스 인식

1)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3000명 전체응답자중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은 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58.9%)와 경찰(96.9%), 긴급전화 1366(44.6%)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관련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① 성별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 원스탑지원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지역복지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표 4-65〉 성별 가정폭력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n=3,000)		남성(n=1,503)		여성(n=1,497)		χ^2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	1,743(58.1)	1,257(41.9)	862(57.4)	641(42.6)	881(58.9)	616(41.1)	0.692
경찰	2,899(96.6)	101(3.4)	1,450(96.5)	53(3.5)	1,449(96.8)	48(3.2)	0.236
여성긴급전화1366	1,339(44.6)	1,661(55.4)	574(38.2)	929(61.8)	765(51.1)	732(48.9)	50.58***
여성폭력 원스탑지원센터	685(22.8)	2,315(77.2)	299(19.9)	1,204(80.1)	386(25.8)	1,111(74.2)	14.774***
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스	981(32.7)	2,019(67.3)	485(32.3)	1,018(67.7)	496(33.1)	1,001(66.9)	0.254
의료비지원 및 의료서비스	575(19.2)	2,425(80.8)	291(19.4)	1,212(80.6)	284(19.0)	1,213(81.0)	0.07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931(31.0)	2,069(69.0)	403(26.8)	1,100(73.2)	528(35.3)	969(64.7)	25.036***
국민임대주택우선입주	568(18.9)	2,432(81.1)	272(18.1)	1,231(81.9)	296(19.8)	1,201(80.2)	1.372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700(23.3)	2,300(76.7)	333(22.2)	1,170(77.8)	367(24.5)	1,130(75.5)	2.335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589(19.6)	2,411(80.4)	272(18.1)	1,231(81.9)	317(21.2)	1,180(78.8)	4.505*
가정폭력예방교육	847(28.2)	2,153(71.8)	414(27.5)	1,089(72.5)	433(28.9)	1,064(71.1)	0.705
지역복지관 관련 서비스	598(19.9)	2,402(80.1)	276(18.4)	1,227(81.6)	322(21.5)	1,175(78.5)	4.652*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p<.001

② 학력별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인지도에 대한 연령별 차이는 없었고, 학력별 서비스인식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 초등졸 이하는 경찰만 94.8% 안다고 응답했으며, 중졸은 가정폭력피해상담소(57.2%)와 경찰(97.8%), 고졸의 경우는 가정폭력피해상담소(63.9%), 경찰(98.1%), 여성긴급전화 1366(53.7%)를 안다고 응답했다. 대졸은 가정폭력피해상담소(68.3%), 경찰(96.3%), 여성긴급전화 1366(53.0%), 대학원졸 이상은 여성폭력 원스탑지원센터, 국민임대주택우선입주에 대해서만 모른다고 응답했을 뿐 그 외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폭력보호관련 서비스를 인지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표 4-66〉 학력별 가정폭력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n=3,000)		학력별										χ ²
	안다	모른다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174(81)	125(41)	204(42.5)	276(57.5)	638(57.2)	477(42.8)	399(63.9)	225(36.1)	467(83)	217(31.7)	4(100.0)	0(0.0)	88.83**
경찰	299(86)	101(34)	456(94.8)	25(5.2)	1,091(97.8)	24(2.2)	612(98.1)	12(1.9)	69(96.3)	25(3.7)	4(100.0)	0(0.0)	14.53**
여성긴급전화1366	139(44)	161(54)	120(25.0)	360(75.0)	509(45.7)	606(54.3)	335(53.7)	289(46.3)	363(53.0)	324(47.0)	2(50.0)	2(50.0)	113.61**
여성폭력 원스탑지원센터	66(28)	236(72)	53(11.0)	428(89.0)	235(21.1)	880(78.9)	182(29.2)	442(70.8)	219(30.6)	475(69.4)	1(25.0)	3(75.0)	75.63**
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스	98(27)	209(63)	96(20.0)	384(80.0)	341(30.6)	774(69.4)	222(35.5)	403(64.5)	315(44.6)	395(55.4)	3(75.0)	1(25.0)	85.76**
의료비지원 및 의료서비스	55(12)	245(88)	39(8.1)	442(91.9)	221(19.8)	894(80.2)	136(21.8)	488(78.2)	173(25.3)	511(74.7)	3(75.0)	1(25.0)	69.9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98(31)	206(69)	73(15.2)	407(84.8)	337(30.2)	778(69.8)	238(38.1)	387(61.9)	272(39.8)	412(60.2)	2(50.0)	2(50.0)	94.32**
국민임대주택우선 입주	58(18)	242(81)	69(14.4)	411(85.6)	210(18.8)	905(81.2)	141(22.6)	483(77.4)	144(21.0)	541(79.0)	0(0.0)	4(100.0)	14.174**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70(23)	230(76)	51(10.6)	430(89.4)	245(22.0)	870(78.0)	192(30.7)	433(69.3)	216(31.1)	478(69)	3(75.0)	1(25.0)	82.08**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59(16)	241(80)	42(8.7)	439(91.3)	215(19.3)	899(80.7)	153(24.5)	472(75.5)	171(25.0)	513(75.0)	3(75.0)	1(25.0)	64.391**
가정폭력예방교육	87(28)	213(71)	73(15.2)	407(84.8)	289(25.9)	826(74.1)	212(34.0)	412(66.0)	262(38.3)	422(61.7)	3(75.0)	1(25.0)	90.07**
지역복지관 관련 서비스	58(19)	242(81)	51(10.6)	430(89.4)	202(18.1)	913(81.9)	138(22.1)	486(77.9)	198(28.9)	486(71.1)	3(75.0)	1(25.0)	71.36**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p<.001

③ 지역별 가정폭력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

지역별로 가정폭력보호 서비스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서귀포시 거주자들은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와 경찰,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제주시 지역 거주자들보다 인지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주시 거주자들이 서귀포시 거주자들보다 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에 맞는 가정폭력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67〉 지역별 가정폭력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n=3,000)		권역별								χ ²
	안다	모른다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	174(58.1)	125(41.9)	865(56.3)	671(43.7)	251(56.0)	197(44.0)	383(61.4)	251(39.6)	243(63.6)	139(36.4)	8.956
경찰	289(96.6)	10(3.4)	1489(96.9)	47(3.1)	419(93.5)	29(6.5)	622(98.1)	12(1.9)	368(96.3)	14(3.7)	17.891***
여성긴급전화1366	133(44.6)	166(55.4)	833(54.2)	703(45.8)	187(41.7)	261(58.3)	218(32.8)	426(67.2)	111(29.1)	271(70.9)	132.162***
여성폭력 원스탑지원센터	685(22.8)	2315(77.2)	396(25.8)	1,140(74.2)	117(26.1)	331(73.9)	94(14.8)	540(85.2)	78(20.4)	304(79.6)	34.648***
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스	981(32.7)	2019(67.3)	540(35.2)	996(64.8)	118(26.3)	330(73.7)	218(32.8)	426(67.2)	113(29.6)	269(70.4)	14.148
의료비지원 및 의료서비스	575(19.2)	2425(80.8)	392(25.5)	1,144(74.5)	64(14.3)	384(85.7)	64(10.1)	570(89.9)	56(14.7)	326(85.3)	85.490***
가정폭력피해자보 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931(31.0)	2069(69.0)	529(34.4)	1,007(65.6)	124(27.7)	324(72.3)	180(28.4)	454(71.6)	98(25.7)	284(74.3)	17.917***
국민임대주택우선입주	568(18.9)	2431(81.1)	363(23.6)	1,173(76.4)	60(13.4)	388(86.6)	94(14.8)	540(85.2)	52(13.6)	330(86.4)	45.011***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700(23.3)	2300(76.7)	422(27.5)	1,114(72.5)	92(20.5)	356(79.5)	117(18.5)	517(81.5)	67(17.5)	315(82.5)	32.344***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589(19.6)	2410(80.4)	394(25.7)	1,142(74.3)	55(12.3)	393(87.7)	80(12.6)	554(87.4)	60(15.7)	322(84.3)	74.124***
가정폭력예방교육	847(28.2)	2152(71.8)	466(30.3)	1,070(69.7)	126(28.1)	322(71.9)	138(21.8)	496(78.2)	118(30.9)	264(69.1)	17.764***
지역복지관 관련 서비스	598(19.9)	2401(80.1)	365(23.8)	1,171(76.2)	77(17.2)	371(82.8)	103(16.2)	531(83.8)	52(13.6)	330(86.4)	31.232***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p<.001

다. 정책욕구

본 절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욕구를 분석했다. 더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지원해주기를 원하는 정책과 대상별 분석욕구를 알기 위해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나누어 정책욕구의 차이를 분석했다.

1) 가정불화 및 폭력 해결/예방 프로그램 참여요구

조사대상자 3000명에게 가정불화 및 폭력 해결/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문항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6.2%로 낮았다. 성별에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 따라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볼 때,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제주시 거주자들이 서귀포시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68〉 가정불화 및 폭력 해결/예방 프로그램 참여의향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전체	484(16.1)	2,516(83.9)	3,000(100.0)	
성별	남성	1,299(86.4)	1,503(100.0)	14.594***
	여성	1,217(81.3)	1,497(100.0)	
연령	만19~29세	432(79.4)	544(100.0)	67.243***
	만30~39세	450(79.5)	566(100.0)	
	만40~49세	505(79.5)	635(100.0)	
	만50~59세	523(87.2)	600(100.0)	
	만60세 이상	607(92.7)	655(100.0)	
지역별	제주시 동지역	1,216(79.2)	1,536(100.0)	101.267***
	제주시 읍면지역	352(78.6)	448(100.0)	
	서귀포시 동지역	598(94.3)	634(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349(91.4)	382(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가정불화 및 폭력 해결/예방 프로그램 참여요구를 가정폭력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의 30.6%가 참여의향을 밝혔으며, 가정폭력경험이 없는 사람은 5.8%만 참여의향을 밝혔다. 결국,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6배정도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9〉 가정폭력 경험유무로 본 가정불화 및 폭력 해결/예방 프로그램 참여의향

(단위: 명, %)

구분		참여의향				χ^2
		있음		없음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232	100.0	2768	100.0	33.406***
가정폭력 경험유무	있음	71	30.6	161	5.8	
	없음	161	69.4	2607	94.2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01

2) 보호시설 입소 의향

가정폭력 피해자 232명에게 보호시설로의 입소의향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입소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13.0%)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여성(17.8%)이 남성(5.1%)보다 입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에 따라서 '입소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20.7%), 40대(16.2%), 50대(12.2%), 20대(11.5%), 60대 이상(0.0%)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입소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서귀포시읍면지역(22.6%), 제주시읍면지역(13.6%), 제주시동지역(12.8%), 서귀포시동지역(5.1%) 거주자들 순으로 나타나 농촌에 거주하는 피해자 일수록 입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4-7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의향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전체	27(13.0)	181(87.0)	208(100.0)	
성별	남성	4(5.1)	79(100.0)	7.069**
	여성	23(17.8)	106(82.2)	
연령	만19~29세	3(11.5)	26(88.5)	6.758
	만30~39세	6(20.7)	29(79.3)	
	만40~49세	12(16.2)	62(83.8)	
	만50~59세	6(12.2)	43(87.8)	
	만60세 이상	0(0.0)	30(100.0)	
권역별	제주시 동지역	12(12.8)	82(87.2)	4.679
	제주시 읍면지역	6(13.6)	38(86.4)	
	서귀포시 동지역	2(5.1)	37(94.9)	
	서귀포시 읍면지역	7(22.6)	24(77.4)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3) 가정폭력 관련기관에 선호하는 서비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정폭력 관련기관에 선호하는 서비스는 정신 및 심리 상담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법적지원(19.8%), 정보제공(10.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64.9%)이 남성(56.0%)보다 정신 및 심리상담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법적지원과 정보제공이라는 응답은 남성(20.2%)이 여성(19.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71〉 성별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 가장 바라는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정신 및 심리상담	법적지원	의료지원	정보제공	기타	전체	χ^2
전체	143(61.6)	46(19.8)	13(5.6)	25(10.8)	5(2.2)	232(100.0)	12.067*
남성	47(56.0)	17(20.2)	4(4.8)	16(19.0)	0(0.0)	84(100.0)	
여성	96(64.9)	29(19.6)	9(6.1)	9(6.1)	5(3.4)	148(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다음으로, 지역별로는 정신 및 심리상담이라는 응답이 제주시 거주자들에게서 서귀포시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법적지원과 정보제공이라는 응답은 서귀포시 거주자들이 제주시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72〉 지역별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 가장 바라는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정신 및 심리상담	법적지원	의료지원	정보제공	기타	전체	χ^2
전체	143(61.6)	46(19.8)	13(5.6)	25(10.8)	5(2.2)	232(100.0)	25.030*
제주시 동지역	77(70.6)	18(16.5)	1(0.9)	9(8.3)	4(3.7)	109(100.0)	
제주시 읍면지역	31(62.0)	12(24.0)	3(6.0)	4(8.0)	0(0.0)	50(100.0)	
서귀포시 동지역	20(50.0)	9(22.5)	3(7.5)	7(17.5)	1(2.5)	4(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5(45.5)	7(21.2)	6(18.2)	5(15.2)	0(0.0)	33(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마지막으로,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정신 및 심리상담이라는 응답은 40대(71.1%)가 법적지원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정보제공이라는 응답은 5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표 4-73〉 연령별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 가장 바라는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정신 및 심리상담	법적지원	의료지원	정보제공	기타	전체	χ^2
전체	143(61.6)	46(19.8)	13(5.6)	25(10.8)	5(2.2)	232(100.0)	34.358**
만19~29세	17(63.0)	3(11.1)	2(7.4)	4(14.8)	1(3.7)	27(100.0)	
만30~39세	20(58.8)	7(20.6)	2(5.9)	4(11.8)	1(2.9)	34(100.0)	
만40~49세	59(71.1)	17(20.5)	1(1.2)	6(7.2)	0(0.0)	83(100.0)	
만50~59세	35(62.5)	10(17.9)	1(1.8)	9(16.1)	1(1.8)	56(100.0)	
만60세 이상	12(37.5)	9(28.1)	7(21.9)	2(6.3)	2(6.3)	32(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욕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를 조사한 결과 '부부간 의사소통 개

선을 위한 가족 치료 프로그램 제공'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폭력 허용적인 사회 문화의 개선'(30.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11.2%)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정책의 경우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23.6%),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 치료 프로그램 제공'(20.4%),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강화'(18.2%), '폭력 허용적인 사회 문화의 개선'(15.1%)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합한 조사결과는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 치료 프로그램 제공'(25.8%), '폭력 허용적인 사회 문화의 개선'(22.8%),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17.3%)로 1순위 결과와 같았다.

〈표 4-7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욕구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 치료프로그램 제공	72(31.0)	46(20.4)	118(25.8)
폭력허용적인 사회 문화의 개선	70(30.2)	34(15.1)	104(22.8)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	26(11.2)	53(23.6)	79(17.3)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거주기간 연장	20(8.6)	15(6.7)	35(7.7)
가정폭력피해자를 집에서 퇴거 시키고, 가해자 처벌 강화	17(7.3)	16(7.1)	33(7.2)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강화	16(6.9)	41(18.2)	57(12.5)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11(4.7)	19(8.4)	30(6.6)

주: 종합=(1순위+2순위)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35.7%)이 여성(27.0%)보다 폭력 허용적인 사회 문화의 개선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 치료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응답은 여성(35.1%)이 남성(2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이라는 응답은 여성(11.5%)이 남성(10.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75〉 성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1순위

(단위: 명, %)

구분	폭력허용적인 사회 문화의 개선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치료 프로그램 제공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거주기간 연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집에서 퇴거 시키고 가해자 처벌강화	전체	χ^2
전체	70(30.2)	72(31.0)	20(8.6)	26(11.2)	11(4.7)	16(6.9)	17(7.3)	232(100.0)	
남성	30(35.7)	20(23.8)	13(15.5)	9(10.7)	1(1.2)	6(7.1)	5(6.0)	84(100.0)	14.615*
여성	40(27.0)	52(35.1)	7(4.7)	17(11.5)	10(6.8)	10(6.8)	12(8.1)	148(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다음으로, 지역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를 조사한 결과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 치료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응답이 서귀포시 거주자들보다 제주시 거주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폭력 허용적인 사회 문화의 개선이라는 응답은 서귀포시 동지역(37.5%) 거주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이라는 응답은 서귀포시읍면지역(21.2%)이 높게 나타났다.

〈표 4-76〉 지역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1순위 (단위: 명, %)

구분	폭력허용적인 사회 문화의 개선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치료 프로그램 제공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거주기간 연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고 피해자 처벌 강화	전체	χ^2
전체	70(30.2)	72(31.0)	20(8.6)	26(11.2)	11(4.7)	16(6.9)	17(7.3)	232(100.0)	
제주시 동지역	31(28.4)	44(40.4)	6(5.5)	10(9.2)	1(0.9)	9(8.3)	8(7.3)	109(100.0)	
제주시 읍면지역	15(30.0)	17(34.0)	4(8.0)	5(10.0)	1(2.0)	3(6.0)	5(10.0)	50(100.0)	37.888**
서귀포시 동지역	15(37.5)	6(15.0)	7(17.5)	4(10.0)	6(15.0)	2(5.0)	0(0.0)	40(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9(27.3)	5(15.2)	3(9.1)	7(21.2)	3(9.1)	2(6.1)	4(12.1)	33(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마지막으로,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폭력 허용적인 사회 문화의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 치료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응답은 30대(40.5%), 40대(31.6%), 50대(31.6%)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이라는 응답은 60대이상(20.0%), 40대(12.3%), 30대(11.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77〉 연령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1순위 (단위: 명, %)

구분	폭력허용적인 사회 문화의 개선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치료 프로그램 제공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거주기간 연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고 피해자 처벌 강화	전체	χ^2
전체	70(30.2)	72(31.0)	20(8.6)	26(11.2)	11(4.7)	16(6.9)	17(7.3)	232(100.0)	
만19~29세	5(18.5)	7(25.9)	1(3.7)	2(7.4)	3(11.1)	4(14.8)	5(18.5)	27(100.0)	
만30~39세	9(26.5)	14(41.2)	0(0)	5(14.7)	0(0)	3(8.8)	3(8.8)	34(100.0)	
만40~49세	25(30.1)	28(33.7)	7(8.4)	9(10.8)	3(3.6)	5(6.0)	6(7.2)	83(100.0)	46.143**
만50~59세	19(33.9)	17(30.4)	11(19.6)	4(7.1)	0(0)	3(5.4)	2(3.6)	56(100.0)	
만60세이상	12(37.5)	6(18.8)	1(3.1)	6(18.8)	5(15.6)	1(3.1)	1(3.1)	32(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1

5) 가정폭력 예방 정책의 욕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를 질문한 결과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가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35.3%),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정책으로는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35.8%),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21.4%), ‘양성평등 사회 실현’(16.2%),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15.3%), ‘도민대상 인권교육 실시’(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로는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35.6%),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29.1%),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13.7%), ‘양성평등 사회 실현’(1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8〉 가정폭력 예방정책 욕구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관련법 제도의 처벌강화	85(36.6)	49(21.4)	134(29.1)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	82(35.3)	82(35.8)	164(35.6)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	28(12.1)	35(15.3)	63(13.7)
양성평등 사회 실현	22(9.5)	37(16.2)	59(12.8)
도민대상 인권교육 실시	14(6.0)	25(10.9)	39(8.5)
기타	1(0.4)	1(0.4)	2(0.4)

주: 종합=(1순위+2순위)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은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36.5%),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34.5%),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15.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40.5%),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33.3%), ‘양성평등 사회 실현’(14.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예방교육 확대와 유교문화 개선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들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4-79〉 성별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필요성 1순위

(단위: 명, %)

구분	관련법 제도의 처벌강화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	도민대상 인권교육 실시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	양성평등 사회 실현	기타	전체	χ^2
전체	85(36.6)	82(35.3)	14(6.0)	28(12.1)	22(9.5)	1(0.4)	232(100.0)	
남성	34(40.5)	28(33.3)	5(6.0)	5(6.0)	12(14.3)	0(0.0)	84(100.0)	8.534
여성	51(34.5)	54(36.5)	9(6.1)	23(15.5)	10(6.8)	1(0.7)	148(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다음으로 지역별로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1순위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제주시 동지역 거주자들은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41.3%),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35.8%),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13.8%)순으로 제주시 읍면지역 거주자들은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46.0%),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30.0%),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14.0%)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동지역 거주자들은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35.0%),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30.0%), ‘양성평등사회 실현’(24.2%)순으로 서귀포시 읍면지역 거주자들은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33.3%),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24.2%), ‘양성평등사회 실현’(24.2%)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거주자들이 예방교육 확대와 유교문화 개선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서귀포시 거주자들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4-80〉 지역별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필요성 1순위

(단위: 명, %)

구분	관련법 제도의 처벌강화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	도민대상 안전교육 실시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	양성평등 사회 실현	기타	전체	χ^2
전체	85(36.6)	82(35.3)	14(6.0)	28(12.1)	22(9.5)	1(0.4)	232(100.0)	
제주시 동지역	45(41.3)	39(35.8)	6(5.5)	15(13.8)	4(3.7)	0(0.0)	109(100.0)	
제주시 읍면지역	15(30.0)	23(46.0)	3(6.0)	7(14.0)	2(4.0)	0(0.0)	50(100.0)	29.236*
서귀포시 동지역	14(35.0)	12(30.0)	3(7.5)	2(5.0)	8(20.0)	1(2.5)	40(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11(33.3)	8(24.2)	2(6.1)	4(12.1)	8(24.2)	0(0.0)	33(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p<.05

마지막으로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들은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29.6%),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25.9%),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25.9%)순으로 나타났다. 30대들은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35.3%),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35.3%), ‘양성평등사회 실현’(11.8%)순으로 40대들은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43.4%),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30.1%)순으로 나타났다. 50대는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44.6%),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35.7%)순으로 60대는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46.9%),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21.9%),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18.8%)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에서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와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4-81〉 연령별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필요성 1순위

(단위: 명, %)

구분	관련법 제도의 차별강화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	도민대상 인권교육 실시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개선	양성평등 사회 실현	기타	전체	χ^2
전체	85(36.6)	82(35.3)	14(6.0)	28(12.1)	22(9.5)	1(0.4)	232(100.0)	25.576
만9~29세	8(29.6)	7(25.9)	3(11.1)	7(25.9)	2(7.4)	0(0.0)	27(100.0)	
만30~39세	12(35.3)	12(35.3)	3(8.8)	3(8.8)	4(11.8)	0(0.0)	34(100.0)	
만40~49세	25(30.1)	36(43.4)	4(4.8)	9(10.8)	9(10.8)	0(0.0)	83(100.0)	
만50~59세	25(44.6)	20(35.7)	2(3.6)	3(5.4)	6(10.7)	0(0.0)	56(100.0)	
만60세 이상	15(46.9)	7(21.9)	2(6.3)	6(18.8)	1(3.1)	1(3.1)	32(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6)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효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도움정도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81.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가해자의 교정치료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2〉 성별로 본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효과

(단위: 명, %)

구분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190(81.9)	31(13.4)	11(4.7)	232(100.0)	0.465
남성	69(82.1)	12(14.3)	3(3.6)	84(100.0)	
여성	121(81.8)	19(12.8)	8(5.4)	148(100.0)	

주: χ^2 는 카이제곱 값

8. 소결

본 절에서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서비스에 대한 정책 욕구를 분석하였다. 3000명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가정폭력 원인과 통념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먼저, 가정폭력원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무대응’(75.7%)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의 무 대응 탓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열등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의 원인이라는 항목에서 성별인식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배우자의 열등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6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는 ‘일반폭력에 관대할수록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라는 항목에 다른 연령대 응답자보다 더 많이 동의했으며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라는 항목에서 다른 소득집단보다 더 많이 동의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거주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 문항에서 서귀포시 거주자들보다 동의가 높았다. 이를 통해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제주시에 거주 할수록 경제적 문제가 가정폭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관련 통념에서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이기이다’와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에 성별, 지역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의 경우 남성일수록, 농촌지역 거주자일수록 그렇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 라는 통념의 경우는 여성일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가정폭력의 원인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가정폭력 경험을 분석한 결과 여성피해자(59.2%)가 남성피해자(40.8%)보다 많았으며, 가정폭력 피해경험 건수 308건 중 여성 응답자의 가정폭력 경험건수가 206건(13.8%)으로 남성 응답자 경험건수 102건(6.8%)보다 2배 더 많았다. 성별로 남성들은 아버지로부터 폭행건수가 가장 많았고 여성들은 배우자로부터의 폭행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들의 최초피해 연령을 보면 아동기(7-13세)때가 163건(53.0%)로 나타나 아동폭력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유배우자 중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분석한 결과 89명(56.3%)으로 여성피해자(68.5%)가 남성(31.5%)피해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들의 폭력유형건수를 살펴본 결과 295건 중 신체적 폭력(경한폭력+중한폭력) 87건

(29.4%), 정서적 폭력 148건(50.2%), 성적 폭력 25건(8.5%), 경제적 폭력 35건(11.9%)으로 밝혀졌다. 또한,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녀가해경험을 분석한 결과 34명(30.0%)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자녀에게 가한 폭력진수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총 77건으로 신체적 폭력 29건(37.7%), 정서적 폭력 48건(62.3%)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92중 12명(13.0%)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83.3%가 여성들이며, 가해자로 아버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배우자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폭력피해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많이 경험하는 감정은 분노였으며 그 다음이 수치심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을 당한직후의 심경도 여성들이 '죽고 싶다'와 '폭력 행위자를 죽이고 싶었다'가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의 50%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 불안/우울, 자신에 대한 실망/무력감/자아상실이라는 정신적 후유증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정폭력관련기관에 선호하는 서비스로 정신 및 심리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피해 경험자들의 가정폭력 시 대응을 살펴본 결과 '그냥 맞으면서 참음', '무조건 피함'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 여성과 남성피해자들은 '그냥 맞으면서 참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피해 경험자들이 경찰이나 가정폭력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와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을 창피한 개인의 일로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85.8%가 가정폭력관련 법의 내용까지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내용을 잘 알지 못했으며, 내용을 잘 아는 응답자들의 내용인지경로 분석결과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를 통해서가 가장 높았다.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에서도 전체응답자들은 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58.9%)와 경찰(96.9%)을 제외하고는 관련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모른다고 응답해 그 외 다양한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에 대한 도민 홍보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1순위로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 치료 프로그램 제공'(31.0%)과 '폭력 허용적인 사회 문화의 개선'(30.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18.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36.6%),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35.3%),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12.1%)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전달될 서비스 경로를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정폭력 심층면접분석 결과

1. 심층 면접 조사 개요
2. 면접조사 분석 결과
3. 소결

1. 심층 면접 조사 개요

가정폭력피해당사자의 피해경험과 가정폭력관련기관 종사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제주지역 피해여성과 관련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심층 면접 조사 내용은 첫째, 피해당사자의 경우는 어린시절의 가정폭력경험, 결혼이후 가정폭력피해경험, 가정폭력이후 지원서비스 경험, 정책욕구 등이다. 둘째, 가정폭력관련기관 종사자의 경우는 가정폭력피해자의 피해정도, 가정폭력가해자의 특징,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문제점, 정책욕구 등이다.

심층 면접 조사는 가정폭력관련기관에서 서비스를 경험한 여성 10명과 관련기관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한달여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심층면접대상자의 특징은 ‘사례번호’로 표시했다⁵⁾.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우는 나이, 피해유형, 피해기간만 밝혔으며, 관련기관 종사자의 경우는 가정폭력상담의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 경력만 제시했다(<표 5-1>, <표 5-2> 참조).

〈표 5-1〉 심층면접대상자의 특징: 가정폭력관련 기관종사자

구분	기관유형	경력
사례1	상담소	13년
사례2	상담소	13년
사례3	상담소	1년
사례4	보호시설	15년
사례5	상담소	13년
사례7	상담소	5년
사례9	보호시설	10년
사례10	상담소	10년
사례19	보호시설	8년
사례20	보호시설	8년

5) 심층 면접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자세히 밝히지 않고 ‘사례1’로 표시한다. 연구윤리에 의해 심층면접대상자의 신상과 정보는 익명으로 보호받아야하며 제주지역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자세한 표기는 면접대상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표 5-2〉 심층면접대상자의 특징: 가정폭력 피해 여성

구분	연령	피해유형	피해기간
사례6	44세	신체적 폭력	7년
사례8	53세	신체적 폭력	1년
사례11	57세	언어적 폭력	10년
사례12	42세	신체적 폭력	5개월
사례13	24세	정서·신체·경제·성적 학대	3년
사례14	52세	언어·신체적 폭력	8년
사례15	33세	신체·경제적 폭력	8년
사례16	36세	언어·신체적 폭력	10년
사례17	54세	신체적 폭력	12년
사례18	41세	신체적 폭력	14년

2. 면접조사 분석 결과

가. 가정폭력피해자 면접조사 결과

1) 가정폭력의 피해영향

① 학교부적응

심층면접대상자들 10명중 6명은 어린시절 가정폭력가정에서 자랐으며 부모 특히 아버지로 부터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을 경험했다. 사례 13은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리고 물건을 던져 자신의 머리를 갠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꿈일 정도로 어린시절 가정폭력의 경험은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시고, 어머니를 많이 때리셨어요....저희들한테도...손을 대시고..엄마 아빠는 물건 집어던지고 싸우고...보통은 아버지가 집어 던진 물건들..화딱지 나서 우리 두들겨 패면은...머리가 깨진 적도 있었거든요... 저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왕따였어요...‘우리 아쁜 사람을 개 패듯이 패요’...나중에는 다 남자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한 때 꿈이 아빠를 죽이는 거.. 그게 꿈이었어요 【사례13】

② 자랄 때 아버지한테 맞고 결혼해서 남편한테 맞고

문제는 이러한 어린시절폭력경험이 남편의 첫 가정폭력때 가정폭력을 합리화시키고(사례 13),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길들여지며(사례8)(사례6)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안해하며 사과

를 하는(사례12) 등 자신이 어머니가 학대받는 것을 보고자라면서 잘못했으면 맞아야된다고 생각(사례13)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랄 때 아버지에게 맞은 경험이 학습이 되어 남편의 폭력에도 길들여진다(사례6)(사례8)고 볼 수 있다.

제가 말을 그렇게 해서 맞은 거라고 생각했어요...어렸을 때부터 그랬었어요. 니가 잘못했으니까 니가 맞는 거고. 니가 첫째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맞았고, 냄비하나 식기하나 잘 못 놓으면 그 소리 난다고 때렸고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잘못했으면 맞다는 생각이 거의 이퀄관계가 성립된 거예요...잘못했으면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사례 13】

막 어렸을때부터 너무 이렇게 자랄때부터 아버지한테 맞고 결혼해서 남편한테 맞고 이러다 보니까 어지보면 폭력이 길들여진 상태잖아요 【사례 8】

처음 때리는 것도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때릴 때는 한 대~맞고는 그 사람한테 반응을 못했어요 【사례6】

서로 간의 의견이 달랐을 뿐이니까 미안하다고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례12】

2) 가정폭력의 유형

① 잠을 재우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아내학대에 대한 가정폭력형태에 따른 가정폭력유형을 살펴봤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가정폭력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한 신체적 폭력이 많으며 정서적 폭력 중 잠을 재우지 않는 학대가(사례6)(사례18) 있었다.

사람잠을 안재우고...아침에 일어나자마자술주정이사작되요...기분이 좀나쁘다고하면매일같이그냥일주일내내사람을 달달볶아요 【사례6】

술을 먹고오면 잠을 안자요.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힐까? 그리고 또 저자는 꼴을 못봐요 【사례18】

② 뺨에서 칼까지 신체적 폭력경험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유형이 2010년에 비해 경한 신체적 폭력은 16.3%에서 7.2%로, 중한 신체적 폭력은 3.3%에서 0.6%로, 정서적 폭력은 42.8%에서 37.2%로, 경제적 폭력은 10.1%에서 5.3%로, 성학대는 10.4%에서 5.4%로, 방임도 30.5%에서 27.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142). 그러나 심층면접을 통해 본 결과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는 처음 뺨 한 대에서 그 후로 계속 해서 주먹과 발로차기, 도마로 때리기, 폭력의 시간이 지속될수록 얼굴을 심하게 구타해 얼굴과 이빨이 없어질 정도로(사례18) 폭력의 수위는 높았다. 또한 문지방에 머리를 박아 머리가 찢기고(사례6), 얼굴쪽으로 때려 멍

이 가실 날이 없으며 칼로 찌르는(사례8)등 폭력은 잔혹하고, 폭력은 지속적이었다.

한번 임신했을 때 뺨따귀를 한 대 때리더라고요...그후부터 계속...그냥 구타, 발로차고, 주먹으로 치고...도마로도 때리고...중간에 맞아갖고...갈비뼈 부러져갖고...저 얼굴 없었잖아요. 여기 이빨 다 그거 했어요 【사례18】

발로 허벅지 있는데를 몇차례 서너차례치더라고요. 치고 따귀를 세네번때리고 그다음에 머리고뎡이를 확잡아서 문지방에 광광박았어요...뜨끈뜨끈한 피가 줄줄흐르더라고요 【사례6】

그때는 임신해서 있을때에도 술을 먹고 이렇게 언어폭력이라든가...아이가 조금자라니까...그때부터 폭행이 일어나고 그게 잦아지는거지...주먹이날라오고,꼭 때리면 얼굴쪽으로 때리더라고. 그래서 늘 멍이 가실날이 없었어요...갑자기 의치증으로 변한거예요.2005년도부터2007년도까지 3년을 내가 이 머리를 다 뺨히고 두들겨 맞는 것은 말도 못하고...내가 날이면 날마다 숨기일쑤고...언제나 칼정도숨겼어요제가...닭잡으라고 칼을 준거야...그 칼로 들이대고...‘여보살려줘’이러니까 그대로 칼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병원부를 생각도안하는거예요...나중에는 119를 부르더라고요 【사례8】

③ 얼굴 및 입 구타경험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얼굴 중 입에 대한 폭력경험이 많은데 이는 가해자 남편들이 여자는 말로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신화에 근거해 여성의 입에 대해 공격하며 동시에 가정폭력의 원인을 말대답을 한 아내 탓으로 떠넘기는 가해자의 정당화의 근거로 나타났다.

말대답한다는 이유였죠. 자기뜻에 반론을 하면 합당치가 없다고, 화나면 때리기 시작했죠 【사례15】

자기도 잘못된 거 미안한데 너도 가만히있었으면 안맞았을 거다. 그 토를 달더라고요...나도 안다...여러번 잔소리한 것...그래도 폭력은 아니지 않느냐~너는 말을 당해낼 수없다 이런식으로 말을 해요(사례16)

3) 가해자의 특징

① 남편은 돈만 벌면 술과 노름으로 지냄

사례6은 가해자 남편이 육지에 살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제주에 온 이후 일을 안 하고 동네 친구들과 술을 먹으며 놀면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본다. 사례8도 남편이 일을 안 하고 주로 노름과 술을 하며 돈만 벌면 노름하는 생활이 지속되고 또한 집에 와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토로한다. 사례17도 남편의 주위사람들과 친구들도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수가 많다고 본다.

육지에 있을때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여기에서는 180도 확변하더라고요.일도 안하고 탕자 탕자놀고...자기가 그만큼 뿌려놓은게 있으니 다 들어온데 【사례6】

고향은 △△△△ ○○○...맨날 노름하고 돈벌면 마시고 노름하고그런생활을 계속해왔어요. 그리고 집에오면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사례8】

고향은 서울...동네사람들이고 그 주위사람들이 다 친구들이고 누구도 노름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례17】

② 남편의 뜻에 반론을 제기하면 구타

또한, 가정폭력의 원인중 하나는 가부장제 문화이다. 사례15처럼 남편은 경제적 무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에 반론을 제기하면 아내를 구타한다. 또한 사례16도 말로는 여성을 이길 수 없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며 폭력피해여성도 이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지속성과 연결되어 가해자는 폭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는 폭력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자기가 □□□□라고...문제가 많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없다고 했어요...말대답한다는 이유였죠. 자기뜻에 반론을 하면 함당치가 았다고, 화나면 때리기 시작했죠 (사례15)

자기도 잘못된 거 미안한데 너도 가만히있었으면 안맞았을 거다. 그 토를 달더라구요...나도 안다...여러번 잔소리한 것...그래도 폭력은 아니지 않느냐~너는 말을 당해낼 수없다 이런식으로 말을 해요(사례16)

4) 가정폭력을 견디는 이유

① 자녀를 위해

심층면접대상자들 중에는 느슨한 결혼관계인 동거가족이 10명중 8명이었으며, 동거가족이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를 입으면 여성들이 가족을 쉽게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통념과 달리 이들의 폭력피해기간은 최대 18년에서 최소 8년으로 길었다. 여성들이 폭력피해를 오랜시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가정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례15처럼 이혼이라는 자신의 부정적 경험으로 자녀에게는 이혼가정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폭력을 견뎠다.

아이때문이에요...제가...어렸을 때 이혼하시고 부모님이...아! 나는 그런 환경을 아이에게 주지말아야 되겠다...참고 노력했죠 【사례15】

② 남편을 위해

사례18은 남편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폭력가정을 떠나지 못했다. 그런데 사례18처럼 사례6, 사례8, 사례13에서도 남편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구제하기 위해 폭력가정을 떠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Walker(1979)는 매맞는 여성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으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도피하거나 결혼을 종결짓지 못하는 심리상태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녀와 폭력의 순환이론에 의해 긴장조성, 극심한 폭력, 화해라는 세단계의 반복으로 남편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의 순환을 거치면서 개인적 해결은 신체뿐 아니라 결국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더 중한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져 가해자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술 때문에 망가졌는데 내가 그걸 고쳐보자고 노력을 한번해보자. 해보다 안되면 그때는 손털자...식탁에 피 묻어있지 화장실에 피 묻어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사례6】

구제해주어야지 이런 마음에 이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술먹고 안하면 참행복했어요...근데 그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았어요...나는 때리지만 않으면 살것더라고요 【사례8】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진짜 멍청하게...내가 중간에 맞다가 뛰쳐나왔었나 봐요. 문을 제가 현관문까지 열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사례13】

때리는 것 제가 알면서도 제가 고쳐줘야되겠구나 생각했어요...나로 인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사례18】

5) 가정폭력의 후유증

① 피해여성의 공포/자살/분노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공포/자살/분노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사례12는 가해자 남편이 본인이 다니는 병원으로 찾아와 자신을 폭행할 줄 모른다는 공포를 마치 현재에도 계속해서 위험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처럼 체험한다.

제가 저번에 종합병원갔을 때 제가 너무 무서웠던 ‘내가 아직도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사례12】

또한 히스테리환자처럼 대수롭지 않은 작은 단서에도 폭력의 악몽이 거침없이 의식안으로 들어와 사례18처럼 심장마비가 걸린 것 같은 신경발작을 일으킨다.

싫어요. 얼굴도 보기싫어요.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요. 심장마비걸릴 것 같아요...문소리 왜 바람불면 문
탕 두들기는 소리 그 소리에 깨요. 술 먹고 들어오는 소리 【사례18】

사례13과 사례17은 남편의 사랑에 대한 애착과 신뢰가 깨지면서 가정이 안전하고 자기는
가치있다는 존재라는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자살을 시도한다.

온몸에 핏 자국 나 있거든요...진짜 이렇게까지 맞았는데 살기 싫다싶었거든요...다섯칸가 여섯 개를...
그걸 다 털어 넣었어요 【사례13】

전 자살해서 죽고싶을 정도로 정말 죽을려고도 했었어요. 사실은...나 자살몇번할려고 【사례17】

반면, 사례16처럼 남편의 폭력에 부당함을 느끼고 남편을 죽이고 싶은 강한 분노가 발생하
기도 한다. 이런 강한 분노는 아내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으로 이
어지기도 한다(양현아·김현경, 2012). 따라서 가정폭력이 가정 안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이유
로 쉽게 용인되거나 사소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막 분노가 치밀더라고요...그때 진짜 칼을 대 갖고 죽이고 싶더라고요 【사례16】

② 자녀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가정폭력의 피해경험은 자녀들에게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켜 사례8처럼 가정폭
력의 순간이 지워지지 않고 상처로 남는다. 또한, 지속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투영되
며 상처로 인해 쉽게 놀라고 작은 유발에도 과민하게 반응해 부모와 자녀간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후유증은 피해자여성이나 그들 자녀들을 삶의 건강한
경로에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인 장애를 일으킨다.

아들이랑 둘이 사는데 둘이 싸우게 됐어요...그런데 뭐가 있냐면 속에 상처가 올라오는거예요 둘다...그
래서 막 소름이 끼치는 것이어요...내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둘다 상처아물게
해달라고 【사례8】

6)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① 처음에는 폭력을 견딘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의 폭력대응을 살펴보면 주로 피해여성들은 1차적으로 폭력을 견디며 사

레8처럼 건디다 못해 친정집, 찜질방으로 피신한다.

막 집에오면 폭력이 심하고 180도로 바뀌어요...내가 건디다 못해 나갔어...도 찾아와 온 천지를 뒤져 가지고...그냥 친정집으로 갔다가 동생집으로 갔다가 【사례8】

② 상담소를 찾거나 집을 나감

피해여성들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같이 상담소를 찾는 방식으로(사례11) 또는 자녀 때문에 다시 집으로 들어오기도하지만, 집을 나가는 방식으로 대응한다(사례17).

처음 결혼하고 얼마 안됐을 때...살림있잖아요...다 부수고...충격이었는데...상담이란걸 해보자...저희는 1년간까이 했던 【사례11】

그때부터 싸움이되고...때려요. 막 무자비하게 막...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되는거 같아서 애기들 때문에...나갔다가도 애기들 때문에 들어오고 【사례17】

③ 재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에는 경찰에 신고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병원에 갈만큼 큰 신체적인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가지 않는다(사례6).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사례6과 사례8처럼 가해자 남편의 재 폭력이 자행되고 그때서야 경찰에 가서 보호서비스를 신청해 병원이나 1366을 통해 보호시설로 연계된다.

처음에는 병원 갔을 때 신고를 안했어요...앞에 사는 사람인데...이렇게가면 죽는다! 차라리 신고를 해서...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됐고 원스톱에 가서 그 얘기를 다했고 【사례6】

칼로 찔러놓고도...경찰한테 말을 못하겠는거예요...그 보복이 두려우니까...이 사람을 경찰에 넣어지고...뭐 그리하다가 나오면...내가...맞아죽던가...그 보복이 두려워서 나는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다시 집에 왔는데...술을 먹으면 또 때리고...야구방망이를 가져오더라고요. 혁대를 갖고와서 때리니까...이 세월이 거의 3년...그날은 내가 살기를 느낀거예요...그대로 돌아서갖고 주먹을 날려버리는거야!...입술이 툭툭부은거예요...이빨도 다부러져서...그길로 버스를 타고 □□로 나가서 찜질방...찜질방 아줌마가...1366보호센터를...어디로 가겠냐고 묻더라고요...제일 멀리 제주도...그래가지고 여기 연결이 됐는데 【사례8】

7) 가정폭력관련 서비스경험

① 가정폭력방지법과 관련서비스를 모름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가정폭력관련 지원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사례17처럼 가

정폭력방지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남편이 범법자가 될까봐 서비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1366이런거 이런거를 몰랐어요...신고하면 난 애기아빠가 감방에 가는줄 알았어요...그렇게 해갖고 빨간줄이나 가는건 아닌건지 【사례17】

② 경찰은 심각한 신체적 피해여성에게만 적극적으로 개입

사례8처럼 경찰은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러나 사례11처럼 신체적 피해가 눈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피해자의 신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사례6처럼 그냥 빨리 해치우고 싶은 일로 취급한다.

경찰을 별로 그전에는 안 이쁘게봤는데...내가 의지하는 상태여서 그런지 경찰들이 그렇게 좋아보이더라구요...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사례8】

112가 보여 그냥 뛰어들어갔어...내 배우자인데 처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근데 이사람 심각하게 생각안해요. 어디 다쳤어요 이래요...심각하게 생각을 안해요. 시간만 자꾸 끌더라고 【사례11】

빨리 그냥해서 넘겨버리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더라구요 【사례6】

③ 상담소의 정신적 안정과 법률지원,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개선의 도움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상담소경험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과 이혼소송관련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맙게 생각했으며 사례16처럼 이혼을 위해 상담소를 찾았지만 상담을 통해 남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와 남편도 상담에 참여해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였다.

상담소에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안정도 많이 취하고, 보호도 많이 해주시고 【사례11】

소송절차라든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사례15】

상담받을 때 무조건 이혼하려고 왔었는데 중간에 남편이랑 같이 상담을 받을때는...좀 남편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막~계기도 있었고 【사례16】

④ 보호시설에서의 신체적 회복과 자존감 회복

심층면접대상자들에게 상담소의 경험은 정신적인 안정이었다면 보호시설의 경험은 신체적인 회복기간이며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경험이었다. 사례6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지 3개월만에 웃음을 다시 찾았으며 몰랐던 정보를 알고 공부하며 삶의 의욕과 꿈을 꾸는 자존감을 회복했다. 사례8은 자립과 기관의 지지를 통해 무너졌던 공동체구성원들의 안정감과 신뢰를 회

복해 다른 공동체구성원을 돌볼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다. 사례12도 자신이 가치있는 존재이며 살아야 할 이유뿐 아니라 여럿이 함께한다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보호시설의 경험은 피해여성들에게 임파워먼트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자양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들어와서 두 달동안 거의 아프다시피했던 것 같아요...세달되니까 살도만이 찌고 이전 살이 너무 많아...마음놓고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배우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진짜 인간답게 산다는 것...여기서 생활하고 그러니까...공부도 해야되겠다 생각 많이 했고, 내가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면나한테 내가 하고 싶은거 한 이룰 수 있으니까 【사례6】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그렇게 하고 가요...스스로 자립할 수있도록...격려해주고신경써주고...내형편되면 후원도 하고 싶어요 【사례8】

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선 그리고 참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는 게 참좋은거구나...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가치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례12】

⑤ 보호시설에서의 공동주거생활의 어려움

반면, 사례14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여성들이 기관생활을 하다보니 세대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공동생활이 아닌 단독 주거생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생활이다 보니까...그 부딪히는 부분들...다 개성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그게 아무래도 좀 세대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리다고 속으로는 해도 또 싸움질은 못하고...젊은 애들은 볼 때 자기표현 다하고.....지금 막 현금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그래서 이런 시설이 아니어도 조금 교육받으면서 둘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시설에 굳이 안들어오고도...공동생활하면서도 상처도 굉장히...상처도 만만치가 않아 【사례14】

8) 정책욕구

① 가해자 처벌강화를 통한 재범방지

심층면접대상자들은 가해자의 재범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례6처럼 접근금지는 가해자가 그 명령을 깨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사례8처럼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범때의 폭력의 수위는 더 높고 잔인해 무섭고 자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따라서 가정폭력가해자들이 높은 처벌 때문에 다시 폭력을 수행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재범방지 법률을 요구했다.

왜 100m접근금지...그게 있다해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솔직히 때리려고 들면와서 금방 때릴 수 있는건데...강력하게 좀 【사례6】

지금은...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도 밖에 나가는게...그 사람 어떻게 만나고 퇴치를 하나 막 그런 생각 잠이 사실 안오더라고요...여기 올라타 버어난다고 생각하니까...만약에 제 집에 찾아오고 흑시라도 뒤를 밟아 찾아오면...어떡할꺼야! 어디로가 무서워서 혼자 【사례8】

② 개인정보노출방지책 마련 및 피해자 안전보호강화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제주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신변의 안전이 매우 필요하다고 토론했다. 피해자들은 이는 사람을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만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으며 섬이라는 제한된 장소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숨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제주지역 폭력피해여성들에게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대보험에서 자구 걸리니까 그런걸 노출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라도 찾으면 된다 그런말을 들으니까...아직도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데 가면 노출이 된다고 하니까...좀 개선이 됐으면(사례11)

상담실이 밀폐가 되도록. 개인적인 내용이 들린다는거예요...저도 오면 내 얘기를 만들었으며...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은거죠 【사례15】

폭력여성들을 위한 지원...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혼인관계있으면 핸드폰번호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게 요즘 세상이지 않아요 【사례13】

③ 가정폭력 피해자 법적 지원서비스 강화

사례13은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는 것은 두려워 차라리 가해자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하고 집에서 여성들이 조서를 받는 것이 더 피해자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례18은 피해자보호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본인이 접수하러 다니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며 가정폭력의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 종사자나 공무원, 자원봉사자가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지원이 있기를 원했다.

집은 진짜 편한 공간이지만 경찰서는 왠지 사람들이 두려운 공간이에요. 그 두려운 공간에서 조서 쓰라고 있으면...여자들 누구든 말 안 나와요 【사례13】

서류같은 것 본인이 땔수있지않고 그런거 조금 많이 도와주는 그런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이분들이 이걸해라 해가지고서 적고 해가지고서 내가 다 했어요...근데 그게 너무 힘든거예요...제가 가서 또 떼야 되고 이거저거 다해야되니까...너무 힘든거예요...비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그거를 바깥에 있는 분이 시청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있는 분이 와서 이 서류같은거 적어서 떼어서 【사례18】

나. 가정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1) 가정폭력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관련 기관종사자들은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심리적 상태를 자존감의 저하(사례1), 남편의 고립화로 인한 사회성 저하와 무력감(사례4),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사례5) 등으로 생각했다. 또한, 사례9는 남편의 마음에 들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때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정폭력의 원인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내담자가 있을 정도로 피해여성들에게는 심리적 좌절이 존재한다고 봤다.

피해자도 상담을 하는데...피해자들이 자존감 수준이라고 한다면...□□인 거죠. 물론 가해자들도 자존감 수준이 □□이니까 그런 행위를 하겠지만...일단 피해자들이 무기력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그래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좀...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사례1】

가정폭력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고립화가 있잖아요...남편이 못가게 하지. 사회적인 자원하고 고립을 시키잖아요...친정에 가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말 못해서 점점 줄이지만 나중에는 남편이 너 친정에 뭐 하러 가느냐 쓸데없이 어 외출 친구 뭐 하러 만나느냐 해서 이 사람을 고립화시켜서...그러다 보면 점점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도 점점 떨어지고 이게 이제 무력감까지 되면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관계에 자신이 없을 수 밖에 없는데...고립되는 부분도 있고...공황이나 우울장애도 있고 【사례4】

이혼한다고 확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든 대인관계로든 사회적인 인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좀 그냥 하던 대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선택할 수 있는 쪽이 라든가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삶보다 더 좋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사례5】

남편이, ‘술을 안 먹으면 되게 착해요’ 이라고 ‘술만 마시면 그래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술 먹고 그런다고 하시고.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이나 교육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보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이제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걸 내가 막’ 이렇게... 뭐 말하자면 이렇게 막 말하자면 ‘남편이 막 돌게끔 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본인, 자기 책임으로 좀 돌리는 게 있어요. 【사례9】

2)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징

면접했던 시설종사자들은 가정폭력가해자들을 알콜중독자로 보았다. 또한 이들중 성차별의식을 가진 가해자일수록 죄책감이 없으며 오히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를 통해 아내가 나쁜 것을 배워온다고 생각한다(사례1). 그리고 가해자들 중 의처증이 많다(사례10). 가해자들은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잘 모르며 피해자인 아내를 보호하는 것을 감금으로 우기는 등,

가족해체의 원인을 가정폭력방지 서비스 때문으로 본다(사례4).

90%알콜중독자,,시설에서 아내가 나쁜 것을 배워온다고 생각...성차별의식이진사람일수록 폭력죄책감없다 【사례1】

사회적 편견이 가장 어려워요...가해자들이 맨 처음에 쉼터에 찾아와서 첫마디가 (아내를)감금했다 그리고 너희가 있기 때문에 마누라가 나간다 그리고 뭐 하러 쓸데없이 그런 여자들 돌려주느냐...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우선 안 된 것 같고 【사례4】

그 배우자에 대한 그... 분노감정이 심하신분 들이 많아요. 의처증...의처증이 있거나 아니면 의처증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이렇게 심하게 구타를 하거나 폭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례10】

3)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① 의사소통의 문제

사례1은 가정폭력의 원인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기술부족으로 본다. 이는 특히, 제주남성과 타 도시 여성 부부간에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사례4는 가정폭력가해자들이 총각 때 하던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오는 버릇을 고치지 못해 제주도 남성과 타도시여성부부간 갈등이 많다고 진단한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공동체문화이지만 육지는 개인문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한 목소리의 거친 제주어는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을 방해해 가정폭력의 발생을 유발하며(사례10) 남성들이 육지여성을 선호하면서도(사례7) 생활에서는 제주여성들처럼 강인하고 부지런하며 알뜰하기를 원해 갈등이 증가한다고 본다(사례10)

문화차이/술/제주도의 인건비 낮음/의사소통기술부족/총각 때하던 것을 결혼해서도 똑같이 함...제주도남성과 타 도시여성 부부갈등 많다 【사례1】

체면문화, 공동체문화..우리 집도 다 그런다...주류문화...술 먹고 새벽에 오거나...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문화의 차이로 인한 폭력 많다...공동체문화vs개인중심의 문화 【사례4】

저가 상담을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본 계기는 뭐냐면, 남편들이 보면은 여자를 갔다가 자꾸 비교를 한대요. 육지 사람들은 여리다, 여리고 나긋나긋하다, 애교도 많다. 제주도 여자는 독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는 육지여자를 선호하고, 또 여자역시 마찬가지로 육지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여자를 잘 이해해주고. 그래서 나는 육지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남자는 육지여자를 선호...막상 데리고 오면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사례7】

제주도는 언어자체가 약간은 강하고 거칩니다...높고 강한 목소리라 오히려 더 불안감이나...잘 온화하게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나...다정다감함, 자상함, 온유함. 이런 모델링들은 학습이 잘 안 되어서 서로 소통할 때 그런 정서들은 다 빼고 내가 원하는 말만 하다보니 소통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않나...제주여성들은...강인하다는 건 부지런 플러스 알뜰함...그런 부분을 타도에서 오신 여성분들한테 요구를 하면 많이 갈등요인이 되지 않을까...면대면 소통부재 【사례10】

② 음주문화

중사자들은 가해자남편들의 특징이 술을 먹고 때리는 반복적인 폭력지속성을 보인다고 본다(사례7) 또한 제주문화가 술에 관대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때 반드시 술이 없으면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문제로 본다(사례1).

말로는 여자에게 진다 그래서 폭력...특히나 제주도 지역사회...술이 없으면 사회적 관계를 못맺는다...이런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남자 분들이 그렇더라고요...뭔가 소통을 하려고 하면 대화를 하려면 술이 좀 끼어야 된다는...이런 맥락들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그러니까 알콜 중독자 가족 내에서 가정 폭력이 자주 발생하니까 【사례1】

가해자남편의 경우는 술을 먹고 늘 패턴, 반복적인 패턴으로 때리는 거예요 【사례7】

③ 가정폭력가정에서의 성장

또한 가정폭력가해자들도 어린시절 가정폭력피해자들이며(사례10). 사회학습이론처럼 폭력이 대물림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란 남아들에게 폭력이 학습되어 잠재적인 가정폭력 가해자로 성장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왜 여이는 피해자로 남이는 가해자로 가정폭력이 되물림되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이를 공격적으로 키우고 여아를 수동적으로 키우는 성역할 사회화로 인해 가정폭력의 사회화는 여아를 잠재적 피해자로 남아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들도 가정폭력피해자들이다...폭력이 세대전수되는 대물림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좋을거구요 【사례10】

④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

사례4는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남성들의 인식이 '왜 맞고 사는 여자를 도와주는가' 즉 일반 남성들은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사례7은 경찰관도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켜 가해자에게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조용히 지내라고 종용하거나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닌 창피한 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토로한다. 사례4는 경찰관 뿐 아니라 판사 및 가정조정위원들의 인식부족도 문제가 있음을 언급한다. 가해자의 자녀면담을 인정주의관점에서 허용해 피해자어머니와 보호시설에서 함께 지내던 아동이 아버지를 만난 후 아버지에 대한 공포로 오히려 퇴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사례4).

일반남자들도 남자침터는 왜 없나, 왜 맞고사는가, 왜 그런 여자를 도와주나...조정위원들, 가정조사관들의 인식문제...경찰이나 법원판사이쪽도 아직..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안되는 것 같고... 【사례4】

그 가해자한테 자기 지인처럼 ‘대충 빨리빨리 해서 무마시켜라’, ‘조용하게 지내자’, ‘이게 뭐냐, 무슨 창피냐’ 【사례7】

4)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문제점

①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된 자립지원책 미약

사례4는 제주도의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자립지원이 1년에 한 두명 지원으로 미약할 뿐 아니라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된 피해여성에 맞는 자립지원정책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을 언급한다.

우리나라 정책도 그렇고 제주도의 정책도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을 보면, 예방에 대한 부분이 있고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들이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런데 자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전무하다고 봐야 돼요. 자립에 대한 부분이 전무한 게 지금 겨우 있는 게 주거지원이라고 해서 2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집만 제공하지 기타까지는 거의 제공이 안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여기 입소했다가 거의 50%이상이 이혼을 하거나 독립을 하거나 하는데 생활적인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거나 이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여가부정책 외 고유한 제주도 정책없다...자립지원1년에 한두명 다른 지역과 다르게 【사례4】

② 자녀의 심리치료미비

가정폭력의 원인중 하나인 사회학습이론은 폭력가정의 아이들이 폭력을 학습하거나 모방해 학교폭력뿐 아니라 성장해 가정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폭력가정의 아이들의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간과한 문제점이 있다. 사례4는 폭력가정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더 큰 폭력에 자신들의 상처를 심적으로 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사례9는 자녀가 보호시설에 왔을 때 자신의 분노를 감추어 착한 듯 행동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분노가 폭발하고 거친 행동을 하며 궁극적으로 사례5처럼 엄마와의 관계도 또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해 피해자의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폭력가정의 아동에 대한 개인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저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애들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에서 폭력이 일어날 땐 아버지 폭력이 워낙 크고 어머니가 그걸로 인한 고통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심적인 문제를 드러내지 못해요...그런데 쉼터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엄마가 이혼한다 뭐 법률한다 치료한다 불안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동안 엄마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엄마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엄마를 지켜보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를 들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퇴소하고 엄마가 자기

힘으로 집을 구한다거나 주거지원 시설에 들어간다거나 해서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 이 아이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나와요 거식증이라든가 학습장애라든가 과잉행동장애라든가 식이장애라든가 이런 문제들 뭐 【사례4】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억눌러요...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착한 듯이 보여요...이게 한 달 지나고...되게 거칠어져요...아들들 같은 경우는 개인치료가 좀 중요해 【사례9】

자녀하고 엄마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또 아이들이 문제도 좀 어려움이 많고...정서적으로 상황이라든지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례5】

③ 기관운영비 지원 부족

사례5는 가정폭력관련 기관에 지원되는 국비와 도비지원 즉 운영비의 규모가 많지 않고, 급여가이드라인 또한 없어, 사회복지자격증이 있어도 타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처럼 일한다고 해도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사례10도 운영비지원이 없어 같은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에게 적절한 급여를 줄 수 없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저희는 통으로 쪼기 때문에...보조금자체가 많지 않고...급여가이드라인이라든가 총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3교대해야되요...인력이부족해요...휴가받는것도 어렵고...야근수당도 잘되지않아좀 힘들고...이직율도높고...반정도가 올해 입사...저희쪽같은일을하고...복지사자격증있거든요그런데도 처우가 달라요...급여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사례5】

저도 일한거만큼 보수를 받을 수있으면 조금더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있었을 텐데...운영비지원이 안되고...저희 직원들역시 일한만큼의 적절한 보수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지금 타기관에 비해서 지금 사회복지기관에 타 기관은 지금 타 상담소는 70%정도 수준이 되는데 저희 기관은 50%수준밖에 안됩니다 【사례10】

사례7은 운영비에서 임대료를 쓸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 임대료를 후원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과 더 싼 건물임대를 찾아 장소를 옮겨 다녀야 하는 공간이동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써야 되고. 또 되게 지참이 되게 까다롭다 보니까 여기에서 임대료나 이런걸 쓸 수 없으니 임대료는 다시 또 후원을 통해서 임대를 해야 되고...저희 한번은 여기 오기 이전에 있었던 곳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그 공간을 써야 된다고 저희를.. 쫓겨 난거예요.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갑자기 이렇게 떠야 되는 거라든지... 집세에 대한 부분들이 늘 고민이고 ...조건에 맞춰서 가야된다고 하면 가겠지만 건물에 대한 임대비나 좀 몇 년 계약을 하고 어디에다 이동을 해야 되고 보따리 장사처럼 늘 【사례7】

5) 정책욕구

① 대상별 피해자 지원시설의 확충

사례5는 가정폭력피해자들 중 정신적 질환에 노출된 여성들과 그 외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전문보호시설이 제주에 필요함을 강조했다. 가정폭력시설종사자들은 정신적 질환에 노출된 피해자들과 그렇지 않은 피해여성들을 동시에 돌봐주어야 하는데 정신적 질환을 가진 피해자들을 통제할 수 없어 그 외 다른 피해여성들에게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폭력피해가 아닌데 정신질환이있으신분들...경찰에 와서 신고가 들어가면 여성이니까 우리한테 보호하라고...피해자한테 신경못쓰고...이불에 소변을보시고...저희 뺨을때리는 분도 계시고...노숙자시설에 가면 여자는 안되고...피해를 입기 쉽다는거예요...정신적문제가 있는분들을 보호하는 정신응급시설같은게 있으면 【사례5】

또한, 사례2는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집과 상담소 그리고 보호시설을 반복해서 다니는 이유를 직장을 다니는 피해여성의 경우 비공개 보호시설에 주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가 재 폭력을 경험 한 후 다시 상담소를 찾기 때문으로 본다. 직장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해 보호시설을 따로 만드는 것이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직장생활을 지속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쉼터를 못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정말 친정으로 갈수 없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주변에 자원이 사실.. 대부분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주변에 자원이 없잖아요. 친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자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좀 안전을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직장유무별로 비공개보호시설필요 【사례2】

② 포괄적 피해자 자립지원 필요

특히, 제주도의 자립지원정책이 여성가족부의 정책외 제주도의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없음을 사례4는 비판한다. 사례4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을 위해 피해여성들이 쉼터를 떠나 자립한 2~4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들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인 치료가 지원되어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제주도의 산업구조의 특징상 저임금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일반여성처럼 피해여성들도 저임금 서비스산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혼자 벌어서 자녀를 부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비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아이의 학습비 지원을 통해 피해여성의 자립을 도와야한다고 강조한다.

제주도의 자립지원정책은 사실전무...퇴소 후 엄마가 자립 후 아이들의 심리적문제가 나온다...2-4년 정도...생계비지원과 의료지지원, 심리치료, 아이 학습지원 엄마의 안정과 부담을 줄고 【사례4】

③ 피해 아동의 개인 심리치료프로그램필요

사례9는 보호시설에 피해여성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에 대한 집단 상담이 아닌 개인 심리집중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결국, 자녀들의 정신안정은 피해여성의 자립에 안정을 제공하고 자녀들이 잠재적인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성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가정폭력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 들어온 아이들에게는 심리치료프로그램 필요...아동을 위한 거는.. 그거는 또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집단 상담을 꼭 끼라고 하니까. 근데 집단상담도 물론 좋지만 아동을 같은 경우는 개인치료가 좀 중요해요. 개인으로. 저희들은 지금 지원금을 따가지고 아이들 될 수 있으면 그 후원금으로 해서 지금 심리치료를 많이 받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리치료는 아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례9】

④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필요

사례9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과 관련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이게 폭력이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맞아야지만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폭력을 안 당했다’ 라고... 처음에는 다 그렇게 다 생각을. 우리도 이런 것이 자라면서 다 그런 교육에 의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례9】

⑤ 결혼 전 부부·부모교육의 필요

사례1과 사례10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결혼전 또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 의무적으로 부모교육과 부부교육, 그리고 성교육, 경제교육 등 결혼생활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 인가를 배워,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결혼아카데미교육을 강제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 하기 전에 3가지 맥락을 배워야 혼인신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교육, 성교육, 경제교육 이게 있어야 되겠다...상담을 하다보면 총각 때 하던거를 결혼해서도 똑같이 하니까 갈등이 생기죠 다 총각 때 친구 집에 가서 술 마시고 그 집에 자던 버릇, 결혼해서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죠 결혼하면서 그런 것도 개선을 하고 【사례1】

결혼아카데미든 결혼 전 부부교육이든 이런 관련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신고를 받아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가정폭력예방이 아동폭력예방이다 【사례10】

3. 소결

본 절에서는 가정폭력피해당사자의 피해경험과 관련기관 종사자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 면접조사 결과 어린 시절부터 직·간접적인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사례자일수록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쉽게 놀라며, 사소한 말다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해서도 남편의 폭력에 대해 ‘잘못했으면 맞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가정폭력피해자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의 가정폭력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피해자가 많았다. 신체적 피해의 경우 처음 폭력 시 뺨 한 대에서 그 후로 계속 해서 주먹과 발로차기, 도마로 때리기, 폭력의 시간이 지속될수록 얼굴을 심하게 구타해 얼굴과 이빨이 없어질 정도로 폭력의 수위가 높았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지속되거나 중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음 발생 할 때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을 견디는 이유는 자녀에게 이혼가정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물려주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남편이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는 가정폭력의 대응이 ‘주로 맞으면서 참는다’는 설문조사결과와 유사했지만, 문제는 피해자들이 병원에 갈 만큼 신체적인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움 남편이 범법자가 될까봐 경찰이나 가정폭력방지 관련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가정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들의 정책욕구를 조사한 결과, 보호시설에 피해있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은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두려워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들은 피해자안전강화를 위해 가해자를 경찰서로 연행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원했으며 피해자보호 차원에서 경찰서에 가기보다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조서를 쓰는 것을 선호했다. 또한,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보호 서비스로 각종서류를 본인이 준비하는 것보다 본인의 동의를 받은 관련 기관종사자나 자원봉사자가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지원을 제안했다.

셋째, 가정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기관 종사자들은 피해여성들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오랜 상담을 통해 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의 다양한 원인 중 남성과 여성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간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으며, 더불어 가정폭력을 개인의 창피한 문제로 취급하는 태도와 음주에 관대한 제주문화를 지적했다. 다양한 가정폭력 관련정책의 문제점이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자립지원정책의 부족과 관련기관의 운영비지원 부족, 낮은 급여의 문제를 언급했다.

넷째, 이들의 정책욕구를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피해여성들의 정신적·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호시설을 대상별로 유형화해 가정폭력피해자 중 정신질환자와 비 정신질환자를 분리보호하고, 직장여성도 일하면서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봤다. 가정폭력예방을 위해서는 폭력가정 자녀들에 대한 자녀 치료프로그램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잠재적인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성장하는 것을 차단하고, 결혼 전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부모관련 결혼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해 가족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가정폭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정폭력관련 국내·외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도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의 일반적 사항,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피해 경험, 가정폭력 관련 제도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가정폭력피해자와 관련 기관 종사자 면접을 통해 가정폭력피해경험과 가해자의 특징,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경험과 문제점, 가정폭력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정책욕구 등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결과를 요약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요약

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원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무대응’(75.7%)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의 무 대응 탓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열등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의 원인이라는 항목에서 성별인식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배우자의 열등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제주시에 거주 할수록 경제적 문제가 가정폭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소득 가구일수록, 서귀포시 거주자일수록 피해자의 무대응 탓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가정폭력 통념조사에서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와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에 성별, 지역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의 경우 남성일수록, 농촌지역 거주자일수록 그렇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라는 통념의 경우는 여성일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가정폭력의 원인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았다.

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징

가정폭력피해자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여성피해자들이 많았으며 남성들은 아버지로부터 폭행건수가 가장 많았고 여성들은 배우자로부터의 폭행건수가 많았다. 이들의 최초피해연령

대를 분석한 결과 아동기(7-13세)때가 53.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수는 적지만, 폭력피해 장애인의 경우도 여성장애인(83.3%)이 남성장애인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가해자로 아버지가 가장 많고 다음이 배우자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부부폭력피해와 자녀폭력가해를 조사한 결과 부부폭력의 경우 여성피해자(68.5%)가 남성(31.5%)피해자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이들이 경험하는 폭력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녀에게 가한 폭력유형에서도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응답자와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로 나누어 생활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배우자관계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가정폭력 유경험자가 가정폭력 무경험자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폭력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현재 삶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발생 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현장 개입이 필요하며 정서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긴급임시조치를 집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 가정폭력 피해 후유증

가정폭력 피해자의 53.0%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폭력 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은 무서움과 두려움(65.9%)으로 나타났다.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직후 심경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들이 ‘죽고 싶다’와 ‘폭력 행위자를 죽이고 싶었다’가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절반정도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 불안/우울, 자신에 대한 실망/무력감/자아상실이라는 정신적 후유증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정폭력관련기관에 선호하는 서비스로 정신 및 심리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치료 관련서비스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라. 피해자의 대응

가정폭력 피해당시 대응방법에 대한 조사결과 ‘그냥 맞으면서 참음’(56.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무조건 피함’(28.4%)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주위에 도움 요청’(11.5%)과 ‘함께 폭력행사’(9.5%)라는 응답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 시 도움요청대상은 경찰이나 공공 서비스 기관의 비율은 낮고 가족이나 친척이 많았다. 경찰이나 가정폭력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와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 가정폭력 법과 공공 서비스 인지도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인지도 결과 전체응답자의 85.8%가 가정폭력관련 법의 내용까지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폭력법인지 여부에서 내용까지는 모른다가 각각 85.1%와 86.5%였다. 특히, 여성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 남성들보다 낮게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거주자들이 제주시 거주자들보다 모르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전혀 모르는 경우는 만 60세 이상(30.8%)의 고령자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초등졸 이하가 전혀 모르는 경우(37.7%)가 가장 많았다.

내용을 잘 아는 응답자들의 내용인지경로를 분석한 결과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를 통해 서가 가장 높았다. 성별로도 여성들(64.4%)이 남성들(54.4%)에 비해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를 통해 가정폭력관련 법을 더 많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상담소(58.9%), 경찰(96.9%), 여성긴급전화1366(44.6%)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지만, 나머지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30% 이하로 낮게 나타났고 의료비지원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19.2%)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과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기관에 대한 홍보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바. 정책수요

정책참여도와 관련해 가정불화 및 폭력 해결·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참여할 의향이 없다라는 경우(83.8%)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16.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폭력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경험 이 있는 사람 30.6%가 참여의향을 밝혔다. 가정폭력경험이 없는 사람은 5.8%만 참여의향을 밝혔다. 결국,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6배정도 참여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의향이 높았다. 학력별로도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볼 때, 참여의향은 제주시 거주자들이 서귀포시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

사에서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 치료 프로그램 제공’(31.0%)과 ‘폭력 허용적인 사회 문화의 개선’(30.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18.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36.6%), ‘직장 및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35.3%),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12.1%)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 피해자와 기관 종사자의 심층면접 결과

본 조사의 심층면접은 피해자 10명과 기관 종사자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피해자의 심층면접 결과 어린 시절부터 직·간접적인 폭력피해경험을 한 면접자들은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쉽게 놀라고, 사소한 말다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피해 또한 심해 처음 폭력 시 뺨 한 대에서 그 후로 계속 해서 주먹과 발로차기, 도마로 때리기, 폭력의 시간이 지속될수록 얼굴을 심하게 구타해 얼굴과 이빨이 없어질 정도로 폭력의 수위는 높았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지속되거나 중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음 발생 할 때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면접자들에게서 나타난 피해의 대응방법은 처음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무조건 참으며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의 대응이 ‘주로 맞으면서 참는다’는 설문조사결과와 유사했지만, 문제는 피해자들이 병원에 갈 만큼 신체적인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보복이 두려움과 남편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에 대한 가정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의 면접자들은 가정폭력의 문제점으로 개인정보의 노출, 이혼기간의 장기화, 자녀의 심리적 문제를 어려움으로 제시했다.

관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의 내용은 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피해정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징,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문제점, 정책요구 등을 질문하였다. 기관 종사자들이 판단하는 피해여성들의 후유증은 신체적, 정신적, 일상생활의 어려움 중 특히, 심리상태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오랜 상담을 통해 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의 다양한 원인 중 남성과 여성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간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으며, 더불어 가정폭력을 개인의 창피한 문제로 취급하는 태도와 음주에 관대한 제주문화를 지적했다.

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립 지원정책의 강화와 폭력가정 아동의 개인적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피해여성들의 정신적·심리치료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기관의 운영비지

원의 문제와 낮은 급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유형화해 가정폭력피해자 중 정신질환자와 비 정신질환자를 분리보호하고, 직장여성도 일하면서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봤다. 가정폭력예방을 위해서는 폭력가정 자녀들에 대한 자녀 치료프로그램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잠재적인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성장하는 것을 차단하고, 결혼 전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부모관련 결혼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해 가족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가정폭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2. 정책제언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을 가정폭력예방,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가정폭력관련 사법기능강화와 가해자교정강화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가. 가정폭력예방 정책

1) 가정폭력관련 법과 관련서비스에 대한 정책홍보 확대

가정폭력관련 법과 관련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경험자들은 가정폭력피해에 대해 그냥 맞으면서 참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폭력 피해경험자들이 자녀와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며 경찰이나 가정폭력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참을수록 가정폭력은 지속되고 큰 신체적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들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관련 법과 관련서비스를 홍보해야 한다. 조사결과, 가정폭력 관련법을 모르는 도민이 85.8%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인지 여부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상담소와 경찰, 긴급전화 1366을 제외하고는 관련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모른다고 응답해 도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2) 대상별 가정폭력예방교육 확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남성, 장애인가정, 아동, 지역특징 등을 반영한 대상별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여성장애인들이 가정폭력에 남성들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여

성들과 나이가 많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가정폭력 관련법과 지원서비스를 모르고 있었다. 특히, 가정폭력 최초 피해연령을 조사한 결과 아동기 때(53.0%) 가정폭력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예방교육의 강화와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

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

1) 가족치료 프로그램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절반정도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 불안/우울, 자신에 대한 실망/무력감/자아상실이라는 정신적 후유증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정폭력관련 기관에 선호하는 서비스로 정신 및 심리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연결된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1순위로 '부부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가족 치료 프로그램 제공'(31.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폭력가정의 부부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불안, 분노,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녀들에 대한 가족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상담소·보호시설·지원기관들이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를 확대해 가족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2) 맞춤형 보호지원 및 동반 아동지원

심층면접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며 동반한 자녀가 있는 피해여성의 경우 비공개 보호시설에 주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직장이 있는 피해여성의 경우 주거 공간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문제는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갈 경우 재 폭력의 위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이 보호시설 외 임시거주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해 도에서 우선적으로 임시주거비를 한정된 기간 동안 지원해주는 '긴급주거비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동반아동에 대해서도 개인별 상담 및 치료를 포함해 학습지도 등 동반자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중에는 정신 질환에 노출된 피해자들도 있어 임시보호시설이나 비공개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들 중 정신 질환에 노출된 여성들을 위한 전문보호시설이 제주지역에 필요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보호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3) 피해자 비밀보장 강화

심층면접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재범을 두려워했다. 접근금지는 가해자가 그 명령을 깨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재범 때의 폭력수위는 더 높고 잔인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 결과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피해자 안전강화를 위해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현재, 가정폭력특례법 제18조와 제64조에 의해 피해자비밀보장 위반 시 처벌대상으로 가정폭력가해자의 보조인, 상담소 등의 상담원 및 그 기관장, 신문 및 방송 편집인·기관장·종사자의 정보누설에 대한 징계를 제시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추가해, 피해자를 치료 한 의료기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까지 피해자 정보 누설에 대한 징계를 확대 적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관리·강화해야한다.

4) 가정폭력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지원시스템 강화

조사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53.0%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정폭력피해자들은 경찰이나 공공 서비스 기관보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층면접 분석결과 신체적 피해는 처음 폭력 시 뺨 한 대에서 그 후로 계속 해서 주먹과 발로차기 등 폭력의 시간이 지속될수록 얼굴을 심하게 구타당해 중한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정폭력이 처음 발생 할 때부터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상담, 치료, 법적 지원, 주거 보호, 경제적 자립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시스템의 강화, 가해자 처벌 및 교정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5) 가정폭력 관련 기관운영 내실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자립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심층면접결과 피해자들은 상담소를 통해 정신적인 안정과 이혼소송관련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상담을 통해 남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와 남편도 상담에 참여해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였다. 또한, 보호시설의 경험을 통해 신체적인 회복과 정서적인 안정, 자립에 대한 이유와 힘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종사자들이 겪는 기관운영비 지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해 가정폭력 피해자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다. 가정폭력관련 사법기능 및 가해자교정 강화

1) 경찰의 현장대응과 사법처리 강화

심층면접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현장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경찰서로 연행하기를 원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서비스를 수행하지만 신체적 피해가 눈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피해자의 신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정서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 기소로 이어지는 검찰, 사법기관의 연계 통한 피해자보호 등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2)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확대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가해자의 교정치료를 원하고 있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에 81.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피해여성들이 가해자의 치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조사결과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을 견디는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면접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특징은 알콜의존 정도가 심하고 보수적이며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져 아내폭력을 더 허용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해자의 성역할 태도와 폭력행동변화를 통해 아내의 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복순. 1999.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호.
- 김승권 외. 1998. 『한국가정폭력의 이론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운희. 2008. 『가정폭력범죄』. 백산출판사
- 김준호·김선애. 1991.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소현. 2013.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변화순 외. 1999.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외. 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신상숙. 2006. “제도화 과정과 갈등의 협력적 동학: 한국의 반(反)성폭력운동과 국가정책”. 『한국여성학』 제24권1호, 8-19.
- 양현아·김현정. 2012. “가정폭력 “피/가해자”의 탄생: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사적 구제”. 『공의과 인권』 통권제12호, 73-104.
- 오세연. 2011. “가정폭력 상습성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2호, 82-105.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해외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 미국, 영국, 호주』.
- 유덕순. 2001. “아내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례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금옥. 2009.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행동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위탁처분 대상자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원숙. 1998. “국내외 성폭력상담소의 역사적 변천과정”. 『국내외 성폭력 연구동향 및 지원체계』. 한국성폭력상담소.
- 장희숙·김예성. 2004. “가정폭력행위자의 유형이론에 따른 세하위유형의 검증” 『국사회복지학회』 제 6권제호: 203-525.
- 현혜순. 2005. “아내폭력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탐색 - 여성주의 인지행동 접근을 중심으로 - ”.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Gelles. R. J. 1998. 이동원·김지선 역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 _____, R. J. 1997.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Sage Publication.
- Goode, W. J. 1971. "Force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 Ho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2). 213-218.
- O'keefe, M. and Lebovics, S. 1998. "Intervention and treatment strategies with adolescents from maritally violent homes", In A. R. Roberts(Ed.),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NY: Springer. 174-202.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 D. W., & Runyan, D.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s-Child Conflict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 Straus, M. A. 1973. "A General Systems Theory Approach to a Theory of Violence between Family Members", *Social Science Information*. 12. 105-125.
- WHO. 2005.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an-Full Report」.
- Walker, L. E. 1979. *The Battered Woman*. Harper & Row.
- 여성가족부. 2013.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
- _____. 2011.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 _____. 2010.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 _____. 2007. 「2007년 가정폭력실태조사」
- 여성부. 2004. 「2004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경찰청범죄통계자료. 2011-2013.
-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 2012-2013.
-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2010-2013.
- 제주경찰청 내부자료. 2010-2013.
- 통계청 통계자료.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 한라일보. 2014. 01. 13. 「도내 가정해체 위기 심상치 않다」



부 록

설문조사지

	2014 제주 여성·가족 실태조사	ID				
---	--------------------	----	--	--	--	--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제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성·가족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귀하가 주시는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가족정책을 만드는 데 매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제주 여성·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컴퓨터로 집계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의견...’이라는 식으로 통계처리됩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 8.

주관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혜순

대행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추아름 실사감독원(02-3218-9662)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아래 부분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시	읍·면·동	세부주소	가구번호
		()	

SQ1	성별	☐ 1) 남성 ☐ 2) 여성
SQ2	연령	만_____세 (☞ 만19세 미만 면접중단)
SQ3	가구주 여부	☐ 1) 가구주임 ☐ 2) 가구주 아님

※ 응답자 연락처는 응답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가구주란 호주나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분을 말합니다

☞ 설문종료 후 기입할 것

면접원	면접일시	월 일 /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응답자	연락처	() - () - ()	

A. 가구구성 (가구주 기준 응답)

문1. 먼저, 귀하의 가구에 대해 여쭙어보겠습니다. 현재 귀댁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이며, 성별, 연령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1) 가구주와의 관계		2) 성별			3) 연령	4) 혼인상태						응답칸
	관계	보기 번호	① 남자	② 여자	응답칸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⑥ 사실혼 (동거)	
1	가구주	01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2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3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4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5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6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7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8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9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10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보기 1) 가구주와의 관계

01) 가구주	08) 배우자의 부모	15) 하숙생
02) 배우자	09) 형제/자매	16) 가사도우미
03) 자녀	10) 배우자의 형제/자매	17) 이성동반자
04) 자녀의 배우자	11) 형제/자매의 배우자	18) 돌봐주는 사람
05) 손자녀	12) 조부모	77) 기타(누구: _____)
06) 손자녀의 배우자	13) 기타 친인척	
07) 부모	14) 친구	

문2. 귀하가 살고 있는 가구는 어떤 유형의 가구입니까?

응답칸

1. 가구유형	1) 농·어가	2) 비농가(비어가)					
2. 주택유형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빌라	4) 다세대주택	5) 원룸·오피스텔	6) 기타	
3. 주택점유형태	1) 자가소유	2) 전세	3) 보증부 월세	4) 월세(사글세)	5) 보증부 연세	6) 공공임대	
	7) 무상	8) 기타()					

문3. [보기카드 제시] 현재 귀댁의 세대구성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세대 가구	01) 1인 가구 02) 부부 가구 03) 형제자매 가구 04) 기타 1세대 가구	3세대 가구	12) 부부 + 미혼자녀 + 양친 13) 부부 + 미혼자녀 + 부친 또는 모친 14) 기타 3세대 가구
2세대 가구	05) 부부 + 미혼자녀 가구 06) 부 + 미혼자녀 가구 07) 모 + 미혼자녀 가구 08) 조부모 + 손자녀 가구 09) 조부 또는 조모 + 손자녀 가구 10) 부부(성인자녀) + 부모(양친/부/모) 가구 11) 기타 2세대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15) 4세대 이상 가구
		비친족 가구	16) 비친족 가구

문4. 지난 1년 동안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가구소득은 함께 사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3) 200~300만원 4) 300~400만원
5) 400~500만원 6) 500~600만원 7) 600~700만원 8) 700만원 이상

문5. 귀댁의 주 소득원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소득원 하나만 응답하여 주십시오(가구주 기준)

- 01)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02)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 03) 부부 공동 근로(사업)소득
04) 부모의 근로(사업)소득 05) 자녀의 근로(사업)소득 06)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원
07) 부모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08)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나 용돈 09) 자산소득(예금이자, 주식배당금, 임대소득 등)
10) 공적연금 11) 정부지원금 12) 기타(구체적으로:)

※ 1) ~ 5)번은 같이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
7), 8)번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의미함,

문6. 귀하는 현재 귀댁의 경제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2) 약간 만족 3) 보통 4) 약간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B. 개인관련 사항

※ (조사원기입) 응답자의 가구원 번호 _____ 번(앞의 가구표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시킬 것)

문7.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0) 무학 1) 초등(국민)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학(2·3년제) 5) 대학교(4년제) 6) 대학원(석사과정) 7) 대학원(박사과정)
8) 서당, 한학

문7-1. 위의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 1) 졸업했다 2) 중퇴했다 3) 휴학 중이다
4) 재학 중이다 5) 수료했다

문8. 2014년 7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귀하는 제주에 얼마동안 거주하십니까?

년 개월

문9. 귀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 01) 제주 02) 서울 03) 부산 04) 대구 05) 인천
 06) 광주 07) 대전 08) 울산 0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99) 기타()

문10.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무급으로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도 취업에 포함됩니다)

	본인	배우자(배우자가 있다면)
10-1. 현재 취업여부	☐ 1) 취업 ➡ 문10-3으로 ☐ 2) 미취업 ➡ 문10-2로	☐ 1) 취업 ➡ 문10-3으로 ☐ 2) 미취업 ➡ 문10-2로 ☐ 9) 비해당
10-2. 미취업사유 (미취업자만) ➡ 응답후 문12로	☐ 01) 재학 ☐ 02) 가사 ☐ 03) 가족돌봄 ☐ 04) 노령 ☐ 05) 질병 ☐ 06) 심신장애 ☐ 07) 일시휴직 ☐ 08) 실직 ☐ 09) 정년퇴직 ☐ 10) 명예퇴직 ☐ 11) 기타(무엇:)	☐ 01) 재학 ☐ 02) 가사 ☐ 03) 가족돌봄 ☐ 04) 노령 ☐ 05) 질병 ☐ 06) 심신장애 ☐ 07) 일시휴직 ☐ 08) 실직 ☐ 09) 정년퇴직 ☐ 10) 명예퇴직 ☐ 11) 기타(무엇:)
10-3. 직종 (보기카드 제시)	☐ 01) 관리자 ☐ 0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03) 사무 종사자 ☐ 04) 서비스 종사자 ☐ 05) 판매직 종사자 ☐ 06)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 0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09) 단순노무 종사자 ☐ 10) 기타(무엇:)	☐ 01) 관리자 ☐ 0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03) 사무 종사자 ☐ 04) 서비스 종사자 ☐ 05) 판매직 종사자 ☐ 06)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 0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09) 단순노무 종사자 ☐ 10) 기타(무엇:)
10-4. 종사상의 지위 (보기카드 제시)	☐ 01) 상용근로자 ☐ 02) 임시근로자 ☐ 03) 일용근로자 ☐ 04) 시간제 근로자 ☐ 05) 고용주 ☐ 06) 자영업자 ☐ 07) 무급가족종사자	☐ 01) 상용근로자 ☐ 02) 임시근로자 ☐ 03) 일용근로자 ☐ 04) 시간제 근로자 ☐ 05) 고용주 ☐ 06) 자영업자 ☐ 07) 무급가족종사자
10-5. 주당 평균 근무시간 (응답자 기준)	주 평균 시간	
10-6. 월 평균 근로 소득 (응답자 기준)	월 만원	

문11. (취업자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하시는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응답후 문13으로

- 1) 매우 만족 2) 약간 만족 3) 보통 4) 약간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12. (미취업자만)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면, 제주도 내에서 귀하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어렵다 2) 다소 어렵다 3) 보통이다
 4) 별로 어렵지 않다 5) 전혀 어렵지 않다 6)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다

문13. 귀하는 여성 일자리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진해야할 정책을 우선 순위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기업의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남녀고용차별 해소 | 2) 일·가정 양립 제도 및 문화 확산 |
| 3)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및 여성 맞춤 일자리 창출 | 4) 여성의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과 교육 확대 |
| 5) 여성 창업 및 여성 경제인 지원 강화 | 6) 기타() |

문14. 귀하는 여성취업 지원 대상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청년층 여성(20~29세) | 2) 경력단절 여성(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 |
| 3) 중장년층 여성(40~59세) | 4) 고령 여성(65세 이상) |
| 5) 저소득층, 미혼모,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여성 | |

문15. 귀하는 직업, 건강, 소득, 가족생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 | | |
|----------|----------|-------|-----------|-----------|
| 1) 매우 만족 | 2) 약간 만족 | 3) 보통 | 4) 약간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
|----------|----------|-------|-----------|-----------|

문16.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에서 귀하는 어떤 사회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1) 상의 상 | 2) 상의 하 | 3) 중의 상 | 4) 중의 하 | 5) 하의 상 | 6) 하의 하 |
|---------|---------|---------|---------|---------|---------|

문17. 귀하는 혹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 | | |
|--------------------------|----------------|
| 1) 예 (장애_____급) ☞ 문17-1로 | 2) 아니오 ☞ 문18으로 |
|--------------------------|----------------|

문17-1. 귀하의 주 장애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1) 지체장애 | 2) 뇌병변장애 | 3) 시각장애 |
| 4) 청각언어장애 | 5) 내부기관장애 | 6) 자폐성·지적장애 |
| 7) 정신장애 | | |

C. 가족생활

※ 아래부터는 귀하의 가족생활 전반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18.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1) 미혼 ☞ 문19로 | 2) 기혼 ☞ 문18-1로 |
| 3) 사별 ☞ 문18-1로 | 4) 이혼 ☞ 문18-1로 |
| 5) 별거 ☞ 문18-1로 | 6) 사실혼(동거) ☞ 문18-1로 |

문18-1. 귀하께서 문18에서 응답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결혼기간, 사별기간, 이혼기간, 별거기간에 대해 각각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 1년 미만 | 2) 1~3년 미만 | 5) 10년 이상 |
| 3) 3~5년 미만 | 4) 5~10년 미만 | |

문19.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문18에서 ① ③ ④ ⑤ ⑥ 응답자만) 귀하는 장래에 결혼할 계획이 있습니까?

- | | |
|---------------------------|--------------------------|
| 1) 반드시 할 것이다 ☞ 문20로 | 2) 되도록 할 것이다 ☞ 문20로 |
| 3)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 문19-1로 | 4)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 문19-1로 |

문19-1. 귀하께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01) 일이나 학업에 몰두하고 싶어서 | 02) 혼자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어서 |
| 03) 혼자 사는 것이 좋아서 | 04) 실업상태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서 |
| 05)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 06) 가사 및 육아 부담이 클 것 같아서 |
| 07)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 때문에 | 08) 나의 건강이나 장애로 인해 |
| 09) 장애 또는 만성질환으로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 10) 결혼을 하기에 적절한 연령이 아니어서 |
| 11) 기타(구체적으로:) | |

문20.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몇 명입니까?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현재 살아있는 자녀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명

1) 첫째 자녀	☐ 1) 아들 ☐ 2) 딸	만	세	4) 넷째 자녀	☐ 1) 아들 ☐ 2) 딸	만	세
2) 둘째 자녀	☐ 1) 아들 ☐ 2) 딸	만	세	5) 다섯째 자녀	☐ 1) 아들 ☐ 2) 딸	만	세
3) 셋째 자녀	☐ 1) 아들 ☐ 2) 딸	만	세	6) 여섯째 자녀	☐ 1) 아들 ☐ 2) 딸	만	세

문21.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1) 있다 ➡ 문22로

2) 없다 ➡ 문21-1로

문21-1.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01) 나이가 많아서 | 02) 이미 낳은 자녀로 충분해서 | 03) 아이가 필요하지 않아서 |
| 04)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 05) 일하는 데 지장 | 06) 미혼이므로 |
| 07) 건강상의 이유로 | 08) 자녀양육 스트레스 때문에 | 09)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없어서 |
| 10)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 11) 기타(무엇:) | |

※ 다음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22. 귀하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손)자녀가 있습니까? (없을 경우 문25번으로)

만0~2세 (36개월 미만)	☐ 1) 있다 _____명 ☐ 2) 없다 ➡ 문25로	만3~5세	☐ 1) 있다 _____명 ☐ 2) 없다 ➡ 문25로
--------------------	--	-------	--

문23. 위에서 말씀하신 취학 전 (손)자녀를 낳에 주로 돌보는 사람(기관)은 누구입니까? 자녀를 돌보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01) 자녀의 아버지 | 02) 자녀의 어머니 | 03) 자녀의 외조부모 |
| 04) 자녀의 친조부모 | 05) 기타 친인척 | 06) 이웃 |
| 07)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 08) 개인적으로 구한 돌보미 | 09) 어린이집/유치원 |
| 10) 기타(누구:) | | |

문24. 귀하가 취학 전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 |
|--------------------------|------------------------|
| 1)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 2)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
| 3) 자녀를 믿고 맡길 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 4) 양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
| 5) 양육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 6) 없다 |
| 7) 기타(구체적으로:) | |

문25. 귀하는 취학 전 (손)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조)부모들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서비스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01)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02)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 03) 시간연장, 휴일, 야간,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04) 영아전담(만3세 미만)어린이집 확대 |
| 05) 직장어린이집 확대 | 06) 장애아보육 지원 확대 |
| 07)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08) 가정과건 보육서비스 확대(예:아이돌보미 등) |
| 09)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 |
| 10)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예:부모교육, 자녀와 놀이체험 공간 등) | |

문26. 귀하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녀가 있습니까? (없을 경우 문29번으로)

초등학생	☐ 1) 있다 _____명
(손)자녀	☐ 2) 없다  문29로

문27. 위에서 말씀하신 초등학생 (손)자녀는 방과 후에 주로 어디서 시간을 보냅니까?

- | | | | |
|----------------|-------------|---------------------|-------|
| 1) 초등 돌봄교실 | 2) 방과 후 교실 | 3) 과외 | 4) 학원 |
| 5)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 6) 그냥 집에 있음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28. 초등학생 (손)자녀가 방과 후에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그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로 돌보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01) 자녀의 아버지 | 02) 자녀의 어머니 | 03) 자녀의 외조부모 |
| 04) 자녀의 친조부모 | 05) 기타 친인척 | 06) 형제자매 |
| 07) 이웃 | 08) 가사도우미 | 09) 돌보는 사람 없음 |
| 10) 기타(누구: _____) | | |

문29. 귀하는 초등학생 (손)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부모들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돌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정책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방과 후 교실 및 돌봄교실 활성화 | 2)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 3)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 4)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
| 5) 방과 후 아카데미 활성화 | 6) 아동양육에 따른 세제혜택 확대 |
| 7)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다음은 귀하의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30. 귀하는 가족과 함께 얼마나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비동거 가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거의 나누지 않음	별로 나누지 않음	자주 나눔	매우 자주 나눔	비해당(없음)
	1	2	3	4	9

응답칸		응답칸	
1) 부모와 대화		3) 자녀와 대화	
2) 배우자와 대화		4) 손자녀와 대화	

문31. 귀하는 가족과 주로 어떤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비동거 가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1) 학업 및 진로문제	2) 직장 및 경제문제	3) 건강 및 여가활동 관련 이야기
	4) 자녀 또는 부모 돌봄문제	5) 집안 대소사 문제	6) 기타(구체적으로:)
	9) 비해당(없음)		

	응답칸		응답칸
1) 부모와 대화 내용		3) 자녀와 대화 내용	
2) 배우자와 대화 내용		4) 손자녀와 대화 내용	

문32. 귀하는 평소에 가족에게 주로 어떻게 애정을 표현하십니까? (비동거 가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1) 말로(사랑한다,고맙다 등)	2) 글로(문자,이메일,SNS 등)	3) 스킨십(쓰다듬기,안마,포옹,입맞춤 등)
	4) 표현안함	9) 비해당(없음)	

	응답칸		응답칸
1) 부모와 애정 표현		3) 자녀와 애정 표현	
2) 배우자와 애정 표현		4) 손자녀와 애정 표현	

문33. 귀하는 평소에 함께 사는 가족과 함께 외식, 여가활동, 여행 등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제사, 명절 등에 친지를 방문한 경우는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1) 일주일에 두세 번 | 2)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3) 한달에 두세 번 |
| 4) 한달에 한 번 정도 | 5) 일년에 서너 번 | 6) 일년에 한 번 이하 |

문34. 지난 1년간 함께 사는 가족과 한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주된 활동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01) 문화예술관람(영화, 연극, 박물관 등) | 02) 여행 | 03) 외식 |
| 04) 쇼핑 | 05) 산책 | 06) 등산 |
| 07) 스포츠활동 | 08) 자원봉사활동 | 09) 종교생활 |
| 10) 게임 | 11) TV 또는 비디오 시청 | 12) 목욕이나 찜질방 |
| 13) 노래방 | 14) 기타(무엇:) | 88) 없음 |

문35. 최근 여가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서로 많이 바빠서 | 2) 서로 취미가 맞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서 |
| 3) 경제적 부담 때문에 | 4) 적당한 여가시설이 없어서 |
| 5) 돌봐야 할 환자, 노인, 장애인이 있어서 | 6) 자녀가 공부에 집중해야 해서 |
| 7) 몸이 피곤하거나 아파서 | 8)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다 |
| 9) 기타(구체적으로:) | |

문36. 귀하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다음 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장남 또는 그 가족 | 2) 아들 중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 |
| 3) 딸 중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 | 4) 아들, 딸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 |
| 5) 모든 자녀들이 함께 또는 그 가족들이 함께 | 6)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
| 7) 기타(누구:) | |

문37-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월 평균 어느 정도 해 드렸습니까?

	하지 않음	10만원 미만	10~29만원	30~49만원	50~69만원	70~100만원	100만원 이상	비해당 (안계심)	응답칸
1) 본인 부모에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배우자 부모에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37-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월 평균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음	10만원 미만	10~29만원	30~49만원	50~69만원	70~100만원	100만원 이상	비해당 (안계심)	응답칸
1) 본인 부모로부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배우자 부모로부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38. 귀하는 가족과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보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비해당
기	1	2	3	4	5	9

	응답칸		응답칸
1) 부모와의 관계		3) 자녀와의 관계	
2) 배우자와의 관계		4) 손자녀와의 관계	

문39.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	1	2	3	4

		응답칸
A	01)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가족이라 할 수 없다	
	02)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이 가장 이상적 가족이다	
B	03)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04)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05)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06) 결혼하고 자녀가 있다면 부부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C	07)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꼭 필요하다	
	08)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다	
	09) 부모는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	
	10)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며 보살펴드려야 한다	
D	11) 남편의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의 일은 가정을 돌보는 일이다	
	12)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해야 한다	
	13) 비록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아내는 집안 살림에 책임을 져야 한다	
E	14) 여성은 남성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15) 여성은 이성적인 토론보다 가벼운 대화를 더 좋아한다	
	16) 여성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	

문40. 귀하는 제주 지역 사회 내 가족정책 관련한 다음의 기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지의 여부와 이용경험, 그리고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인지여부			이용경험(안다 응답자만)			이용 후 도움정도(이용자만)			
	안다	모른다	응답칸	있다	없다	응답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응답칸
01) 건강가정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2) 다문화가정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3) 모자(일시)보호시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4) 미혼모자시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5)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6) 아동그룹홈*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7) 아동복지전문기관*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8)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9)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보육정보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0) 보건소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1) 건강증진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2) 인구보건협회	①	②		①	②		①	②	③	

3) 모자(일시)보호시설	4) 미혼모자시설	5)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3년, 2년연장가능)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을 위한 시설
6) 아동그룹홈	7) 아동복지전문기관	8) 지역아동센터
방임·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양육시설	도내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는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전문센터 등이 있음	지역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교육 및 복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C-1 기혼자 및 사실혼(동거 포함) 응답자 질문(문41~문45)

→ 면접원은 문18에서 ② ⑥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 문41~문45 응답 후 문54로

문41.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동거)은 귀하와 배우자 모두 첫 번째 결혼(동거)입니까?

☐

- 1) 모두 초혼 2) 나는 초혼, 배우자는 재혼 3) 나는 재혼, 배우자는 초혼 4) 모두 재혼

문42. 귀하와 배우자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다림질하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1) 본인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시간 분

2) 배우자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시간 분

문43. 귀하와 배우자는 자녀, 부모, 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는 데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합니까?

1) 본인의 하루 평균 가족돌봄 시간	시간 분	2) 배우자의 하루 평균 가족돌봄 시간	시간 분
----------------------	--	-----------------------	--

문44. 귀하는 평소에 배우자와의 갈등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 1) 거의 없음 문45로
2) 가끔 문44-1로
3) 자주 문44-1로
4) 매우 자주 문44-1로

문44-1. 배우자와의 갈등의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01) 자녀 문제 | 02) 배우자 또는 나의 생활습관 문제(늦은 귀가, 지출 및 소비, 친구 문제 등) |
| 03) 술, 도박 등 중독문제 | 04) 외도문제 |
| 05) 가사 및 육아분담 문제 | 06) 경제문제 |
| 07) 제사나 집안의 경조사 문제 | 08) 가족 내 돌봐야 할 환자, 노인, 장애인 문제 |
| 09) 부모부양 문제 | 10) 기타(무엇:_____) |

문44-2.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주된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1) 문제점을 말로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 2) 상대방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린다 |
| 3) 회피하거나 참는다 | 4)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
| 5) 폭력을 쓸 때도 있다 | 6) 기타(어떻게:_____) |

문44-3. 배우자와의 갈등은 주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주된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 1) 대화로 풀다 | 2) 상대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 | 3) 서로 참고 지나간다 |
| 4) 부모나 친지의 개입으로 | 5) 전문 상담가의 도움으로 | 6) 해결이 되지 않는다 |
| 7) 기타(어떻게:_____) | | |

문45. 귀하는 지난 1년간 배우자와 별거나 이혼이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문45-1로
2) 없다 문54로

문45-1. 배우자와 별거나 이혼이 낫다고 생각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01) 자녀 문제 | 02) 배우자 또는 나의 생활습관 문제(늦은 귀가, 지출 및 소비, 친구 문제 등) |
| 03) 술, 도박 등 중독문제 | 04) 외도문제 |
| 05) 가사 및 육아분담 문제 | 06) 경제문제 |
| 07) 제사나 집안의 경조사 문제 | 08) 가족 내 돌봐야 할 환자, 노인, 장애인 문제 |
| 09) 부모부양 문제 | 10) 신뢰나 애정이 없어져서 |
| 11) 삶의 가치관 차이 | 12) 기타(구체적으로:_____) |

문45-2. 배우자와 별거나 이혼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주변의 시선 때문에 | 2) 경제적 이유 때문에 |
| 3) 자녀를 생각해서 | 4) 결혼실패자라는 낙인이 두려워서 |
| 5) 혼자 사는 것보다 나을 거 같아서 | 6) 기타(구체적으로:_____) |

문54로

C-2 이혼 한 분에게만 질문(문46~문49)

→ 면접원은 문18에서 ④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 문46~문49 응답 후 문54로

문46. 귀하가 이전 배우자와 이혼으로 헤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순서대로 2순위
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01) 자녀 문제 | 02) 배우자 또는 나의 생활습관 문제
(늦은 귀가, 지출 및 소비, 친구 문제 등) |
| 03) 술, 도박 등 중독문제 | 04) 외도문제 |
| 05) 가사 및 육아분담 문제 | 06) 경제문제 |
| 07) 제사나 집안의 경조사 문제 | 08) 가족 내 돌봐야 할 환자, 노인, 장애인 문제 |
| 09) 부모부양 문제 | 10) 신뢰나 애정이 없어져서 |
| 11) 삶의 가치관 차이 | 12) 기타(구체적으로:_____) |

문47. 귀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 | |
|------------------|-------------------------|
| 1)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 2) 처음엔 좋았으나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
| 3) 후회한다 | 4) 기타(구체적으로:_____) |

문48.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1) 경제적 어려움 | 2) 자녀 양육 | 3) 외로움 |
| 4) 자녀의 정서 또는 심리문제 | 5) 사회적 편견 | 6) 힘든 점 없음 |
| 7) 기타(구체적으로:_____) | | |

문49. 이혼 후 현재 돌보아야 할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습니까?

- | | |
|----------------|--------------|
| 1) 있다 ☞ 문49-1로 | 2) 없다 ☞ 문54로 |
|----------------|--------------|

문49-1. 그 자녀는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 | | | |
|-------------|-----------|-----------------|
| 1) 본인 | 2) 전배우자 | 3) 아이의 친조부모 |
| 4) 아이의 외조부모 | 5) 기타 친인척 | 6) 기타(누구:_____) |

문49-2. 귀하의 전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 | |
|---------------------------------|------------------------------|
| 1) 전혀 왕래가 없음 | 2) 가끔 자녀를 만나 돌봐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냄 |
| 3)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 돌봐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냄 | 4) 자주 만나 자녀를 돌봐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냄 |
| 5) 기타(구체적으로:_____) | |

문49-3. 그 자녀의 양육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주된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 1) 내가 | 2) 전 배우자가 | 3) 나와 배우자 공동 |
| 4) 아이의 친조부모가 | 5) 아이의 외조부모가 | 6) 기타 친인척 |
| 7) 정부 보조금 | 8) 기타(무엇:_____) | |

☞ 문54로

C-3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미혼인 분만 질문(문50~문53)

→ 면접원은 문18에서 ①, 문20에서 만18세 미만 자녀 유무 Cross 체크. 문50~문53 응답 후 문61로

문50. 자녀의 생부/생모와 혼인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내가 원하지 않아서 2)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3) 집안의 반대로
4)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5)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51. 양육하지 않는 아이의 생부/생모는 자녀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왕래가 없음 2) 가끔 자녀를 만나 돌봐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냄
3)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 돌봐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냄 4) 자주 만나 자녀를 돌봐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냄
5)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52. 자녀의 양육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주된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1) 내가 2) 아이의 생부/생모가 3) 나와 아이의 생부/생모가 공동으로
4) 아이의 친조부모가 5) 아이의 외조부모가 6) 기타 친인척
7) 정부 보조금 8) 기타(무엇:_____)

문53.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경제적 어려움 2) 단독 자녀양육이 주는 스트레스 3) 외로움, 분노 등 정서적 어려움
4) 자녀의 정서 또는 심리문제 5) 부모와의 갈등 6) 아이의 생부/생모와의 갈등
7) 사회적 편견 8) 힘든 점 없음 9) 기타(구체적으로:_____)

☛ 문61로

C-4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구만 질문(문54~문58)

→ 면접원은 문3에서 ⑧, ⑨ 응답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 문54~문58 응답 후 문61로

문54. 귀하가 손자녀와 함께 사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손자녀 부모의 사망, 실종 2) 손자녀 부모의 이혼 3) 손자녀 부모의 별거
4) 손자녀 부모의 가출 5) 손자녀 부모의 질병 6) 손자녀 부모의 실직, 파산 등 경제적 문제
7) 손자녀의 학교진학 8) 기타(무엇:_____)

문55. 손자녀는 자신의 부모와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거의 매일	일주일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서너 번	일 년에 한번 이하	전혀 안 만남	비해당	응답칸
아버지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어머니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56. 귀하가 손자녀를 키우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자신의 건강 문제 등 체력적 어려움 2) 손자녀의 학습지도
3) 여가 및 문화 활동을 함께 할 수 없어서 4) 경제적 어려움
5) 대화의 어려움 6) 손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몰라서
7) 손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8) 기타(구체적으로:_____)

- 1) 잘 적응하고 있다 2)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대로 적응한다
3)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4) 많은 어려움이 있다

- 1) 조손가족에 대한 차별로 인해 또래집단이나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 2) 용돈 부족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필요한 것을 살 수 없는 문제 포함)
- 3) 함께 놀러가거나 대화할 가족이 없음
- 4) 기타(구체적으로:_____)

☞ 문61로

C-5 만 65세 이상 혼자사는 분만 질문(문59~문60)

→ 면접원은 SQ3에서 연령 65이상, 문3에서 ① 응답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 문59~문60 응답 후 문61로

- 1) 자녀나 함께 살 가족이 없어서 2) 자녀나 다른 가족들이 멀리 살고, 본인은 제주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3) 혼자 사는 게 편하여 4) 기타(구체적으로:_____)

- 1) 가사 활동 (요리, 빨래, 청소 등) 2) 외로움 3) 몸이 아플 때
4) 경제적인 어려움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61로

C-6 가족 유형별 정부지원정책[모두 응답]

문61. 이혼이나 사별로 한부모가 된 가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11

- 1) 한부모가정에 대한 인식변화 2) 한부모 모자/부자 보호시설의 확대 3) 주거지원의 확대
4) 한부모가정 자격기준 완화 5) 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6) 한부모 가정 자녀 학습지원
7) 양육비 집행강제 8) 기타 (무엇: _____)

문62.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부에게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1) 미혼포/부에 대한 인식변화 | 2) 미혼포 보호시설의 확대 | 3) 지역통합 서비스 강화 |
| 4) 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 5) 미혼포/부에 대한 학습지원 | ※ 지역통합 서비스란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 6) 친자검사비용 지원 | 7) 양육비 집행강제 | |
| 8) 양육을 회피하는 생부/생모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 | |
| 9) 기타(무엇:) | | |

※ 지역통합 서비스란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출산, 의료,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을 의미함

- 1) 생활 가사 지원서비스 2) 손자녀를 위한 학습지도 3)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4) 경제적 지원 5) 양육을 위한 정보 서비스 6) 의료지원
7) 손자녀를 위한 정서지원 서비스 8) 기타(무엇:)

11

- 1) 생활 가사 지원서비스 2) 말벗이나 여가활동 도우미 파견 3) 몸이 아플 때 병원동행 서비스
- 4) 취업 지원 5) 경제적 지원 6) 기타(구체적으로:)

문65. 귀하는 다음의 가족유형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1) 맞벌이 가족 | 2) 노인부부 가족 | 3) 자녀양육기에 있는 한부모 가족 |
| 4) 미혼모/부 가족 | 5) 조손가족 | 6) 노인1인 가족 |
| 7) 입양 및 위탁가족 | 8) 기타(누구:_____) | |

D. 건강, 사회참여, 여성정책

※ 다음은 귀하의 건강을 비롯하여, 사회참여, 여성정책 등에 대해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66.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십니까?

- 1) 매우 나쁘다 2) 나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문6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단체에 참여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01) 친목 및 사교단체 (계, 동창회 등) | ☐ 02) 종교단체 (자비원, 선교회, 교회 등) |
| ☐ 03) 취미, 스포츠, 레저단체 | ☐ 04)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
| ☐ 05) 학술단체 | ☐ 06) 이익단체(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 |
| ☐ 07) 정치단체 | ☐ 08) 지역사회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
| ☐ 09) 단체에 참여한 적이 없음 | ☐ 10) 기타(무엇:_____) |

문68. 귀하는 제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정당의 여성할당제 비율 확대 | 2) 여성 정치후보자 발굴 및 지원 |
| 3)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선거자금, 공천제도 등) | 4)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 개선 |
| 5) 기타(무엇:_____) | |

문69. 귀하는 제주 사회의 양성평등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매우 불평등	◀-----▶	매우 평등
0.....1.....2.....3.....4.....5.....6.....7.....8.....9.....10		

문70. 귀하는 다음의 양성평등정책 중에서 제주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01) 정책결정과정에 여성평등 실현 | 02) 경제활동에서 양성평등 실현 |
| 03) 임신·출산·수유·육아에 있어서 모성과 부성의 권리 보장 | 04)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 조성 |
| 05)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여성인재의 육성 | 0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 07)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 | 08)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
| 09)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 09)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
| 10) 국제협력에서 양성평등한 참여 | 11) 가정과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 12) 대중매체의 성차별 관행 개선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 13) 여성친화도시 조성확대 |

문71. 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여성·가족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 2) 도지사 등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의지 |
| 3)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의지 | 4) 도의회의 전문성과 의지 |
| 5)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 | 6) 일반 도민의 참여 기회 확대 |
| 7) 도민 대상 여성·가족 정책의 홍보 | 8) 기타(무엇:_____) |

E. 폭력과 안전

문72.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보 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	다소 동의한다 3	매우 동의한다 4
--------	---------------------	---------------------	-----------------	-----------------

	응답칸
1) 일반폭력에 관대할수록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	
2) 배우자의 열등감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	
3)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	
4) 부부간 의사소통이 어려울수록 가정폭력을 초래한다	
5)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	
6) 가정폭력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을수록 가정폭력은 지속된다	

문73. 다음 의견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응답칸
1)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	①	②	
2)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손찌검을 할 수 있다	①	②	
3) 맞은 사람은 맞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렇다	①	②	
4)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①	②	
5)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	①	②	
6) 남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아내에게 폭력을 쓸 수 있다	①	②	
7) 가정폭력은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신고해서는 안 된다	①	②	
8) 가정폭력은 집안문제로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①	②	
9) 가정폭력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문제이다	①	②	

문74. 귀하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전혀 모른다	2)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3)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문75로

문74-1.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 | |
|------------------------|-----------------------|
| 1) TV/라디오의 공익광고 | 2)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
| 3) 버스 광고 | 4) 신문/잡지 |
| 5)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 6)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
| 7)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 8) 반사회보/부녀회 |
| 9) 기타(무엇:) | |

문75. 다음은 현재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안다	모른다	응답칸
1) 가정폭력 피해자상담소	①	②	
2) 경찰 < 112 >	①	②	
3) 여성긴급전화1366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365일24시간 운영되는 긴급상담 전화	①	②	
4) 여성폭력원스탑(one-stop)지원센터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4시간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 센터	①	②	
5)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등 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스	①	②	
6) 의료비지원 및 의료서비스(가정폭력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의료비지원 등)	①	②	
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①	②	
8) 국민임대주택우선입주	①	②	
9)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①	②	
10)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①	②	
11) 가정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	①	②	
12) 지역복지관 관련 서비스	①	②	

문76.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참여할 의향이 있다

2) 참여할 의향이 없다

문77. 귀하는 지금까지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모두 말씀해주세요

	폭행여부	최초피해연령		폭행여부	최초피해연령
1) 조부모로부터	☐ 1) 있다 → ☐ 2) 없다	만_____세	5) 배우자로부터	☐ 1) 있다 → ☐ 2) 없다	만_____세
2) 아버지로 부터	☐ 1) 있다 → ☐ 2) 없다	만_____세	6) 자녀로 부터	☐ 1) 있다 → ☐ 2) 없다	만_____세
3) 어머니로 부터	☐ 1) 있다 → ☐ 2) 없다	만_____세	7) 손자녀로 부터	☐ 1) 있다 → ☐ 2) 없다	만_____세
4) 형제·자매로 부터	☐ 1) 있다 → ☐ 2) 없다	만_____세			

* '가족들로부터의 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모든 항목에서 '없음'이라고 하는 경우는 **문94**로

문78. 귀하는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모두 말씀해주세요

☐ 1) 무섭고 두려웠다

☐ 2) 좌절·무력감을 느꼈다

☐ 3) 수치스러웠다

☐ 4) 가족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졌다

☐ 5) 화가 났다

☐ 6)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79. 귀하는 폭력을 당한 직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모두 말씀해주세요

☐ 1)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2) 죽고 싶었다

☐ 3) 가출하고 싶었다

☐ 4)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때리고 싶었다

☐ 5) 폭력행위자를 죽이고 싶었다

☐ 6)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80. 귀하는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할 때 주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1) 그냥 맞으면서 참음	2) 무조건 피함
3) 함께 폭력 행사	4) 주위에 도움 요청

☞ 문80-1, 문83으로

☞ 문80-2, 문80-3으로

문80-1. 귀하가 대응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문83으로

- | | |
|-------------------|---------------------|
| 1) 무서워서 | 2)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
| 3)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 4) 참으면 나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
| 5)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 6) 가족이기 때문에 |
| 7)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서 |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80-2. 귀하가 대응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2) 폭력행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
| 3) 폭력은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 4)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80-3.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 1) 가족이나 친척 | ☐ 2) 이웃이나 친구 | ☐ 3) 학교/학원선생님 |
| ☐ 4) 지역복지관 | ☐ 5) 종교지도자 | ☐ 6) 긴급전화 1366 |
| ☐ 7) 센터 및 전문상담소 | ☐ 8) 경찰 | ☐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81. (문80-3에서 ⑧ 응답자만)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 1) 피해자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인도하였다
- 2)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하였다
- 3) 출동하였으나 기록은 하지 않고 듣기만 하였으며 접수시키겠다고 했다
- 4) 출동은 하였으나 그냥 듣기만 하고 집안일이니 해결하라며 돌아갔다
- 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에 응하지 않았다
- 6)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폭력행위자와 함께 동반귀가 시켰다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82. (문80-3에서 ⑥, ⑦ 응답자만)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 응답 후 문85로

- | | |
|------------------|------------------|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2)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
| 3) 도움이 된 편이다 | 4)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문83. (문80에서 ①, ②응답자, 문80-3에서 ⑧ 미응답자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폭력행위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 2)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 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4)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
| 5)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84. (문80에서 ①, ②응답자, 문80-3에서 ⑥, ⑦ 미응답자만) 관련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 2)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 3)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 4) 도움 요청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85. 귀하는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어떤 후유증이 있었습니까? 모두 말씀해주세요

- ☐ 1) 변화가 없음 ☐ 2) 불안·우울함 ☐ 3)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감
☐ 4) 가해자에 대한 분노 ☐ 5) 모든 일에 화가 남 ☐ 6) 대인기피
☐ 7) 자살에 대한 생각 ☐ 8) 반복적인 가출 ☐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86. 귀하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상처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1) 유료로 받은 적 있다 ➡ 문86-1로 2) 무료로 받은 적 있다 ➡ 문86-2로 3) 없다 ➡ 문86-3으로

문86-1. 귀하가 병원치료를 유료로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당연히 내가 지불해야하니가 2)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몰라서
 3)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 문87로

문86-2. 귀하가 병원치료를 무료로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경찰 및 상담소의 안내를 받아서 2) 가정폭력관련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3)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87로

문86-3.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신체적 상처가 없어서 2)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3) 돈이 없어서 4)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아서
 5)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6)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몰라서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87로

문87. 귀하는 가족들로부터 폭력이 있은 후 가족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 1) 변화가 없었다 2) 가족구성원에 대한 친밀감을 상실했다
 3) 가족구성원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다 4)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됐다
 5) 이혼했다 6)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88.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보호시설이 있다면 입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

- 1) 입소할 의향이 있다 2) 입소할 의향이 없다 3) 모르겠다(이유: _____)

문89. 귀하가 가정폭력 관련 기관(1366, 쉼터/전문가정폭력상담소)에 가장 바라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 1) 정신 및 심리상담 2) 법적지원 3) 의료지원
 4) 정보제공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90. 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우선 순위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폭력 허용적인 사회문화의 개선
 2) 부부간 의사소통개선을 위한 가족치료프로그램 제공
 3)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거주기간 연장
 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상담, 의료, 주거 등)
 5)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6)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강화
 7) 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고, 가해자 처벌강화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91. 귀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우선 순위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 | 2) 직장 및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 |
| 3) 도민대상 인권교육 실시 | 4)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 |
| 5) 양성평등사회 실현 | 6) 기타(구체적으로:_____) |

문92. 귀하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심리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있다면 가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도움이 될 것이다 | 2)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3) 모르겠다(이유:_____) |
|--------------|----------------|-------------------|

문93. (배우자[동거자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동거자 포함)는 지난 1년간 갈등이 있을 때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면접원은 문18에서 ②, ⑥ 응답여부 확인)

지난 1년간 횟수	거의 매일	한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3개월에 한두번	6개월에 한두번	1년에 한두번	없음	응답칸
01)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2) 때리려고 위협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3) 나의 물건을 파손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4)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5)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6) 수입과 지출을 독점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7)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8) 어깨나 목 등을 짊 움켜잡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9)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목을 졸랐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을 하거나, 다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93-1. (문1 가구구성표에서 만18세 미만 (손)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만 응답)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손)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1년간 횟수	거의 매일	한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3개월에 한두번	6개월에 한두번	1년에 한두번	없음	응답칸
1)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안전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94.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응답칸
1) 나는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①	②	
2)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수리기사, 택배 등)의 방문이 무섭다	①	②	
3) 나는 길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4) 나는 평소에 성폭행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①	②	

문95. 성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응답칸
A	1)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는 속으로는 원하면서 '싫다'라고 한다	① ②	
	2) 여자가 먼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	① ②	
B	3)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따라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① ②	
	4)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① ②	
C	5) 늦은 밤에 혼자 다니는 여자들은 대부분 끼 있는 여자이다	① ②	
	6)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① ②	

문96.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성폭력 이다	성폭력 아니다	응답칸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행위	①	②	
2)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 또는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동	①	②	
3)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①	②	
4)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동	①	②	
5)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행동	①	②	

문97. 귀하는 성폭력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1) 전혀 모른다 2)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3)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문98. 귀하는 성폭력과 관련한 다음의 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안다	모른다	응답칸
1)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	①	②	
2)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처벌할 수 있다.	①	②	
3) 화장실, 목욕탕, 해수욕장 등에서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	①	②	
4) 성폭력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가 폐지되었다	①	②	
5)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전담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	①	②	
6)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국선 변호인 혹은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 모두 모르는(② “모른다”) 경우 문100으로

문99. 귀하는 성폭력 관련법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1) TV/라디오 공익광고 | ☐ 2)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
| ☐ 3)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 ☐ 4) 학교/사회교육 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
| ☐ 5) 버스/택시 광고 | ☐ 6)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
| ☐ 7) 신문/잡지 | ☐ 8) 반사회보/구청 소식지 |
| ☐ 9) 기타(구체적으로:) | |

문100. 다음은 현재 성폭력과 관련해 제공되고 있는 제주지역 내 서비스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안다	모른다	응답칸		안다	모른다	응답칸
1) 여성 긴급전화 1366	①	②		5) 여성, 아동 성폭력센터(해바라기센터)	①	②	
2)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①	②		6) 장애인 성폭력 상담기관	①	②	
3) 성폭력 피해자 쉼터	①	②		7) 성매매 피해자 쉼터	①	②	
4) 원스톱지원센터	①	②		8)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①	②	

※ 다음은 귀하의 성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응답 시 유의사항:

- 1) 피해유형별로 여러 사건인 경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2)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주된 가해자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3) 유형별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으로 이동하세요.

문101. 귀하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피해유형	1) 경험여부, 횟수	2) 최근 1년간 경험여부			3) 최초 피해연령	4) 피해당시 가해자 연령 (보기참조)	5) 피해 내용 (보기참조)
		① 있다	② 없다	응답칸		응답칸	응답칸
1) 스토킹 (지속적 추적, 추근거림) ☞ 응답후 문102로	☐ 1) 있다 → _____회 ☐ 2) 없다	①	②		만 _____세		
2) 성희롱 (음란한 말, 눈짓, 몸짓) ☞ 응답 후 문103으로	☐ 1) 있다 → _____회 ☐ 2) 없다	①	②		만 _____세		
3) 성추행 (신체적 접촉, 강제로 키스, 성기접촉, 애무 등) ☞ 응답 후 문103으로	☐ 1) 있다 → _____회 ☐ 2) 없다	①	②		만 _____세		
4) 강간 (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에 이물질삽입) ☞ 응답 후 문103으로	☐ 1) 있다 → _____회 ☐ 2) 없다	①	②		만 _____세		

보기 4) 피해당시 가해자 연령		보기 5) 피해내용	
① 13세미만	④ 30대	① 한 사람에게 한번 당함	④ 여러 사람에게 차례로 당함
② 13~19세	⑤ 40대	②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	⑤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③ 20대	⑥ 50대	③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여러 번 당함
	⑦ 60대 이상		⑥ 기타()

※ 피해경험이 모두 없는 응답자는 ☞ 문120으로

문102. 귀하를 스토킹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든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01) 모르는 사람 | ☐ 02)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 |
| ☐ 03) 학교 선후배 | ☐ 04) 애인 (혹은 배우자) |
| ☐ 05) 부모 | ☐ 06) 형제, 자매 |
| ☐ 07) 친척 | ☐ 08) 이웃 |
| ☐ 09) 교사/교수/강사 | ☐ 10) 직장상사 및 동료 |
| ☐ 11) 기타(구체적으로:) | |

문103. 귀하가 경험한 피해의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 장소는 어디인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피해유형	가해자와의 관계 (모두 고르세요)	피해 장소 (모두 고르세요)
1) 성희롱	☐ 01) 모르는 사람 ☐ 02) 범행 몇 시간 전에 안사 ☐ 03) 학교 선후배 ☐ 04) 애인 (혹은 배우자) ☐ 05) 부모 ☐ 06) 형제, 자매 ☐ 07) 친척 ☐ 08) 이웃 ☐ 09) 교사/교수/강사 ☐ 10) 직장상사 및 동료 ☐ 11)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 가해자의 집 ☐ 2) 나의 집 ☐ 3) 유흥업소 ☐ 4) 숙박업소 ☐ 5) 학교/직장/군대 ☐ 6) 대중교통시설 ☐ 7) 유원지(산, 해변, 공원) ☐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 성추행	☐ 01) 모르는 사람 ☐ 02) 범행 몇 시간 전에 안사 ☐ 03) 학교 선후배 ☐ 04) 애인 (혹은 배우자) ☐ 05) 부모 ☐ 06) 형제, 자매 ☐ 07) 친척 ☐ 08) 이웃 ☐ 09) 교사/교수/강사 ☐ 10) 직장상사 및 동료 ☐ 11)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 가해자의 집 ☐ 2) 나의 집 ☐ 3) 유흥업소 ☐ 4) 숙박업소 ☐ 5) 학교/직장/군대 ☐ 6) 대중교통시설 ☐ 7) 유원지(산, 해변, 공원) ☐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강간	☐ 01) 모르는 사람 ☐ 02) 범행 몇 시간 전에 안사 ☐ 03) 학교 선후배 ☐ 04) 애인 (혹은 배우자) ☐ 05) 부모 ☐ 06) 형제, 자매 ☐ 07) 친척 ☐ 08) 이웃 ☐ 09) 교사/교수/강사 ☐ 10) 직장상사 및 동료 ☐ 11)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 가해자의 집 ☐ 2) 나의 집 ☐ 3) 유흥업소 ☐ 4) 숙박업소 ☐ 5) 학교/직장/군대 ☐ 6) 대중교통시설 ☐ 7) 유원지(산, 해변, 공원) ☐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04. 피해당시 가해자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1) 술에 취해 있었다 | ☐ 2)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
| ☐ 3) 맨 정신이었다 | ☐ 4)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음을 암시했다 |
| ☐ 5) 흥기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 ☐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105. 피해 당시 귀하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1) 멍 한 느낌 이었다 | ☐ 2) 모욕감, 굴욕감이 들었다 |
| ☐ 3) 철저한 무력감을 느꼈다 | ☐ 4) 공포로 인해 너무나 무서웠다 |
| ☐ 5) 배신감을 느꼈다 | ☐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106. 무엇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1) 가해자의 일시적 성충동 | ☐ 2) 잘못된 가해자의 성 인식 |
| ☐ 3) 가해자 자신의 욕구충족 | ☐ 4) 가해자가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하여 |
| ☐ 5) 응답자 자신의 부주의 | ☐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107. 귀하는 성폭력 피해 당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그냥 있었다

☞ 문108로

☐ 2) 도망갔다

☐ 3) 가해자를 설득하였다

☞ 문109로

☐ 4) 가해자를 협박하였다

☐ 5) 가해자를 속여 도망칠 기회를 노렸다

☐ 6) 빌고 애원했다

☐ 7) 힘으로 저항하고 싸웠다

☐ 8) 소리를 질렀다

☐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08. 대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 소리 내면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3) 술이나 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

4) 공포에 몸이 굳어서

5) 몸이 묶여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서

6) 저항하면 다칠까봐

7)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8) 성폭력인지 몰라서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110으로

문109. 대응을 했다면 귀하가 취한 행동이 당시 상황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성폭력도 피하고 신체적인 상처도 입지 않았다

2) 성폭력은 면했지만 신체적 폭력이 심했다

3) 성폭력 피해도 면하지 못하고 신체적 폭력도 심했다

4)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10. 성폭력 피해에 대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있다		없다		응답칸
1) 경찰	①	☞ 문111로	②	☞ 문112로	
2) 가족이나 친구	①		②		
3) 여성긴급전화 ☎1366	①		②		
4) 성폭력상담소 혹은 쉼터	①		②		
5) 여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①	☞ 문113으로 (하나라도 “있다”인 경우)	②	☞ 문114로 (모두 “없다”인 경우)	
6) 여성, 아동 성폭력센터(해바라기센터)	①		②		
7) 성매매 피해자 쉼터	①		②		
8) 장애인 성폭력 상담기관	①		②		
9)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①		②		

문111.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1)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주었다

2) 직접 방문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였다

3) 전화로 피해상황을 확인하였다

4) 수사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5)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문111-1. 신고를 처리한 경찰의 조치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대체로 만족

4) 매우 만족

응답 후 ☞ 문113으로

문112.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가장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로 2순위까지 응답 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 2)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
| 3)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 4)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 5) 가족(부모)들에게 비난당할까봐 두려워서 | 6)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
| 7) 보복이 두려워 감히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 | 8)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113. (문110에서 서비스기관 3)~9) 중 하나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분 응답) 서비스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떤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 1) 긴급 상담 | ☐ 2) 경찰 등 기관 연계 | ☐ 3) 의료서비스 |
| ☐ 4) 사회복지서비스 | ☐ 5) 법률서비스 | ☐ 6) 심리 상담 |
| ☐ 7) 정신과 치료 | ☐ 8) 지원을 받은 적 없다 | |

문113-1. 관련기관의 조치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대체로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응답 후 ➡ 문115로

문114. (문110에서 서비스기관 3)~9) 중 한 군데도 이용한 적이 없는 분 응답) 관련(서비스)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 2)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
| 3)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4)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
| 5)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6) 상담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115. 귀하는 성폭력으로 신체적인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 1) 예 ➡ 문115-1로 2) 아니오 ➡ 문116으로

문115-1. 그럼 어떠한 피해를 경험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1) 성기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 ☐ 2) 성기이외 다른 신체적 상처를 입었다 |
| ☐ 3) 하혈을 했다 | ☐ 4) 성병에 걸렸다 |
| ☐ 5) 임신을 했다 | ☐ 6) 낙태를 했다 |
| ☐ 7) 장애가 생기거나 심해졌다 | ☐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115-2. 신체적 상처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까?

- | | |
|------------|------------|
| 1) 유료로 받았다 | 2) 무료로 받았다 |
|------------|------------|
- 3) 받지 않았다 ➡ 문115-3으로 ➡ 문116으로

문115-3.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신체적 피해가 없어서 | 2)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
| 3) 돈이 없어서 | 4) 약만 사 먹으면 나을 것 같아서 |
| 5)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 6) 당황하여 치료시기를 놓쳐서 |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116. 귀하는 성폭력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 1) 예 ➡ 문116-1로 2) 아니오 ➡ 문117로

문116-1. 그럼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1) 불면증에 시달렸다 | ☐ 2) 우울증에 시달렸다 |
| ☐ 3)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 ☐ 4) 순결상실감에 고통을 받았다 |
| ☐ 5) 수시로 분노감이나 적개심이 들었다 | ☐ 6)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 |
| ☐ 7)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자해행위를 했다 | ☐ 8) 없다 |
| ☐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116-2. 지금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 | |
|-------------------|-----------------------|
| 1) 괜찮다 | 2)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 |
| 3)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있다 | 4) 과거의 피해상황이 수시로 떠오른다 |

문117. 귀하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 한 후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01) 타인에 대한 혐오, 또는 불신 | ☐ 02)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 |
| ☐ 03) 대인기피증 | ☐ 04) 혼자 외출을 못하는 등의 행동문제가 생김 |
| ☐ 05) (직장인의 경우)직장을 옮기거나 그만 두었음 | ☐ 06) (학생의 경우)전학하거나 자퇴하였음 |
| ☐ 07)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음 | ☐ 08) 가족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가 악화됨 |
| ☐ 09) 변화없다 | |
| ☐ 10)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

문118. 피해이후 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이 있었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 1) 직장에서 해고를 당함 | ☐ 2) 직장을 그만 둬 | ☐ 3) 가해자로부터 금품갈취 당함 |
| ☐ 4) 치료비 부담 | ☐ 5) 소송비 부담 | ☐ 6) 취업을 못함 |
| ☐ 7) 기타(무엇: _____) | | |

문119. 귀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있다면 입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 1) 입소할 의향이 있다 | 2) 입소할 의향이 없다 | 3) 모르겠다(이유: _____) |
|---------------|---------------|--------------------|

※ 문120번 부터는 모든 응답자가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20. 귀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관련 서비스 중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1) 정신적 심리적 치료 | 2) 법적 지원 | 3) 의료지원 | 4) 정보제공 |
|---------------|----------|---------|---------|

문121. 귀하는 성폭력 관련 서비스 중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1) 생활비 지원 | 2)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 3) 자립을 위한 금융서비스(대출) |
| 4) 취업지원 등 자활지원 | 5) 직업훈련 지원 | |

문122. 귀하는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성폭력 예방과 성역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2)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
| 3) 지역 내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유지 | 4)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강화 |
| 5) 상담, 교육 등 가해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 강화 | |
| 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상담, 의료, 주거 등) | |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발행인	현혜순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Tel. 064)710-3482 Fax. 064)710-3489 www.jewfri.kr
인 쇄	열린출판기획 (064-724-0114)

ISBN 979-11-954366-1-3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있으며
출처를 명시하고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복제는 금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www.jewfri.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Tel. 064-710-3482 Fax. 064-710-3489

